兒童福祉 收容施設 實態調査 結果報告

卞 傛 粲 李 尙 憲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리말

兒童福祉 收容施設은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集團 保護와 治療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의경제성장에 따라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대한 지원수준이 꾸준히 증가되어온 결과, 施設兒童의 基礎生計는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면에서 시설의 운영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아직도 아동복지 수용시설은 아동의 보호수준이단순 양육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施設保護가 필요한 要保護兒童의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는 못하고 있다. 시설보호의 질을 결정하는 從事者에 대한 보수수준이 낮아 질높은 프로그램의 개발이나서비스제공이 어려우며, 施設兒童의 적성이나 능력개발과 자활에 필요한직업교육 및 훈련 등 질적인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退所兒童 등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의 미흡으로 퇴소아동들이 퇴소후의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장기간 보호하여 온 시설아 동들이 퇴소후 건전한 사회생활을 향유하지 못하고 問題集團化하는 하나의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단순히 수용 보호를 위주로 하는 施設運營體系로서는 시설아동의 바람직한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시설아동을 보다 건강하고 자립·자조할 수 있는 능력있는 성인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施 設運營體系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동복지 수용시설과 시설아동에 대한 運營實態 및 欲求 調査의 분석을 통해 시설의 운영을 개선하고 시설아동에 대한 종합적 인 保護方案樹立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로 전국의 모든 아동복지 수용 시설과 시설아동에 대해 全數調查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또한 高等學校 在學 以上의 시설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將來希望事項이나 退所後의 計劃 등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제공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보고서가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운영개선과 施設兒童保護를 위한 政策樹立에 一助하기를 기대하며, 아동복지에 관한 研究 또는 兒童福祉行政을 맡고 있는 관계자 분들께 一讀을 권하고 싶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변용찬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이상헌 주임연구원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연구진들은 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保健福祉部 신현수, 길호섭 과장, 김호순 서기관, 이성선, 이창준, 곽숙영 사무관, 송엽영 담당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나라 최초의 兒童福祉 收容施設과 施設兒童에 대한 全數調查를 위해 조사표의 배부 및 취합, 조사자료의 입력 등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신 韓國兒童福祉施設聯合會 김득린 회장, 류영수 국장, 김광빈동명학원 부원장, 권기용 영락보린원 총무, 그리고 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신 전국 아동복지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와 시설아동들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있다. 또한 연구진은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助言을해 준 본 연구원의 권선진, 노용환 책임연구원,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자료수집 및 정리에 많은 도움을 준 양후영 연구원과 보고서의 편집에 많은 수고를 해준 손숙자 연구조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著者들의 개인 적인 意見이며 本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 1998년 12월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 長 鄭 敬 培

目 次

要約
第1章 序論
第1節 研究背景 및 目的25
第2節 研究範圍 및 方法28
第3節 報告書의 構成30
第2章 施設兒童과 施設福祉
第1節 兒童福祉施設을 둘러싼 與件의 變化 31
第2節 要保護兒童
第3節 施設保護
第3章 兒童福祉 收容施設 現況45
第1節 施設 現況45
第2節 施設入所 및 退所53
第3節 施設의 收入 및 支出62
第4節 施設設備
第5節 施設의 管理運營75
第6節 施設에 대한 認識 및 態度 88
第4章 收容兒童의 現況95
第1節 收容兒童의 一般特性 95
第2節 收容兒童들의 施設入所時期와 原因 102
第3節 收容兒童의 家族事項

第4節 收容兒童의 將來問題(高等學生 以上)	123
第5章 從事者斗 退所兒童 現況	132
第1節 從事者 現況	132
第2節 退所兒童의 現況	140
第6章 主要結果要約 및 政策提言	149
第1節 主要結果要約	149
第2節 政策提言	160
參考文獻	169
附錄	173

表目次

〈表 2- 1〉 兒童人口 變化 推移 31
〈表 2- 2〉要保護兒童 發生 現況
〈표 2- 3〉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種類 및 機能 39
〈表 3- 1〉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種別, 年度別 現況46
〈表 3- 2〉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定員과 現員 48
〈表 3- 3〉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現員 對 定員 比率 51
〈表 3- 4〉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의 適正兒童 規模 $\cdots\cdots 53$
〈表 3-5〉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入所經路別 施設의 入所者數 \cdots 55
〈表 3- 6〉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退所者數 58
〈表 3-7〉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兒童 退所時 支給하는
自立支援金60
〈表 3-8〉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兒童의 自立支援金의
充分與否 및 不充分時 合當한 自立支援金61
〈表 3- 9〉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總收入 및 收入源別 收入 $\cdots \cdots 63$
〈表 3-10〉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平均 支出合計(1996年) 66
〈表 3-11〉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兒童 1人當 總 支出額과 平均
支出額67
〈表 3-12〉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收容兒童 1人當 建坪 및 平均
建坪68
〈表 3-13〉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의 最初 設置年度 $\cdots\cdots 69$
〈表 3-14〉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現所在 施設의 設置年度70
〈表 3-15〉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全體 建物棟數 및 建物規模 … 71

〈表 3-16〉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1990年 以後 增·改築한 建物
	棟數 및 建物規模 73
〈表 3-17〉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增·改築이 필요한 建物棟數
	및 建物規模74
〈表 3-18〉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의 地域的 特性75
〈表 3-19〉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入所前 記錄保有狀態 및
	入所後 生活記錄簿 作成狀態76
〈表 3-20〉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의 住居形態77
〈表 3-21〉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의 바람직한 住居形態 79
〈表 3-22〉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의 現 住居形態와
	바람직한 住居形態 82
〈表 3-23〉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바람직한 住居形態로 轉換意思가
	있다면, 向後 몇 年內에 轉換計劃83
〈表 3-24〉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지난 1年間 指導·監督回數의
	平均回數84
〈表 3-25〉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短期保護(一時保護)事業
	運營與否85
〈表 3-26〉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短期保護(一時保護)事業 向後
	運營意思與否86
〈表 3-27〉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地域社會內 住民福祉
	事業運營與否 및 事業數 87
〈表 3-28〉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地域社會內 住民福祉事業 88
〈表 3-29〉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並設保育施設 設置意思與否의
	設置 施設89
〈表 3-30〉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다른 福祉施設로
	轉換意向與否 및 選好 施設種類91

〈表 3-31〉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의 移轉意思與否 및 가장
	큰 要求事項 92
〈表 3-32〉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運營中斷 意思與否 93
〈表 3-33〉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他施設運營法人이나 支援法人
	으로 轉換意向與否 및 어떤 法人94
〈表 4- 1〉	施設種類別 收容兒童의 一般特性96
〈表 4- 2〉	施設種別 收容兒童의 學歷 및 宗教98
〈表 4- 3〉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障碍兒斗 他市道 兒童有無 哭
	平均 障碍兒와 他市道 兒童數 100
〈表 4- 4〉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滿 18歲 以上 兒童數 101
〈表 4- 5〉	施設種類別 收容兒童의 入所年度의 入所年齡 104
〈表 4- 6〉	施設種類別 收容兒童의 入所原因 106
〈表 4- 7〉	施設種類別 父母生存한 兒童들의 入所原因 108
〈表 4- 8〉	施設種類別 父 또는 母가 生存한 兒童들의 入所原因…109
〈表 4- 9〉	施設種類別 兒童自身의 問題로 入所한 兒童들의
	入所原因110
〈表 4-10〉	施設種類別 嬰兒園에서의 轉園與否 110
〈表 4-11〉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入所前 함께 살았던
	家族과 親戚
〈表 4-12〉	施設種類別 家族이나 親戚집 訪問經驗與否 分布 114
〈表 4-13〉	施設種類別 지난 1年間 家族이나 親戚집 訪問回數
	分布
〈表 4-14〉	施設種類別 家族이나 親戚訪問 與否116
〈表 4-15〉	施設種類別 지난 1年間 家族이나 親戚이 찾아온 回數·116
〈表 4-16〉	施設種類別 施設에서 함께 生活하는 親兄弟·姉妹數 ···· 118
〈表 4-17〉	施設種類別 父母의 生存與否 分布119

〈表 4-18〉施設種類別 父 또는 母의 經濟生活水準 121
〈表 4-19〉 施設種類別 收容兒童의 한달 용돈과 용돈출처 122
〈表 4-20〉施設種類別 收容兒童의 希望하는 最終學校 123
〈表 4-21〉施設種類別 高等學校까지만 다니고 싶다는 理由 124
〈表 4-22〉施設種類別 專門大 以上 다니고 싶다는 理由 124
〈表 4-23〉施設種類別 退所時 가장 걱정되는 것 125
〈表 4-24〉施設種類別 將來 希望職業
〈表 4-25〉施設種類別 就業時 考慮事項
〈表 4-26〉施設種類別 退所後 居住計劃
〈表 4-27〉施設種類別 自立生活館의 利用可能 認知度 128
〈表 4-28〉施設種類別 退所後 自立生活館의 利用與否129
〈表 4-29〉施設種類別 自立支援金에 대한 認知度 130
〈表 4-30〉施設種類別 自立支援金의 使用用度 計劃 130
/丰 5 1\ 臼旁詞副 收容体訊 秳則 体部 6) 从事 考 4 档
〈表 5-1〉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의 從事者規模133
〈表 5- 2〉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從事者 1人當 收容兒童數 134
〈表 5- 2〉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從事者 1人當 收容兒童數 134
〈表 5- 2〉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從事者 1人當 收容兒童數 ····· 134 〈表 5- 3〉施設種類別 從事者의 職種 ········· 135
〈表 5- 2〉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從事者 1人當 收容兒童數 134 〈表 5- 3〉施設種類別 從事者의 職種 135 〈表 5- 4〉施設種類別 從事者의 性別 136
〈表 5- 2〉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從事者 1人當 收容兒童數 ····· 134 〈表 5- 3〉施設種類別 從事者의 職種 ···································
〈表 5- 2〉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從事者 1人當 收容兒童數 ····· 134 〈表 5- 3〉施設種類別 從事者의 職種 ···································
〈表 5- 2〉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從事者 1人當 收容兒童數 … 134 〈表 5- 3〉施設種類別 從事者의 職種 … 135 〈表 5- 4〉施設種類別 從事者의 性別 … 136 〈表 5- 5〉施設種類別 從事者의 年齡 … 137 〈表 5- 6〉施設種類別 從事者의 學歷 … 137 〈表 5- 7〉施設種類別 從事者에 대한 政府補助與否 … 138
〈表 5- 2〉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從事者 1人當 收容兒童數 … 134 〈表 5- 3〉施設種類別 從事者의 職種 … 135 〈表 5- 4〉施設種類別 從事者의 性別 … 136 〈表 5- 5〉施設種類別 從事者의 年齡 … 137 〈表 5- 6〉施設種類別 從事者의 學歷 … 137 〈表 5- 7〉施設種類別 從事者에 대한 政府補助與否 … 138 〈表 5- 8〉施設種類別 從事者의 該當職種 資格證與否 … 139
〈表 5- 2〉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從事者 1人當 收容兒童數 … 134 〈表 5- 3〉施設種類別 從事者의 職種 … 135 〈表 5- 4〉施設種類別 從事者의 性別 … 136 〈表 5- 5〉施設種類別 從事者의 年齡 … 137 〈表 5- 6〉施設種類別 從事者의 學歷 … 137 〈表 5- 7〉施設種類別 從事者에 대한 政府補助與否 … 138 〈表 5- 8〉施設種類別 從事者의 該當職種 資格證與否 … 139 〈表 5- 9〉施設種類別 從事者의 勤務年數 … 140
〈表 5- 2〉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從事者 1人當 收容兒童數 … 134 〈表 5- 3〉施設種類別 從事者의 職種 … 135 〈表 5- 4〉施設種類別 從事者의 性別 … 136 〈表 5- 5〉施設種類別 從事者의 年齡 … 137 〈表 5- 6〉施設種類別 從事者의 學歷 … 137 〈表 5- 7〉施設種類別 從事者에 대한 政府補助與否 … 138 〈表 5- 8〉施設種類別 從事者의 該當職種 資格證與否 … 139 〈表 5- 9〉施設種類別 從事者의 勤務年數 … 140 〈表 5-10〉施設種類別 退所兒童의 性別 … 141

〈表 5-14〉	施設種類別	退所兒童의	退所事由145
〈表 5-15〉	施設種類別	退所兒童의	就業與否 및 職種 146
〈表 5-16〉	施設種類別	退所兒童의	住居類型 148

要約

1. 調査目的 및 方法

-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兒童福祉 收容施設과 동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全數調査를 실시하여 시설의 운영현황과 수용되어 있는 아동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 및 수용아동의 福祉增進을 도모함.
- 이를 위해 아동복지 수용시설 271개소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1997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15일간 조사를 실시하였음.

- 主要 調査內容

- 兒童福祉 收容施設 調査: 수입, 지출 등 재정실태, 시설 규모, 거실수, 방수 등 시설·설비의 규모 및 상태, 정원, 현원, 입·퇴소현황 등 수용아동 현황, 시설 종사자 현황, 기타 관리 운영 현황
- 兒童個人調査: 성, 연령, 교육정도 등 아동의 일반사항, 입소당시의 연령, 원인, 부모의 생존여부 등 입소당시의 상황, 가족 및 친척의 시설 방문 등 가족사항, 그리고 고등학생 이상인 경우 퇴소후 직업 등 장래희망사항

2. 主要 調査結果

- 1997년 3월 31일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아동복지수용시설은 총

271개로서, 이 가운데 育兒施設이 77.9%인 211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이 嬰兒施設로서 21개소이었음.

-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은 총 16,620명으로서 육아시설에 12,875명(77.5%), 영육아시설 1,343명(8.1%), 영아시설 1,273명 (7.7%)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
- 아동복지수용시설 전체의 平均 定員은 101명, 平均 現員은 64명이었음. 정원대비 현원의 비율을 보면, 전체 시설의 평균은 64.7%로서이는 일본의 아동복지수용시설의 1995년도 收容率 76.7%(후생성, 1995: 21)보다 더 낮은 수용률임.
 - 시설의 適正兒童數는 평균 77명임. 이는 현재 수용하고 있는 평균 현원 64명보다는 많고, 평균 정원 101명 보다는 적은 것임.
- 아동복지수용시설 전체의 平均 收入은 3억 9천3백만원이었으며, 전체 수입중 政府補助金이 71.5%, 民間支援金이 14.2%, 自體收入金이 13.5%, 그리고 外援補助金은 0.8%임.
 - 支出內容을 살펴보면, 수용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직접비가 31.4%였고, 간접비가 62.5%, 그리고 이월금이 6.1%였음. 이중 아동들의 의식주에 지출되는 것은 19.5%였고, 아동들의 자립을 위한 情緒 및 能力開發을 위해 투입되는 교육훈련비는 7.6%임. 人件費가 차지하는 비중이 40.3%로 나타나 시설운영을 위한 지출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보강 및 유지비로 10.9%를 지출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의 57.7%인 154개 시설이 '50년대에 설치되었고, 89.1%
 인 238개 시설이 '69년 이전에 설립되어 대부분의 시설이 설립후
 30년이 지난 시설임. 建物棟數는 평균 4개동이며, 2개동 이하인 경

우가 전체 268개 시설중 101개 시설로 약 37.7%인 반면에 7개동 이상인 경우는 59개 시설로 약 22.0%였음.

- 중·개축이 필요한 建物棟數는 평균 1.8개였으며, 시설종별로는 시설의 老朽度가 상대적으로 많은 육아시설이 중·개축이 필요 한 평균 건물동수가 1.9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6개인 영 아시설과 영·육아시설의 순이었음.
-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현 住居形態는 전체 271개 시설중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및 共同炊事'하는 경우가 전체의 48.0%인 130개 시설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4.3%인 120개 시설이 集團寄宿舍 형태, 小宿舍制의 형태인 경우는 겨우 5.5%인 15개 시설이었음.
 - 바람직한 시설형태로서는 전체 268개 시설중 45.9%인 123개 시설이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및 공동취사' 하는 형태가 바람 직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26.1%인 70개 시설이 소숙사의 형태를, 19.4%인 52개 시설은 그룹홈을 각각 바람직한 주거형태로 보고 있었음.
 - 集團寄宿舍가 바람직한 주거형태라고 응답한 경우는 7.5%인 20 개 시설로 나타나 대부분의 시설장들은 집단기숙사가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바람직한 주거형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
-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從事者는 총 3,129명으로 시설 당 평균 11명임. 종사자 한 사람이 평균 5.7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保育士는 총 1,634명으로 각 시설당 약 6명이 있음.
 - 종사자 3,129명중 여자가 75.6%였고, 남자는 23.0%였으며, 평균 연령은 39.3세이고, 70세 이상의 高年齡도 2.9%였음.
 - 從事者들은 고등학교졸업이 4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

- 학교 이상(26.1%), 중학교 이하(19.7%), 전문대학(6.0%) 등의 순이었음.
- 從事者중 해당직종과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한 비율은 32.4%였고, 67.0%는 資格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근무년수는 약 8년인 97.4개월이었음.
-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대한 施設長의 의향을 보면,
 - 並設保育施設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전체 249개 시설중 52.2%인 130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복지시설로 轉換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전체 259개 시설중 39.4%인 102개 시설이었음.
 - 시설을 移轉할 의사를 가진 시설은 22.5%인 60개 시설이었으며, 이전시 要求事項중 가장 많은 것이 移轉費用支援이었고, 그 다음이 開發制限地域 緩和, 세제상의 혜택, 지역주민의 시설입주 허용 등이었음.
 - 施設運營을 中斷할 의사가 있는 시설은 전체 257개 시설중 5.4%
 인 14개 시설이었으며, 육아시설가운데 10개 시설이 운영을 중단할 의사를 가졌음. 아동복지 수용시설외 타시설을 운영하는법인이나 지원법인으로 전향할 의향을 가진 시설은 전체 261개시설중 23.0%인 60개 시설이었음.
- 수용아동의 일반 특성을 보면, 남자가 55.1%로 44.9%인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아동들의 평균 연령은 12세였음. 敎育程度別 分布를 보면, 초등학교인 경우가 31.2%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가 25.6%, 고등학교가 24.5%, 미취학이 15.8%, 기타가 2.9% 등으로 나 타났음. 이들의 종교는 기독교가 76.4%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무교로 13.5%였으며, 천주교 7.0%, 불교 2.1% 등이었음.

- 入所 당시 入所理由를 보면,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보다는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입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부모가 모두 사망한 고아인 경우는 6.2%에 불과한 반면,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재혼, 행방불명 등의 요인으로 입소한 경우가 42.3%로 가장 많고, 부 또는 모 가운데 1인이 생존해 있는 경우는 19.1%였음. 한편, 부모의 生存與否를 알 수 없으나, 생존이 예상되는 기아나 미아의 이유로입소한 경우는 27.8%에 이르고 있음.
- 조사당시 부모가 모두 모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아동은 28.9%이며, 아버지만 생존해 있는 경우는 8.1%, 어머니만 생존해 있는 경우는 14.7%인 반면, 부모 모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 아동은 6.5%이었음.
- 아동들중 고등학교 재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最終學校를 알아본 바, 고등학교가 최종학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54.0%로 과 반수를 넘었고, 전문대 이상을 원하는 경우는 46.0%였음.
 - 高等學校까지만 다니기를 원하는 이유는 첫째, 53.8%가 직장을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독립생활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경우로 19.4%였으며, 공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17.7%, 주변 환경이 안되어서 고등학교까지만 다니겠다는 경우는 5.6%였음.
 - 專門大 이상을 다니고 싶어하는 이유를 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한 경우로 67.2%였고, 그 다음이 공부를 희망하기 때문이라는 경우로 15.4%였으며, 사회적 명예를 위한 경우는 7.6%였음.
 - 施設退所時 가장 걱정되는 것은 自立하는 것으로서 전체의

41.8%였고, 그 다음이 시설출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 23.4%, 취직기회가 없을까봐 11.3%, 살 거처가 없는 점 10.4% 등이었으며, 걱정거리가 없다는 경우는 11.6%이었음.

- 아동들의 장래 希望職業은 전문·기술직이 3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사무직(19.4%), 판매서비스직(17.6%), 기능공(9.0%), 행정 관리직(4.6%), 단순노무직(2.2%), 농업근로자(1.0%) 등의 순이었음.
- 퇴소후 住居問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퇴소시점에 가봐야 안다고 하는 경우가 3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회사기숙사(17.0%), 가족이나 친척집(15.0%), 선배나 동기들과 방을 마련(9.3%), 자립생활관(9.2%), 주택전세금으로 마련(7.2%), 직장에서 해결(5.0%) 등의 순임.
- 시설에서 퇴소한 후에 自立生活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고등학교 재학 이상인 아동들중 62.0%였고, 나머지 38.0%는 시설에서 퇴소한 연후에 자립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음.
- 퇴소후 지급되는 自立支援金에 대해 잘 알고있다는 경우가 56.4%였고, 조금 알고있다는 경우가 35.8%로 나타나 자립지원 금에 대해 아는 경우는 92.2%였음. 퇴소시 받게되는 자립지원 금을 住宅資金으로 사용하겠다는 경우가 3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정기적금(29.6%), 자기개발비(21.8%), 가재도구(8.8%), 연고자지원(1.1%) 등의 순이었음.
-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지난 1년간 퇴소한 兒童들은 전체 5,422명 임.
 - 퇴소한 아동들의 전체 평균 연령은 10.8세였고, 퇴소아동들의 학

력은 미취학이 3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25.5%), 초등학교(17.5%), 중학교(15.8%), 전문대 이상(1.2%) 등의 순임.

- 퇴소한 아동들은 전체 평균 약 4년인 48.9개월 동안 수용되어 있었으며, 退所事由를 보면, 緣故者 引繼로 인한 경우가 35.3%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年長兒 退所(16.6%), 입양·위탁 (16.0%), 타시설 전원(15.5%), 무단퇴소(6.7%) 등이었고, 특히 사망으로 인하여 퇴소하는 경우도 0.9%이었음.
- 퇴소아동들중 就業을 한 경우는 24.6%였고, 비취업이 32.8%였으며, 취업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42.6%였음. 취업아동들의 就業職種은 30.6%인 기능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단순노무직 (15.2%), 전문기술직(15.2%), 기타 서비스직(13.8%), 사무직 (12.3%), 음식·숙박업(5.6%), 도소매판매(4.5%), 농업근로자(0.7%) 등의 순이었음.
- 퇴소후 住居類型을 보면 부모집이 2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회사기숙사(10.0%), 양부모집(9.2%), 공동으로 자취(5.9%), 단독으로 자취(5.1%), 자립생활관(1.1%) 등의 순이었음.

3. 政策提言

-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機能 再定立
 -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수용률은 64.7%로 수용시설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과거와 같은 진정한 의미의 고아는 전체의 6.2%에 불과하고 수용아동중 부모중 어느 한 쪽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가 61.6%로서 收容兒童의 特性이 과거와는 차이가 나 고 있음.

- 또한 전체 시설중 39.4%가 어린이집, 老人福祉施設, 장애인복지 시설 등으로 전환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短期保護(一時保護) 事業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이 과반수를 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을 이러한 현실과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收容爲主의 기능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利用施設의 기능을 추가하도록 함.
- 일반적인 보호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영·육아시설의 수요 감소 와 심리·정서적·신체적 치료 및 교육, 교화 및 선도 등 特殊保 護 目的의 專門的 施設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시설의 기 능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임.
- 施設法人의 경우 적절한 가정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법인의 관리 하에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룹홈제도의 도입을 검토 함.
- 타목적 시설로의 전환의향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이들이 전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財産權의 보상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大規模 集團寄宿舍에서 小規模의 小宿舍 施設로 轉換

-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施設長이나 總務는 집단기숙사 주거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겨우 7.5%에 불과하여 集團寄宿 숨는 결코 바람직한 住居形態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및 공동취사하는 형태나 소숙사제, 그룹 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시설에 대한 시각을 단순한 수용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 모 집단수용개념에서 수용자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小規模의 家庭 雰圍氣를 造成할 수 있게 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시설내 아동과 보육사로 세대를 형성하고 가정생활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기존 시설을 小宿舍로 전환할 경우 이에 따른 시설의 再建築費 用과 소숙사제도 도입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財政支援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施設運營의 開放 및 地域社會 參與 誘導

- 부모 및 가족, 친구 등 사회인들과의 상호접촉이 가능하도록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 후원자 및 결연자 발굴 및 관리, 관할 지역내 각종 문화·체육시설 및 기타 복지시설의 활용 등 지역사회내에 있는 人的·物的 資源을 조직화 내지체계화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임.
-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弘報活動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社會福祉 收容施設 入所對象의 現實化

- 수용시설의 입소자격을 현행 無依無托하여야 한다는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돌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입소가 가능하도록 入所資格條件을 현실화함.
- 보호자나 부양능력자가 없거나 또는 이들의 생활수준요인 외에도 가출, 이혼, 재혼,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시설입소가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부모와의접촉을 양성화하면서, 부모와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家庭에 투

期復歸토록 유도해야 함.

- 家族프로그램의 活性化

- 시설보호는 家庭保護의 次善策이라는 입장에서 가족이 있는 아동들의 시설입소는 가능한 예방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시설보호가 제공되고 이들의 상황이 개선되면 가능한 조기에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시설아동의 조기 가정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아동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시켜야 할 것임.

- 兒童福祉施設의 專門化 및 專門人力 確保

-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종사하는 從事者들중 해당직종 資格證을 소지한 경우가 전체중 32.4%에 불과하고, 근무년수도 3년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45.8%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從事者들의 學歷도 고등학교 이하가 전체의 67.1%에 달하고 있음.
- 從事人力의 人件費를 상향조정하고 適正人力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종사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다한 업무량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專門性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과 배치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국내외 우수시설의 견학 및 시찰 등 技術交流制度를 마련하여 새로운 기술 도입은 물론 사기앙양책을 마련하고, 국내외 專門訓練機關이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임.

- 退所兒童 管理體系 强化

- 收容兒童中 시설에서 퇴소한 연후에 自立生活館을 이용할 생각이 있는 경우가 약 1,342명이며, 아직 결정하지 못한 아동들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2,000명 수준은 되리라 판단됨. 하지만 현재自立生活館은 총 10개 시설에 총 210명이 수용되고 있어 이들이용 희망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또한 退所兒童들은 거처를 확보하기 위해 숙식이 제공되는 직종 인 기능공,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등을 選好 하는 傾向이 있으며, 자립지원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은 사무직, 전문·기술직 등에 보다 많이 취업하고 있는 실정임.
-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自活支援센터의 확충 등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직장이나 거처가 불안정하거나 마련될 수 없을 경우 현재 18세까지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세 정도까지 연장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시설에서 거처와 숙식을 제공하거나 자활지원센터에 委託措置할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

- 自立支援金의 現實化

- 현행 정부에서 지원하는 自立支援金은 평균 174만원으로 전체 271개 시설중 67.9%인 184개 시설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自立支援金은 평균 713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施 設長들이 認識하고 있음.
- 그리고 自立支援金을 住宅資金으로 사용하겠다는 아동들이 많은 실정임. 하지만 현행의 自立支援金으로는 현실적으로 住宅資金 으로 활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보다 現實化되어야 할 것

임. 참고로 부산시의 경우 1998년도 施設退所者 2人을 기준으로 2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自立支援金이 退所兒童들을 위해 효과를 발휘할 것임.

- 施設運營의 評價體系開發

- 시설운영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시설운영성과를 비교분석하여야 할 것임.
- 전국적으로 시설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標準評價模型을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중심으로 지역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침을 개발함.
- 시설운영평가 결과는 정부의 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시설평가의 등급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제공 이나 保護兒童 配置時 根據資料로 활용함.
-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국내·외 시찰 및 연수를 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하는 등 정부지원시 추가지원함.

第1章序論

第1節 研究背景 및 目的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兒童의 權利에 관한 國際協約」에 따르면,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하며, 兒童時節에는 특별한 保護와 援助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정기원 외, 1994). 이를 위해 동 협약에서는 사회의 기초집단인 가족이 모든 구성원 특히 兒童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自然的 環境을 제공하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는 필요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兒童은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자랄 때 가장 건전한 人格形成뿐만 아니라 유능한 社會人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同 協約 제20조에서는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家庭環境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보호에는 養育委託, 入養, 필요한 경우적절한 兒童養育機關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여, 태어난 가정에서의 양육이 불가능할 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가정위탁, 입양, 또는 수용시설보호와 같은 代理的 保護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리적 보호가운데 가정위탁이나 입양사업은 혈연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文化的 特性 때문에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兒童福祉 收容施設을 중심으로 이러한 요보호아동

에 대한 代理的 保護를 제공해 왔다. 따라서 시설보호서비스는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 역사상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兒童福祉 收容施設은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兒童을 대상으로 집단보호와 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政府는 그 동안의 경제성장에 따라 兒童福祉 收容施設에 대한 지원수준을 꾸준히 증가시켜온 결과 시설아동의 基礎生計는 어느 정도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兒童福祉 收容施設은 아직도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아직도 아동복지 수용시설은 財政의 脆弱으로아동의 보호수준이 단순 양육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시설보호가필요한 要保護兒童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는 못하고 있다. 즉 수용시설의 보호수준은 최소한의 衣食住를 해결하는 수준이고, 의식주 이외의 교육, 의료, 퇴소후 프로그램 등 시설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兒童의 욕구에 부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변용찬외, 1996).

또한 施設保護의 質을 결정하는 종사자에 대한 보수수준이 낮아 질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서비스제공이 어려우며, 施設兒童의 적성이나 능력개발과 자활에 필요한 직업교육 및 훈련 등 질적인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退所兒童들의 自立基盤造成을 위한 지원시책의 미흡으로 퇴소아동들이 퇴소후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장기간 보호하여 온 施設兒童들이 退所後 건전한 사회생활을 향유하지못하고 문제집단화하는 하나의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단순히 收容保護를 위주로 하는 施設運營體系로서는 시설아동의 바람직한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施設兒

童을 보다 건강하고 자립·자조할 수 있는 능력있는 성인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全般的인 施設運營體系의 改善이 필요하다.

한편, 출산력의 감소에 따른 아동인구의 감소경향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간 이룩한 産業化, 都市化, 核家族化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족의 기능 및 역할에도 변화를 초래함에 따라 家族解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요보호아동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가장의 실직, 이혼이나 별거가족의 증가, 가장의 사망이나 사고, 질병 등 家族解體現象이 증가하고 있는 社會現象으로 과거에는 부모가 없는 아동이 주로 요보호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가족적인 요인으로 要保護狀態가 되는 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社會經濟的 與件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요보호아동을 위한 대리적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兒童福祉 收容施設을 둘러싼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요보호아동의 지속적인 발생, 장애아 등 特殊保護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증가, 정부의 지역복지·재가복지정책 강조 등 수용시설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운영개선뿐만 아니라 시설의 기능 및 역할을 단순 수용보호에서 한 단계 발전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 要保護兒童의 特性變化에 따라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本 研究에서는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아동복지 수용시설과 동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全數調査를 실시하여 시설의 운영현황과 수용되어 있는 아동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兒童 福祉 收容施設에 대한 運營改善 및 收容兒童의 福祉增進을 도모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시설아동 개개인에 대한 개인조사 및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운영 현황을 정밀히 파악하여 시설운영 개선방안과 시설아동에 대한 보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兒童福祉 정책수립에 필요한 基礎資料를 제공하고자 한다.

第2節 研究範圍 및 方法

1. 硏究의 範圍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인 社會福祉施設증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2조 제6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조)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兒童福祉施設중에는 아동상담소나 아동전용시설등 이용시설도 포함되어 있고, 조산시설등 모자보건시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本 硏究에서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의 개인적인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적중의 하나이므로 分析對象 施設은 수용시설에 한정하기로 하고 이용시설은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영아시설, 육아시설, 직업보도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교호시설이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수용시설들은 모두 韓國兒童福祉施設聯合會에 등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상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兒童福祉 收容保護業務를 수행하고 있는 수용시설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하였다.

2. 研究方法

본 연구에서는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7년 3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271개 시설 모두를 대상으로 개별 施設長이나 總務가 작성하는 시설조사표와 수용되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개인조사표 등 2종의 사전설계된 調査票를 이용하여 1997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兒童個人調査票는 아동의 의식에 관한 문항 등이 있는 관계로 아동자신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보육사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兒童個人調査票와 施設調査票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동 조사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관하에 한국아 동복지시설연합회에서 각 시설에 배부되었고, 작성된 조사표는 해당 시·군·구의 행정협조를 얻어 保健福祉部와 韓國兒童福祉施設聯合會에서 취합하였다. 그 결과 전체 271개의 시설 모두에서 응답하여 100.0%의 조사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조사된 자료의 전산처리를 위해 資料入力은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에서 담당하였고, 資料分析과 집 필은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서 수행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현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활용된 調查項目은 각 시설의 수입, 지출 등 재정실 태, 시설 규모, 거실수, 방수 등 시설·설비의 규모 및 상태, 정원, 현원, 입·퇴소 현황 등 收容兒童 現況, 시설 종사자 현황, 기타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兒童個人調査票에는 성, 연령, 교육정도등 아동의 일반사항, 입소당시의 연령, 원인, 부모의 생존여부 등 입소당시의 상황, 가족 및 친척의 시설 방문 등 家族事項, 고등학생 이

상인 경우 퇴소후 직업 등 將來希望事項 등의 항목이 조사되었다.

第3節 報告書의 構成

本 報告書는 크게 6장으로 되어있다. 第1章은 서론으로 연구배경,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등이 있고, 第2章은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대한 社會的 環境을 설명하기 위해 시설아동과 시설복지에 대한 기존문헌 고찰을 하였고,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現地調査 資料를 분석한 것으 로서 第3章은 시설현황분석, 第4章은 수용아동 현황분석, 第5章은 종 사자와 퇴소아동 현황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第6章은 結論 및 政策提言을 제시하고 있다.

第2章 施設兒童과 施設福祉

第1節 兒童福祉施設을 둘러싼 與件의 變化

지난 30여 년간 政府의 강력한 家族計劃事業의 추진으로 인한 출산력 저하로 총인구에서 아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출산력수준은 1960년 합계출산력이 6.0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에 人口代置水準인 2.1에 도달하였고, 1997년에는 이 수준이 1.7정도까지 떨어졌다(조남훈 등, 1997). 이러한 출산력 수준의 감소경향에 따라 우리 나라의 兒童人口는 지난 1970년 總人口의 49.0%에 이르러 아동의 비율은 총인구의 거의 절반수준이었으나 소자녀관의 정착, 지속적인 家族計劃의 수용, 結婚年齡의 상승 등의 요인으로 계속 감소하여 1998년 현재 18세 미만의 아동인구는 총인구의 27.2%인 12,651천명이 되었다. 이러한 兒童人口의 總人口에 대한 構成比는 2000년 26.2%, 2010년 24.1%, 2020년 21.0%로서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아동인구는 1천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1996).

〈表 2-1〉兒童人口 變化 推移

구분	1970	1980	1990	1998	2000	2010	2020
총인구(천명)	32,241	38,124	42,869	46,430	47,275	50,618	52,358
아동인구(천명)	15,811	15,621	13,704	12,651	12,383	12,205	10,980
구성비 (%)	49.0	41.0	32.0	27.2	26.2	24.1	21.0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12.

그러나 이러한 兒童人口의 減少傾向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간 이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 도시화, 그리고 핵가족화 등 사회의 전반적이고 급격한 변화로 社會的인 保護가 필요한 아동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개인과 사회의 매개체로서 한 사회의 통합뿐 아니라 個人의 社會化, 건강한 勞動力의 再生產, 家族構成員의 生活保障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안정과 복지는 곧 사회와 국가의 안정성으로 이어지며, 지속가능한 國家發展과사회적 정의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이 된다(변용찬, 1995).

그러나 우리 나라의 가족은 지난 30여 년간에 걸친 급속한 經濟成 長의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즉, 급속한 産業化, 노동인구의 도시이동에 따른 都市化,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따른 小子女化, 서구문화의 유입에 따른 核家族化 등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쇠퇴하는 경향에 따라 가족의 구조가 다양화되었고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있으며, 家族價值觀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가족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世界的인 趨勢이나, 우리 나라의 경우 변화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변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국민복지기획단, 1995).

이러한 여러 요인으로 家族解體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야 할 아동들이 가정내에서는 보호받기가 어려워 지게 되어 社會保護의 要求가 증대되고 있다(장인협, 1993). 이와 더불어 산업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빈곤 등의 원인으로 가족내에서 생활할 수 없는 要保護兒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혈통을 중시하는 풍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國內入養이나 家庭委託保護가 어렵기 때문에 해체가정의 아동은 주로 영·육아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실정이다.

〈表 2-2〉要保護兒童 發生 現況

(單位: 名)

	구분 계	발생유형				보호내용			
구분		기아	미혼모 아동	미아	가출아	시설 보호	위탁 보호	입양	소년 소녀
1991	5,095	1,610	2,020	188	1,277	3,414	999	682	-
1993	4,451	1,330	1,904	137	1,080	2,940	943	568	-
1995	4,576	1,227	1,285	149	1,915	2,819	505	472	780
1996	4,951	1,276	1,379	189	2,107	3,161	727	479	584

資料: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각 연도

한편 우리 나라가 1991년 비준한「兒童의 權利에 관한 國際協約」 제20조에서는 ①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保護와 援助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으며, ②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하고, ③ 이러한 보호는 養育委託, 入養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兒童養育機關에 두는 것을 포함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UNICEF, 1998; 정기원·오미영, 1994). 즉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해 國家가 대체보호를 할 수 있는 養育機關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양육기관에서의 보호에 대해 계속성의 보장을 兒童의 權利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우리 나라는 최근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低成長·高失業·高物價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한 構造調整作業이 전 부문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구조 조정과정에서 失業者의 增加, 貧困家庭의 增加, 그리고 離婚 등 家族解體의 增加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적절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政策的인 關心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兒童의 權利에 관한協約에서 제시한 바대로 국가의 책임하에 이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다만, 要保護兒童에 대한 보호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중요한 환경이 바로 가정이라는 兒童福祉의 기본원리하에 입양이나 가정위탁사업이 혈통을 중시하는 문화적인 풍토속에서 활성화가 어렵기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兒童福祉 收容施設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현용, 1995; 김현용, 1997). 따라서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要保護兒童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온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기능과 역할의재정립을 위해 國家의 支援이 强化되어야 할 것이다.

第2節 要保護兒童

要保護兒童은 태어난 가정에서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한 아동으로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보건복지부, 1996). 구체적으로는 ① 貧困家庭兒童, 缺損家庭兒童, 父母不在兒童 등 양육환경상에 문제가 있거나, ② 신체장애아동, 정신장애아동, 정서장애아동 등 身體的, 知的, 情緒的 障碍兒童, ③ 가출아동이나 비행아동 등 사회적, 법적 보호를 요하는 아동, 그리고 ④ 학대, 유기아동, 미혼모의 아동 등 特別保護를 要하는 兒童으로 구분할 수 있다(장인협·오정수, 1993). Kadushin과 Martin(1988)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를 크게 지지적 서비스, 보조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지적 서비스로서는 相談 및

家族治療서비스 등이 있으며, 보조적 서비스로서는 保育서비스, 홈메이커서비스 등이 있다. 대리적 서비스는 부모가 아닌 제3자가 父母의 役割을 전부 떠 맡는 경우로서 아동의 출신 가정에서 아동양육의 기능을 상실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社會的, 情緒的, 物質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필요한 서비스로서 여기에는 入養, 家庭委託, 施設保護서비스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적인 개념으로서의 要保護兒童은「아동이 그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保護者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을 말한다. 아동에게는 家庭保護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1차 安全網으로서작용하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살아갈 수없게 되었을 때 이러한 아동을 入養이나 家庭委託 등 제2차 安全網이나 施設保護 등 제3차 安全網에 의존하게 된다(Zuckerman, 1983). 이러한 요보호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크게 家庭保護事業과 施設保護事業으로 구분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6).

정부의 가정보호사업에는 少年少女家長 保護事業, 국내외 입양사업, 가정보호위탁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의 대상은 父母의 死亡,疾病,心身障碍,家出,離婚,受刑 등으로 인하여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야 함으로써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고 生活保護對象者 選定基準에 적합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외 입양사업 대상자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한 경우,법원에 의하여 親權喪失의 선고를 받은 자,그리고 기타 부양의무를 알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 뢰한 자가 대상이 된다. 한편 家庭委託保護事業 對象兒童은 보호아동

이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보다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될 경우 要保護兒童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과 협의하 여 위탁보호대상아동으로 선정하게 된다.

한편 施設保護對象者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 보호자의 장단기 출타, 兒童虐待·放任 등으로 가정 에서 양육하기에 부적당한 아동, 기타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 아야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시설의 정원범위내에서 입소가 가 능하도록 入所對象 兒童을 확대하였다(보건복지부, 1998). 즉, 아동복 지의 기본 원리가 가능한 한 아동 자신의 가정에서 아동 자신의 부모 밑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도저히 아동자신의 가정뿐만 아니 라 入養이나 家庭委託이라는 환경도 가지기 어려울 때 이러한 시설보 호를 택하게 된다(Zietz, 1959). Friedlander(1974)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지적하고 있다. ① 부모의 심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더 이상 가정에 머무를 수 없게된 아동으로서 친 부모와의 情緒的인 密着關係로 인해 부모나 자신이 다른 가족과는 같 이 지내기를 거부하는 아동, ② 家族의 逆機能, 긴장 또는 이혼 때문 에 비롯된 아동의 문제가 가정에 남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나 委託家庭에서도 건전한 情緒的 關係를 맺을 능력이 없는 아동, ③ 이 전의 위탁가정에서 크게 실망하였거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 아직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 ④ 위탁가정이 수용하기 곤란 한 건강 또는 행동상의 문제를 가져 專門的 觀察과 指導와 통제된 환 경하에서 의료 또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 ⑤ 형제가 너무 많아 몇몇 委託家庭으로 분리되어야 하지만 서로 헤어지길 원치 않는 형제집단, ⑥ 原家族으로부터도 독립하고자 하였고 위탁가정으로부터 도 독립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兒童 및 靑少年과 ⑦ 가족내의 문제로 인하여 短期間의 保護가 필요하나 그 기간 동안 집단생활의 경험을

하는 것이 보다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는 청소년이다¹⁾. 이러한 점은 要保護兒童이 발견되었을 때 아동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인가라는 兒童福祉의 觀點에서 판단하여 입양이나위탁보호, 시설보호와 같은 대리적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배치하여야 하는가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第3節 施設保護

1. 兒童福祉施設과 種類

일반적으로 社會福祉施設은 공적인 사회복지제도에서의 복지서비스의 한 부분으로서 심신의 미발달, 미성숙, 노화 혹은 심신의 장애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자립이 곤란한 조건하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을 保護, 養育해야 할 家族이 없던가 혹은 가족의 부양기능이 결여되어 가정·가족 가운데에서는 생활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또는 治療, 援護하기에는 가정·가족이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 생활·치료상의 모든 장애에 대응하는 모든 서비스(즉 보호, 원호, 육성, 갱생 등)를 제공하여 그의 生存權을 보장하는 건물, 설비 및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시설운영조직을 통칭한다(전광현, 1990)고 정의할 수 있다.

兒童福祉施設도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시설보호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러한 시설보호의 목적은 가정에서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될 수 없는 兒童들에 대해서 集團保護와 治療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 있다. 즉 兒童福祉施設은 부모를 잃었거나

¹⁾ 노혜련, 아동복지서비스 1997에서 재인용.

부모 및 보호자의 결격사유로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孤兒, 棄兒, 障碍兒, 缺損·貧困家庭兒童 등과 같은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의 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Kadushin은 兒童福祉施設을 '아동과 무관한 성인들의 보호하에 아동집단의 공동생활을 위한 하루 24시간을 제공하는 住居施設'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社會福祉施設의 機能은 크게 가족이 없던가 가정붕괴 또는 부양기능의 약화에 의해 결손되어 있는 경우에 가정을 대신하여 보호 양호하는 家庭代替的 機能과 장애자, 와상노인 등의 치료, 간호, 재활 등 일반가정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치료·교육적 기능과 같은 專門的機能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전광현, 1990). 또한 보다 일반적으로는 ① 거주기능, 급식기능, 보건기능, 기타 생활서비스 제공기능 등생활서비스의 제공기능, ② 醫學的인 治療나 處遇의 機能, 교육이나훈련의 기능 등 치료훈련제공서비스 제공기능, ③ 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관계의 조정기능 등 援助서비스 제공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전광현, 1990). 이러한 기능을 통하여 시설아동들에 대한 정상적인 성숙을 도와주고, 이미 가졌던 불만족스러웠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나타나는 영향을 교정·변화케 해주며, 兒童의 人格發達이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온 사회적·정서적 문제들을 개선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장인협, 오정수, 1993).

우리 나라에는 이러한 機能과 役割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서 모두 11종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아동상담소와 아동전용시설은 이용시설이며, 조산시설은 「母子福祉法」에 규정되어 있어 아동복지 수용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수용시설은 아래 <表 2-3>과 같이 嬰兒施設, 育兒施設, 一時保護施設, 직업보도시설, 교호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6종이 있다.

〈表 2-3〉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種類 및 機能

종 류	목 적
영아시설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 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 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육아시설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소시 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가출아동·부랑아동 기타 요보호아동을 일시 입소시켜 보호하고 아동의 내력·성정 및 희망 등을 조사·감별하여 그 아동에 대한 장래의양호대책 기타 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직업 보도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12세 이상의 아동과 빈곤한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시설
교호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원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 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립지원 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 한 기간 숙소 또는 음식을 실비로 제공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課題

가. 兒童福祉 施設保護의 原理

아동복지의 기본원리는 태어난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아래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父母의 保護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代理的 서비스의 대안중의 하나로서 아동은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아동이기 때문에 성인과는 다른 特殊한 保護의 原理가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보호의 원리는 다 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최영욱 외, 1990; 김현숙, 1997).

먼저 인간생명의 絶對的 尊重原理이다. UN의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生存의 權利,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발달의 권리, 各種 搾取와 虐待,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보호의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責任感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등 參與의 權利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에게도절대적인 기준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人間性 回復·形成의 原理이다. 시설아동의 경우 정상적인 가정에서 생활을 해온 아동과는 달리 인간관계나 환경적응을 위한 행동양식에 지체현상이나 왜곡현상을 보일 수 있다. 施設에 入所하기 전에 家庭에서 放置·放任되었던 아동들을 전문적인 통찰력과 아동과 직원간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이들의 인간성과 주체성을 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親子關係尊重 調整의 原理이다. 현대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가장 불안정한 요소는 바로 친자관계의 약화라고 하는 사실이다. 특히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兒童들은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비록 부모는 생존해 있으나 이러한 親子關係는 극도로 약화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시설은 부모교육프로그램이나 家庭復歸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에게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강화할 수 있는 각종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個別化와 社會化 過程의 調和原理이다. 보울비(Bowlby, 1951)

는 모성결핍을 경험한 아동은 우울한 정서, 무관심, 불면증 등의 증상을 경험하게 되며 추후 問題兒童이나 非行兒童이 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면서 어머니와 아동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은 個別社會事業과 集團社會事業을 통하여 아동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社會參加 回復促進의 原理이다. 시설보호는 일시적인 것이며 가정과 사회의 복귀를 위하여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 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地域社會의 活動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생활의 능력을 향상시켜 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先進國의 經驗과 施設의 課題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시설보호에 관한 발전과정(이배근, 1997; 김 응석 외, 1994)을 검토해 보면 施設의 減少와 委託保護의 增加 등 脫施設化現象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용시설도 일반아동의 보호보다는 문제아에 대한 치료서비스 등 전문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아울러 施設의 規模가 小規模化되어 가고 있으며, 시설서비스가다양하게 분화되어 간다는 사실이다(Pecora, et al., 1992; 전국사회복지협의회, 1996).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보울비(Bowlby, 1951) 보고서의 영향으로 아동의 발달에 있어 시설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의 증가, 社會事業 分野에서 예방적 보호의 강화, 아동의가정양육에 대한 선호, 전문가주의의 강화, 시설보호비용의 증가 등의요인으로 收容施設 數와 수용대상 아동인구가 감소하였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委託家庭에의 배치 비중이 증가하였다(Lindsey, 1994; Laird and Hartman, 1985).

둘째, 수용시설에서는 父母의 離婚, 편부모, 부모의 실업과 빈곤, 약물중독, 소수인종의 아동 등 아동의 가족상황에 문제가 있는 아동이 증가하였고, 施設兒童의 연령분포상 유아 보다는 성장한 청소년기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시설아동의 특성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기노시타, 1996).

셋째, 施設의 小規模化이다. 대규모시설들은 소규모 주거시설로 나누어져서 일정한 한 장소에 같이 위치하거나 여러 지역에 분산되기도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원이 25명 이상인 공립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聯邦補助金의 支給을 중단하는 등 시설의 소규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Kadushin, 1988).

넷째, 다양한 보호서비스의 분화가 있었다. 收容施設은 다목적 시설, 소규모 호스텔, 가정형태의 그룹홈 등으로 나누어졌으며, 수용시설을 대체하여 발전한 家庭委託의 경우에도 장기의 가정위탁, 단기의 가정위탁, 치료 목적 또는 전문적 특수 가정위탁이 분화되어 발달하였다. 미국의 경우 이를 轉換施設化로 표현하고 있다(김응석 외, 1995). 轉換施設化란 일반 수용시설은 감소하는 대신 이들이 특수한욕구를 지닌 아동의 치료에 초점을 두어 정서장애아시설, 청소년교호시설 등의 시설이 늘어난 현상을 말한다.

다섯째, 專門家主義가 발전하였다. 수용대상인구의 특성의 변화와 함께 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기초한 전문적 접근방법이 적용되면서 收 容人口 對比 專門家의 比率과 資格水準이 향상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도 인구구조와 사회환경의 변화로 시설수용아동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청소년기 아동의 입소 증가, 단순한 養護 兒童 보다는 非行이나 情緒障碍兒童, 가벼운 정신 및 신체장애아동의 입소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전국사회복지협의회, 1996). 이와 아울러 가족에 대한 접근과 사후보호, 施設의 入所者를 중심으로 한 서

비스 공급체계로부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새로운 공급체계의 확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은 英·美의 發展趨勢와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최근 日本은 「兒童福祉法」을 개정(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3가지의 커다란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기노시타, 1998; 전광현, 1997). 먼저, 시설입소에 있어서 조치제도에서 이용선택제도로의 전환이다. 이는 施設兒童의 人權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行政處分대신에 부모 또는 아동이 시설보호가 필요할 경우 시설을 선택하여 이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둘째, '自立支援'의 强化이다. 지금까지의아동복지법에 있어서의 시설보호는 요보호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유아를 제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 虐待받고 있는 兒童, 그외 양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이를 양호하며, 아울러 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시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施設의 專門性을 추구하고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대받는 아동, 부모가 이혼한 가정 등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治療機能의 强化를 의미한다. 이러한전문화는 입소방법이 이용선택적으로 되면서 부모 또는 아동이 시설입소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先進國의 施設發達過程을 통해 우리 나라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대한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施設의 小規模化이다. 시설아동의 개성과 사생활을 보장해주고 이들에 대한 종사자의 개별적인 관심과 보호를 보장해 주기 위해 시설은 집단수용형태에서 소규모의 가정형태로 그 住居形態를 변화시켜 가정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신현수, 1997; 이태수등, 1997; 박용철, 1998)²). 이는 先進國의 脫施設化 政策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위탁제도의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

²⁾ 여기에 대한 논의는 Gambrill and Stein, 1994 참조

여야 하겠으며, 소규모 그룹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施設의 專門化이다. 시설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에 대응한 전문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기능을 다목적화하고 전문성있는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從事者의 勤勞條件의 改善이 필요하다(변용찬 등, 1996; 김영모 등, 198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셋째, 시설의 開放化이다. 즉 시설이 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사회복지센터의 역할(어윤배, 1996; 어윤배, 1997)을 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김영자, 1989; 변용찬 등, 1996).

넷째, 施設兒童의 自立을 支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겠다는 점이다. 시설아동들이 퇴소후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한 인간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은 아동의 단순한 의식주 해결을 넘어서 自立·自活할 수 있는 能力을 배양해 줄 수 있는 체제를 제도적으로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손의목, 1993).

마지막으로, 시설에 대한 支援强化로 시설아동들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여야 하겠으며(이배근, 1993; 김미혜, 1995; 박태영, 1997), 家庭復歸를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요구된다는 점이다(Zuckerman, 1983; 김기환, 1997).

第3章 兒童福祉 收容施設 現況

第1節 施設 現況

1. 兒童福祉施設 및 收容兒童數 推移

우리 나라의 兒童福祉 收容施設은 6·25 동란후 발생한 수많은 전쟁고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리 나라 전체가 극도의 貧困狀態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재원으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외국기관의 원조에 의존하는 형편이었다. 그후 兒童福祉 收容施設은 꾸준히 증가하여 1970년에는 그 수가 523개소에 아동수도 51,501명으로 시설당 아동수는 98명에 이르렀으나, 政府의 家族計劃事業에 의한 출산수준의 감소로 아동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의 수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80년에는 兒童福祉施設의 數도 303개로서 1970년부터 1980년의 10년동안 220개소나 대폭 감소하였고, 이러한 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24,631명으로 1970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 들었다. 이는 1970년대 海外入養兒의 增加와 함께 외원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지출증대와 사회복지시설의 법인화 작업 등 정부의 兒童福祉施設 調整政策의 실시에 기인한때문으로 판단된다(김응석 외, 1995).

1980년대에는 收容兒童數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시설의 수만 점 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80년부터 1990년사이의 10년동안 시설수는 25개가 줄어든 반면, 아동의 수는 1980년의 24,631 명에서 1990년에는 23,450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90년 이후에는 兒童福祉施設의 數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 여기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90년도 이후 1996년까지 兒童福祉施設 및 收容兒童의 變化推移를 보면, 수용아동수는 매해 약 1,000여명씩 감소하여 1990년 23,450명에서 1997년 16,936명으로 감소한데 비하여 施設數는 278개소에서 274개소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시설의 구조조정이 끝남으로써 타목적의 시설로 전환하려는 시설은 이미 전환을 완료한 반면, 兒童福祉 收容施設을 계속 운영하려는 시설만 남게 된 결과로 사료된다. 1997년 12월말 현재 施設當兒童數는 평균 62명이다.

〈表 3-1〉兒童福祉 收容施設¹⁾의 種別, 年度別 現況

(單位: 個所, 名)

연도	영아시설		육아시설		직업보도 시설		교호시설		자립지원 시설		합 계 ²⁾		
전도	시설 수	아동수	시설 수	아동수	시설 수	아동수	시설 수	아동 수	시설 수	아동 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당 아동수
1970	74	7,636	430	42,155	19	1,710	-	-	-	-	523	51,501	98
1980	34	2,477	253	20,908	16	1,246	-	-	-	-	303	24,631	81
1990	38	2,388	223	20,147	7	444	7	415	3	56	278	23,450	84
1992	38	2,240	219	18,046	8	430	8	483	5	94	278	21,293	77
1994	37	2,120	217	16,079	7	321	7	565	7	129	275	19,214	70
1995	36	2,128	215	15,015	5	231	6	481	7	139	269	18,074	67
1996	28	1,624	213	14,302	6	250	6	462	11	197	273 ²⁾	17,319	63
1997	26	1,589	214	13,873	6	245	6	393	11	198	274 ³⁾	16,936	62

註: 1) 과거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부랑아시설, 신체장애아시설 등 제외

資料: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각 연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일람표』, 각 연도

²⁾ 일시보호시설 포함

³⁾ 일시보호시설 및 아동상담소 포함

2. 定員과 現員

本 調査結果는 1997년 3월 31일 현재 韓國兒童福祉施設聯合會에 등 록되어 있는 271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가운데에는 육아 시설이 211개소로서 77.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이 嬰兒施設 로서 21개소(7.7%), 自立支援施設과 一時保護施設이 각각 10개소로서 3.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兒童福祉事業指針에 의해 영·육아종합시설이 규정되어 있으며, 3세 미만 영아와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동시에 收容保護하고 있 다. 이러한 영·육아시설이 7개소(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 보도시설과 교호시설이 각각 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 나타난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種別 定員과 現員을 살펴 보면 <表 3-2>와 같다. 먼저 아동복지 수용시설 전체의 정원은 평균 1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 보면, 定員이 평균 280명인 영·육아 시설이 가장 많은 정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이 101명인 육아시 설, 97명인 교호시설, 89명인 일시보호시설, 86명인 직업보도시설, 85 명인 영아시설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영·육아 시설의 경우 정원이 평 균 280명이나 되는데 이는 1個施設에서 정원이 천 명이 넘는 대형시 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1997년 8월 개정된 社會福祉事業法에서는 시설의 대형화를 막기 위 하여 시설의 규모를 30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부 시설이기는 하지만 1,000명이 넘는 대형시설은 政府의 指導監督을 통 해 향후 小規模化하여야 하겠다. 이처럼 시설이 대규모화하면 아동과 직원과의 접촉빈도가 떨어지고, 아동 개개인에 대한 개별처우가 어려 워질 뿐만 아니라 施設病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결국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兒童福 祉의 原理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表 3-2〉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定員과 現員

(單位: 施設數, 名)

						(単位	: 旭政	製, 石)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전 체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연 세
정원								
60명 미만	7	9	1	2	10	4	-	33
60 ~ 89명	7	85	2	2	-	1	3	100
90 ~ 119명	4	69	1	1	-	3	2	80
120 ~ 149명	2	30	2	-	-	-	-	34
150명 이상	1	17	1	1	-	2	1	23
계 ¹⁾	21	210	7	6	10	10	6	270
평 균	85	101	280	86	32	89	97	101
현원								
30명 미만	4	3	-	2	9	-	-	18
30 ~ 59명	10	108	2	3	-	6	3	132
60 ~ 89명	4	85	3	1	-	4	3	100
90명 이상	3	15	2	-	-	-	-	20
계 ¹⁾	21	211	7	6	9	10	6	270
평 균	57	64	192	39	21	50	61	64

註: 1) 무응답한 1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한편, 定員에 대한 단순평균만 가지고는 시설의 규모를 판단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의 분포를 통해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規模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무응답 1개를 제외한 270개 시설가운데 약 37.0%인 100개시설이 정원 60명에서 89명 사이인 中規模施設로 나타났으며, 정원이 90명에서 119명 사이인 中大型施設은 29.6%인 80개 시설이었다. 비교적 소규모시설인 60명 미만의 정원을 가진 시설이 33개 시설인 반면 150명 이상의 대형시설도 23개 시설로서 전체의 8.5%였다.

이를 施設種別로 보면, 육아시설의 경우 정원이 60명에서 89명 사

이인 中規模施設이 85개 시설로 육아시설 합계 210개 시설중 4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90명에서 119명 사이인 중대형 시설이 69개 시설로 육아시설의 32.9%이었다. 한편, 定員이 60명 미만인 소규 모시설은 9개 시설로 4.3%인 반면에 대형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정원 150명 이상인 육아시설이 17개 시설로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아직도 育兒施設의 경우 대형시설이 小規模施設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現員을 살펴 보면, 전체 시설의 평균 현원은 64명이었다. 평균 현원이 가장 많은 시설은 192명인 영·육아시설이었 는데, 이처럼 대규모시설인 경우에는 收容兒童들에 대한 질적인 서비 스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시설병을 야기시 킬 수 있다. 시설의 규모에 대한 세계적인 조류인 小規模施設 또는 그룹홈을 지향하는 것과도 상반된 것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가장 적은 경우는 평균 정원이 21명인 自立支援施設이 었다. 育兒施設의 경우는 평균 현원이 64명으로 영·육아시설 다음으 로 많았고, 교호시설은 61명, 영아시설은 57명, 일시보호시설은 50명, 직업보도시설은 39명 등의 순이었다.

定員과 마찬가지로 한두 개의 시설에서 現員이 지나치게 많다거나 적을 경우 이들 시설의 현원이 평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 에 해석에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원의 경우에도 그 분 포를 파악함으로써 兒童福祉 收容施設에 현재 수용되어 있는 아동의 수를 보다 정확히 살펴보고자 한다. 調査基準時點인 1997년 3월 31일 현재 현원이 30명에서 59명 사이인 경우가 132개 시설로 전체의 48.9%이었다. 즉, 아동복지 수용시설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시설 이 60명 미만의 비교적 小規模 施設로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 수용보 호하고 있는 아동의 수가 60명에서 89명 사이인 경우는 100개 시설로

전체의 37.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시 수용아동이 30명이 넘어야 한다는 社會福祉事業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30명 미만인시설이 18개 시설로서 6.7%인 반면, 현원이 90명 이상인 시설은 20개시설로 7.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現員의 分布를 시설종별로 보면, 육아시설의 경우는 30명에서 59명 사이가 108개 시설로 全體의 過半數를 약간 상회하는 51.2% 였고, 60명에서 89명 사이는 85개 시설로 전체의 40.3%였으며, 90명이상인 시설도 15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嬰兒施設의 경우도 현원이 30명에서 59명 사이가 10개 시설로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현원이 30명 미만인 시설이 4개 시설이었으며, 현원이 90명 이상인 시설이 3개 시설이었다.

3. 定員 對比 現員의 比率

앞에서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定員과 現員의 分布를 각각 살펴 보았다. <表 3-3>은 정원에 비해 현재 수용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어느 정도되는지 살펴 본 것이다. 이 表에 의하면 아동복지 수용시설 전체의 定員 對比 現員의 比率은 64.7%로서 현재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의 약 2/3만 수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의미한다. 이는 현재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收容能力에 비해 아동수가 매우 모자란다는 의미일수도 있다. 또한 일본의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1995년도 수용률 79.8% (전국사회복지협의회, 1996)보다도 낮은 수용률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兒童福祉 收容施設에 遊休空間이 많이 남아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시설종별로 定員 對比 現員의 比率을 보면, 영·육아시설이 74.3%로 가장 수용률이 높고, 직업보도시설이 49.5%로 가장 낮은 수용률을 나타냈다. 일시보호시설이 現員 對 定員의 比率이 67.4%로 영·육아시설

다음으로 收容率이 높았고, 영아시설은 수용률이 66.0%, 자립지원시설 은 64.8%, 육아시설은 64.6%, 교호시설은 63.5% 등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낮은 수용률로 인하여 施設의 一部가 遊休施設化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낮은 수용률로 인한 시설운영의 어려움 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兒童福祉施設의 施設基準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의 거실은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3세 미만인 경 우에는 1.7m²(0.52평), 3세 이상의 경우에는 2.5m²(0.76평) 이상으로 하고 1실의 定員은 3세 미만의 경우에는 15인 이하, 3세 이상의 경우에는 8 인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育兒施設에는 5 평 정도의 방에 초·중·고등학생 6~7명이 거주한다고 볼 때 이러한 시 설기준은 家庭的인 雰圍氣 造成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나라 아동들이 영양상태의 개선으로 체격이 커진 점과 아동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김광빈, 1998)고 판단 되므로 兒童福祉施設의 基準을 완화하여 法定 定員의 再調整作業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

〈表 3-3〉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現員 對 定員 比率

(單位: 施設數, %)

	영아	육아	영·육아			일시보	교호	 전 체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선 세
현원 대 정원 비율								
50% 미만	6	24	-	4	2	4	-	40
50% ~ 69%	5	107	2	-	3	1	4	122
70% ~ 89%	7	74	4	-	3	2	1	91
90% 이상	3	5	1	2	1	3	1	16
계 ¹⁾	21	210	7	6	9	10	6	269
평 균	66.0	64.6	74.3	49.5	64.8	67.4	63.5	64.7

註: 1) 무응답한 2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定員 對比 現員의 比率分布를 보면, 50%에서 69%사이인 경우가 전체 269개 시설중 122개 시설로 4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설은 40개나 되어 전체 兒童福祉 收容施設 270개소중 14.8%나 되었다.

4. 適正兒童 規模

현재의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시설장이 개별 시설의 규모를 참조하여 판단하고 있는 가장 적정한 규모의 아동수는 <表 3-4>와 같이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定員인 101명에 비해 76.2%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것은 결국 法定 定員이 지나치게 높아 아동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法定基準의 非現實性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適正規模 對比 現員의 比率은 83.1%로서 시설장이 판단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는 아직도 약 16.9%의 아동을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 만큼의 遊休施設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施設種別로 適正兒童 規模를 보면, 영·육아시설이 평균 적정아동 규모가 238명으로 나타나 타시설들 보다 월등히 많았고, 그 다음이 평균 적정아동 규모가 110명인 교호시설, 75명인 육아시설, 72명인 일시보호시설, 70명인 직업보도시설, 57명인 영아시설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자립지원시설의 平均 適正兒童 規模는 31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시설의 시설장은 정원에 비해 適正規模의 兒童數의 比率이 가장 적은 반면, 현재 수용보호중인 아동의 수가 적정규모와 일치하고 있어 현재의 시설수준에서는 현재 收容保護하고 있는 아동의 수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적정규모에 비해 현원의 비율이가장 낮은 시설은 교호시설로서 55.5%이고, 다음이 직업보도시설로서

55.7%로 나타났다. 이는 施設의 保護能力에 비해 현재 아동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들 시설에 많은 여유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육아시설의 경우 適正規模에 비해 現員의 比率이 85.3%였다.

〈表 3-4〉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의 適正兒童 規模 (單位: 施設數, 名)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전 체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적정 아동규모								
50명 미만	6	17	-	2	10	2	1	38
50 ~ 69명	8	76	1	3	-	2	1	91
70 ~ 89명	4	58	2	-	-	2	-	66
90 ~ 109명	2	33	1	-	-	3	1	40
110명 이상	-	24	2	1	-	-	3	30
계 ¹⁾	20	208	6	6	10	9	6	265
평균(%)	57	75	238	70	31	72	110	77
정원대비적정규모 아동의 비율(%)	67.0	74.2	85.0	81.4	96.9	80.9	113.4	76.2
적정규모대비 현원비율(%)	100.0	85.3	80.7	55.7	67.7	69.4	55.5	83.1

註: 1) 무응답한 6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第2節 施設入所 및 退所

1. 入所經路別 入所者數

지난 1년간 兒童福祉 收容施設에 입소한 아동수는 시설당 평균 18.2명으로서 평균 현원 64명의 28.4%나 되었다. 지난 해 가장 많이 입소한 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서 施設當 平均 100.7명이었으며, 이는 현재 一時保護施設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수인 현원 50명에 비해 약 2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일시보호시설이 가출아동이나 부랑아동 기타 要保護兒童을 단기간 보호하고 퇴소시키는 성격을 가진 시설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이내에 入養 또는 家庭委託, 만약 가정이 있는 경우이면 家庭에 復歸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비교적 장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3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을 수용하여 보호하고 있는 育兒施設은 다른 종류의 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현원에 대한 입소자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 1년간 10.3명이 입소하여 현원 64명의 16.1%만이 지난 해에 入所한 兒童이었다.

입소아동의 성별로 入所兒童을 나누어 보면, 영아시설의 경우는 전체 40.4명중 54.2%인 21.9명이, 육아시설은 전체 10.3명중 54.4%인 5.6명이, 영·육아시설은 전체 53.3명중 68.1%인 36.3명이, 직업보도시설은 전체 20.5명중 79.0%인 16.2명이, 自立支援施設은 전체 9.9명중 37.4%인 3.7명이, 일시보호시설은 전체 100.7명중 53.7%인 54.1명이, 그리고교호시설은 전체 57.5명중 92.7%인 53.3명이 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男子가 女子에 비해 많이 入所한반면, 자립지원시설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입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表 3-5〉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入所經路別 施設의 入所者數 (單位: 名)

						(+1	业. 和)
영아				자립지	일시보	교호	 전 체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면 제
24.0	6.6	15.5	4.7	2.3	28.6	10.5	8.9
11.0	0.2	6.3	1.7	-	5.2	-	1.4
0.9	1.3	19.1	3.7	3.5	1.1	2.0	1.9
2.4	0.1	0.8	-	-	12.5	1.5	0.7
1.4	1.7	10.6	10.4	-	24.9	3.8	2.8
0.7	0.4	1.0	-	4.1	28.4	39.7	2.5
40.4	10.3	53.3	20.5	9.9	100.7	57.5	18.2
12.9	3.6	9.4	3.5	1.0	16.3	10.3	5.0
6.4	0.1	4.4	1.0	-	3.3	-	0.8
0.5	0.7	16.4	3.0	0.7	0.6	1.8	1.2
1.0	0.1	0.4	-	-	7.1	1.5	0.4
0.7	0.9	5.3	8.7	-	12.1	2.0	1.5
0.4	0.2	0.4	-	2.0	14.7	37.7	1.7
21.9	5.6	36.3	16.2	3.7	54.1	53.3	10.6
11.1	3.0	6.1	1.2	1.3	12.3	0.2	3.9
4.6	0.1	1.9	0.7	-	1.9	-	0.6
0.4	0.6	2.7	0.7	2.8	0.5	0.2	0.7
1.4	-	0.4	-	-	5.4	-	0.3
0.7	0.8	5.3	1.7	-	12.8	1.8	1.3
0.3	0.2	0.6	-	2.1	13.7	2.0	0.8
18.5	4.7	17.0	4.3	6.2	46.6	4.2	7.6
	24.0 11.0 0.9 2.4 1.4 0.7 40.4 12.9 6.4 0.5 1.0 0.7 0.4 21.9 11.1 4.6 0.4 1.4 0.7 0.3	지설 시설 24.0 6.6 11.0 0.2 0.9 1.3 2.4 0.1 1.4 1.7 0.7 0.4 40.4 10.3 12.9 3.6 6.4 0.1 0.5 0.7 1.0 0.1 0.7 0.9 0.4 0.2 21.9 5.6 11.1 3.0 4.6 0.1 0.4 0.6 1.4 - 0.7 0.8 0.3 0.2	지설 시설 시설 시설 24.0 6.6 15.5 11.0 0.2 6.3 0.9 1.3 19.1 2.4 0.1 0.8 1.4 1.7 10.6 0.7 0.4 1.0 40.4 10.3 53.3 12.9 3.6 9.4 6.4 0.1 4.4 0.5 0.7 16.4 1.0 0.1 0.4 0.7 0.9 5.3 0.4 0.2 0.4 21.9 5.6 36.3 11.1 3.0 6.1 4.6 0.1 1.9 0.4 0.6 2.7 1.4 - 0.4 0.7 0.8 5.3 0.3 0.2 0.6	지설 시설 시설 도시설 24.0 6.6 15.5 4.7 11.0 0.2 6.3 1.7 0.9 1.3 19.1 3.7 2.4 0.1 0.8 - 1.4 1.7 10.6 10.4 0.7 0.4 1.0 - 40.4 10.3 53.3 20.5 12.9 3.6 9.4 3.5 6.4 0.1 4.4 1.0 0.5 0.7 16.4 3.0 1.0 0.1 0.4 - 0.7 0.9 5.3 8.7 0.4 0.2 0.4 - 21.9 5.6 36.3 16.2 11.1 3.0 6.1 1.2 4.6 0.1 1.9 0.7 0.4 0.6 2.7 0.7 1.4 - 0.4 - 0.7 0.8 5.3 1.7 0.3 0.2 0.6 -	지설 지설 지설 도지설 원지설 24.0 6.6 15.5 4.7 2.3 11.0 0.2 6.3 1.7 - 0.9 1.3 19.1 3.7 3.5 2.4 0.1 0.8 - 1.4 1.7 10.6 10.4 - 0.7 0.4 1.0 - 4.1 40.4 10.3 53.3 20.5 9.9 12.9 3.6 9.4 3.5 1.0 6.4 0.1 4.4 1.0 - 0.5 0.7 16.4 3.0 0.7 1.0 0.1 0.4 - 0.7 0.9 5.3 8.7 - 0.4 0.2 0.4 - 2.0 21.9 5.6 36.3 16.2 3.7 11.1 3.0 6.1 1.2 1.3 4.6 0.1 1.9 0.7 - 0.4 0.6 2.7 0.7 2.8 1.4 - 0.4 - 0.7 0.8 5.3 1.7 - 0.3 0.2 0.6 - 2.1	지설 지설 지설 도지설 원지설 호치설 24.0 6.6 15.5 4.7 2.3 28.6 11.0 0.2 6.3 1.7 - 5.2 0.9 1.3 19.1 3.7 3.5 1.1 2.4 0.1 0.8 12.5 1.4 1.7 10.6 10.4 - 24.9 0.7 0.4 1.0 - 4.1 28.4 40.4 10.3 53.3 20.5 9.9 100.7 12.9 3.6 9.4 3.5 1.0 16.3 6.4 0.1 4.4 1.0 - 3.3 0.5 0.7 16.4 3.0 0.7 0.6 1.0 0.1 0.4 - 7.1 0.7 0.9 5.3 8.7 - 12.1 0.4 0.2 0.4 - 2.0 14.7 21.9 5.6 36.3 16.2 3.7 54.1 11.1 3.0 6.1 1.2 1.3 12.3 4.6 0.1 1.9 0.7 - 1.9 0.4 0.6 2.7 0.7 2.8 0.5 1.4 - 0.4 - 5.4 0.7 0.8 5.3 1.7 - 12.8 0.3 0.2 0.6 - 2.1 13.7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24.0 6.6 15.5 4.7 2.3 28.6 10.5 11.0 0.2 6.3 1.7 - 5.2 - 0.9 1.3 19.1 3.7 3.5 1.1 2.0 2.4 0.1 0.8 - 12.5 1.5 1.4 1.7 10.6 10.4 - 24.9 3.8 0.7 0.4 1.0 - 4.1 28.4 39.7 40.4 10.3 53.3 20.5 9.9 100.7 57.5 12.9 3.6 9.4 3.5 1.0 16.3 10.3 6.4 0.1 4.4 1.0 - 3.3 - 0.5 0.7 16.4 3.0 0.7 0.6 1.8 1.0 0.1 0.4 - 7.1 1.5 0.7 0.9 5.3 8.7 - 12.1 2.0 0.4 0.2 0.4 - 2.0 14.7 37.7 21.9 5.6 36.3 16.2 3.7 54.1 53.3 11.1 3.0 6.1 1.2 1.3 12.3 0.2 4.6 0.1 1.9 0.7 - 1.9 - 0.4 0.6 2.7 0.7 2.8 0.5 0.2 1.4 - 0.4 - 5.4 - 0.7 0.8 5.3 1.7 - 12.8 1.8 0.3 0.2 0.6 - 2.1 13.7 2.0

지난해 兒童福祉 收容施設에 입소한 평균아동수인 18.2명중 약 절 반(48.9%)인 8.9명이 행정관서를 통해서 입소하고 있으며, 2.8명(18.2%) 은 緣故者 依賴를 통해 입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종별로 보면, 영아시설의 경우는 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소자수가 많은 데, 全體 入所兒童 평균 40.4명중 59.4%인 24명이 행정관서를 통하여 입소하고, 27.2%인 11명은 경찰관서를 통하여 입소하여 이들 두 입소 경로가 전체의 86.6%를 차지하였다.

育兒施設의 경우도 전체 10.3명중 64.1%인 6.6명이 行政官署를 통하여 입소하고 있어 이러한 입소경로가 가장 중요한 입소경로였고, 그다음이 전체 10.3명중 16.5%인 1.7명이 緣故者 依賴에 의해 입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육아시설의 경우는 전체 53.3명중 35.8%인 19.1명이 他施設로부터 전원하여 입소한 경우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입소경로였으며, 그 다음은 역시 29.1%인 15.5명이 행정관서를 통하여 입소하였다.

職業補導施設의 경우에는 전체 20.5명중 50.7%인 10.4명이 연고자의뢰에 의해 입소하고 있어 다른 시설의 입소경로와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은 22.9%인 4.7명이 行政官署를 통하여 입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시설의 경우는 전체 9.9명중 35.4%인 3.5명이 타시설로부터 전원하여 入所하였고, 23.2%인 2.3명은 행정관서를 통하여 입소하고 있었다.

一時保護施設의 경우는 전체 100.7명중 28.4%인 28.6명이 행정관서를 통하여 입소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입소경로였으며, 그 다음이 24.7%인 24.9명이 緣故者 依賴에 의해 입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4%인 12.5명이 병원에서 후송되어 입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시설과는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일시보호시설중 일부가 海外入養專門機關이므로 미혼모나 기타 사유로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양육이 곤란한 경우 병원에서 바로 이들 기관으로 후송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入所經路는 시설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요약해 보면, 행정관서가 주요 입소경로인 시설은 영아시설, 육아시설, 일시 보호시설이며, 他施設로부터의 전원이 주요한 입소경로인 시설은 영· 육아시설과 자립지원시설인 반면, 직업보도시설은 緣故者 依賴가 主 要經路였다.

2. 退所者數

兒童福祉 收容施設에 수용되어 있다가 지난 1996년 4월 1일부터 1997년 3월 31일 사이에 퇴소한 退所兒童은 각 시설당 평균 20.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시설 입소인원 평균인 18.2명보다 퇴 소아동이 2.1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施設兒童의 數가 감소하고 있 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전체 시설 271개중 47.2%인 128개 시설 은 지난 1년간 퇴소자수가 10명 미만이었으며, 35.1%인 95개 시설은 지난 1년간 退所兒童數가 10명에서 19명 사이로 나타나 총 82.3%의 시설에서 19명 이하의 아동을 퇴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 체 시설중 8.5%인 23개 시설은 지난 1년간 무려 40명 이상의 아동을 퇴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施設種別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장 많은 아동들을 퇴소시킨 시설은 각 시설당 127.3명을 퇴소시킨 일시보호시설이었는데, 이는 일 시보호시설이 주로 入養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시보호시설 다음으로 많은 아동들을 퇴소시킨 시설 은 시설당 101.4명을 퇴소시킨 교호시설이었는데, 이러한 교호시설에 수용되는 아동들도 輕犯罪나 初犯인 兒童들이 소년원에 가지않고 일 정기간 교정과 교화를 목적으로 입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시 간이 지나면 退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表 3-6〉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退所者數

(單位: 施設數, 名)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도		일시보호	교호	전 체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	겐 세
퇴소자수								
10명 미만	2	114	1	2	9	-	-	128
10 ~ 19명	12	76	4	-	1	1	1	95
20 ~ 29명	-	18	-	3	-	-	-	21
30 ~ 39명	-	1	1	-	-	-	1	3
40명 이상	7	2	1	1	-	8	4	23
무응답	-	-	-	-	-	1	-	1
계	21	211	7	6	10	10	6	271
평균	36.9	10.8	64.3	25.3	4.3	127.3	101.4	20.3
입소자수와의								
차이(명) ^{l)}	3.5	-0.5	-11.0	-4.8	5.6	-26.6	-43.9	-2.1

註: 1) 입소자수 — 퇴소자수임.

嬰·育兒施設의 경우는 지난 1년간 퇴소한 아동들이 시설당 평균 64.3명으로 많았으나, 전체 7개 시설중 4개 시설이 10명에서 19명 사이의 아동을 退所시키고 단지 1개 시설만이 40명 이상의 아동들을 지난 1년간 퇴소시킨 것으로 나타나 1개 시설이 상당한 아동들을 퇴소시킴으로써 全體 平均 退所兒童數가 많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영아시설의 경우는 지난 1년간 퇴소한 아동들이 시설당 평균 36.9명이었고, 전체 21개 시설중 57.1%인 12개 시설은 10명에서 19명 사이의 아동들 의 지난 1년간 退所시켰으며, 전체의 1/3인 7개 시설은 40명 이상의 아동들을 지난 1년간 퇴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育兒施設은 지난 1년간 退所한 아동들이 각 시설당 10.8명에 불과해 자립지원시설 다음으로 적은 아동수를 퇴소시켰으며, 전체 211개시설중 54.0%인 114개 시설은 지난 1년간 10명 미만의 兒童들을 退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6.0%인 76개 시설은 10명에서 19명 사이를 퇴소시켜 전체 육아시설중 90.0%가 19명 이하의 아동들을 지난

1년간 退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단지 2개 시설만이 지난 1 년간 40명 이상의 아동들을 퇴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入所者數에 비해 退所者數가 적어 보호아동의 수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난 시설은 자립지원시설(5.6명)과 영아시설(3.5명)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시설은 입소자수보다 퇴소자수가 많아 보호하고 있는 兒童의 數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교호시설(43.9명)과 일시보호시설(26.6명)에서 減少傾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退所時 自立支援金

兒童福祉 收容施設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 평균은 174만원이었다. 자립지원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정상적으로 퇴소한 아동에게 취업사실여부에 상관없이 退所 즉시 지급하는 자립 정착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립지원금을 100만원 미만을 주는 시 설이 7개 시설이었는데 반해 自立支援金을 250만원 이상을 주는 시설 은 34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시설이 자 립지원금을 150만원에서 199만원 사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自立支援金을 지급하는 시·도간에 차이가 있어서 시설이 소재한 시·도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김 응석 외, 1995: 374).

이를 施設種別로 보면, 영아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특성상 자립지 원금을 지불할 대상이 없는 관계로 인하여 전혀 없으며, 육아시설은 自立支援金을 평균 179만원 지급하였다. 영·육아시설은 자립지원금을 평균 117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직업보도시설은 자립지원금을 평균 183만원을 지급하여 他施設들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50만원 이상을 자립지원금으로 지급하는 1개 시설로 인하여 自 立支援金 平均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자립지원시설은 자립지원금 을 평균 75만원을 지급하고, 교호시설은 자립지원금을 평균 125만원을 지원하였다.

〈表 3-7〉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兒童 退所時 支給하는 自立支援金 (單位: 施設數, 萬원)

						,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정 체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선 세
퇴소시 자립지원금								
100만원 미만	-	3	1	-	2	1	-	7
100 ~ 149만원	-	59	-	-	1	1	1	62
150 ~ 199만원	-	63	1	2	-	-	1	67
200 ~ 249만원	-	42	1	-	1	-	-	44
250만원 이상	-	33	-	1	-	-	-	34
무응답	21	11	4	3	6	8	4	57
계	21	211	7	6	10	10	6	271
평균	-	179	117	183	75	50	125	174

현재 兒童福祉 收容施設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자립지 원금이 충분한지 그리고 불충분하다면 자립지원금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自立支援金의 충분여부를 시설장에게 물어본 결과, 전체 271개 아동복지 수용시설중 67.9%인 184개 시설이 불충분 하다고 응답하였고, 단지 育兒施設 가운데 13개 시설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일부 육아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모두 自立支援金의 水準이 불충분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립지원금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시설의 경우 자립지원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 지를 알아본 바, 自立支援金은 평균 71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직업보도시설이 자립지원금을 1,700만원이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1,00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시설은 自立支援施設과 一時保護施設이었으며, 육아시설은 707만원, 교호시설은 650만원, 그리

고 영·육아시설은 450만원 등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현행 自立支援金의 水準과 바람직한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 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지급하는 자립지원금을 보다 현실화하 여 실질적으로 退所兒童들의 自立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은 시설을 벗 어나는 순간 숙식할 공간이 없게 되므로 最小限의 宿食空間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자립지원금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200만원 미만의 自立支援金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립을 하는데 크게 도움 이 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하 방 1칸을 얻 는데도 대략 1,0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하므로 退所兒童 2명이 함께 방 1칸을 구한다고 가정할 때 최소한 500만원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表 3-8〉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兒童의 自立支援金의 充分與否 및 不充分時 合當한 自立支援金

(單位: 施設數)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전 체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12 - 11
자립지원금 충분여부								
충분하다	-	13	-	-	-	-	-	13
불충분하다	-	177	2	1	1	1	2	184
모르겠다	1	16	-	2	1	-	-	20
무응답	20	5	5	3	8	9	4	54
계	21	211	7	6	10	10	6	271
합당한 자립지원금								
300만원 미만	-	16	-	-	-	-	-	16
300 ~ 599만원	-	89	2	-	-	-	1	92
600 ~ 899만원	-	14	-	-	-	-	-	14
900 ~ 1199만원	-	33	-	-	1	1	1	36
1200만원 이상	-	15	-	1	-	-	-	16
무응답	-	10	-	-	-	-	-	10
계	-	177	2	1	1	1	2	184
평균	-	707	450	1,700	1,000	1,000	650	713

이는 우리 나라의 경우 最小限의 住居空間이 확보되어야 퇴소아동 들이 사회생활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第3節 施設의 收入 및 支出

1. 施設種別 收入

見童福祉 收容施設의 施設當 年間 平均 收入은 3억 9천3백만원이었다.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영·육아시설이 약 11억 5천만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영·육아시설중 한 시설의 總收入이 약 60억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이 약 10억 8천만원인 一時保護施設, 약 5억 1천만원인 교호시설, 약 4억 2천만원인 직업보도시설, 약 4억원인 영아시설, 약 3억 6천만원인 육아시설, 약 6천만원인 自立支援施設 등의 순으로 총수입이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여기서 자립지원시설의 수입이 적은 것은 자립지원시설은타시설과는 달리 兒童의 衣食住 등 生計保護를 책임지고 있지 않기때문이다. 즉 이러한 자립지원시설에서는 의식주 등 생계비는 시설에입소한 아동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은 단지 시설의설비를 실비로 제공만 해주고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施設當 平均 收入은 일부 시설의 수입이 과다할 경우 평균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總收入의 分布를 살펴 보았다. 전체 267개 시설중 약 1/3인 88개 시설의 수입액이 3억에서 4억원 미만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27.0%인 72개 시설은 2억에서 3억원 미만사이에 있고, 2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설은 12.7%인 34개 시설이었다. 한편, 施設의 總收入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총 37개 시설로 전체의 약 13.9%였다.

이를 施設種別로 보면, 영아시설은 총 20개 시설중 6개 시설이 2억에 서 3억 미만사이에 있어 가장 많았고, 육아시설은 전체 211개 시설중 3 억에서 4억원 미만사이에 76개 시설이 있어 가장 많았다. 自立支援施設 은 8개 시설 모두 시설당 수입규모가 2억원 미만이었으며, 일시보호시설 과 교호시설은 5억원 이상인 경우가 각각 전체 10개중 4개시설과 전체 6 개중 3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나, 比較的 收入規模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총수입을 수입원천별로 나누어 보면, 전체 수입중 政府補助 金의 비중이 71.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民間支援金이 14.2%, 자 체수입금이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때 시설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外援補助金은 0.8%에 불과하였다.

〈表 3-9〉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總收入 및 收入源別 收入

(單位: 施設數, 百萬원, %)

	영아 시설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자립지 원시설	일시보 호시설	교호 시설	전 체
 총수입								
2억 미만	3	20	-	_	8	3	_	34
2억 ~ 3억 미만	6	62	2	1	-	-	1	72
3억 ~ 4억 미만	4	76	3	2	_	3	_	88
4억 ~ 5억 미만	3	29	1	1	-	-	2	36
5억 이상	4	24	1	1	-	4	3	37
계 ¹⁾	20	211	7	5	8	10	6	267
평 균	402	359	1,147	419	61	1,081	509	393
수입원별 수입								
정부보조금	71.2	78.0	60.2	85.1	87.1	23.0	87.2	71.5
민간지원금	8.3	9.9	23.1	5.6	0.5	50.7	3.2	14.2
외원보조금	0.6	0.9	0.2	-	-	0.9	-	0.8
자체수입금	19.9	11.2	16.5	9.3	12.4	25.4	9.6	13.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1) 무응답 4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시설종별로 보면, 정부보조금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시설이 교호시설로서 총수입의 87.2%가 政府補助金인 반면, 정부보조금의 비중이가장 적은 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서 그 비중은 23.0%인 것으로 나타나 시설종별로 政府補助金 比重의 차이가 컸다.

특히 一時保護施設의 경우는 민간지원금이 총 수입규모의 50.7%나되어 타시설에 비해 그 비중이 월등히 높았고, 自體收入金 역시 25.4%로 타시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시보호시설의 경우海外入養 등의 알선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兒童福祉 收容施設中 대다수를 차지하는 육아시설의 경우는 정부보조금의 비중이 78.0%이고, 민간지원금과 자체수입금은 각각 9.9%와 11.2%로 나타났다. 이를 김응석 등(1995)이 표본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政府補助金의 比重은 약간 증가한 반면에, 민간지원금과 자체수입금의 비중은 각각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김응석, 1995: 18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兒童福祉 收容施設들은 점점 더 민간지 원금이나 자체수입금보다는 정부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 施設種別 支出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支出內容을 살펴보면, 수용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으로 주식비, 부식비, 간식비 등 직접비가 31.4%였고, 수용비, 제세·공과금, 난방연료비 등 間接費가 62.5%, 그리고 이월금이 6.1%였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아동들의 衣食住에 지출되는 비용은 총 지출의 19.5%였고, 아동들의 자립을 위한 정서 및 능력개발을 위해 투입되는 敎育訓鍊費는 7.6%에 불과하였다. 한편, 시설에서지출하는 금액중 인건비의 비중이 40.3%로 나타나 단일항목으로서는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施設補强 및 維持費

로 10.9%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直接費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경우는 49.0% 인 직업보도시설이었고, 그 다음이 33.5%인 육아시설이었으며, 가장 적게 지출하는 경우는 1.9%인 自立支援施設이었다. 이에 반해 간접비 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경우는 자립지원시설로 총 지출중 93.1%를 차 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81.0%인 一時保護施設, 77.9%인 영아시설, 72.3%인 교호시설, 71.4%인 영·육아시설 등의 순이었으며, 직업보도 시설의 경우 다른 종류의 시설에 비하여 間接費의 比重이 49.3%로 가 장 낮았다. 특히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의 부담이 가장 큰 시설은 66.4%인 自立支援施設이었고, 그 다음이 53.8%인 영아시설, 51.6%인 일시보호시설, 50.0%인 영·육아시설 등의 순이었으며, 가장 적게 지출 하는 시설은 32.2%인 교호시설이었다.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아동 1인당 총 지출액 규모의 분포와 아동 1인당 평균 지출액을 보면 <表 3-11>과 같다. 먼저 아동복지 수용시 설 전체 兒童 1人當 平均 支出額은 696만원이었다. 아동 1인당 지출 액이 4백만원에서 6백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 265개 시설중 47.2%인 125개로 가장 많았다. 한편, 兒童 1人當 支出額이 4백만원 미만인 경 우가 22개 시설인 반면에 1천만원 이상인 시설도 14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1인당 평균 지출액을 施設種別로 구분해서 보면, 일시보호시 설의 경우 약 2천2백만원으로 타시설 보다 월등히 많았고, 그 다음으 로 많은 시설은 1,243만원인 職業補導施設, 861만원인 교호시설, 689 만원인 영아시설, 623만원인 육아시설, 610만원인 영·육아시설 등의 순이었다. 여기서 一時保護施設에서 아동 1인당 지출액이 두드러지게 많은 이유는 이러한 일시보호시설중에는 海外入養機關이 포함되어 있 기 때문이다. 즉 이들 해외입양기관에서는 아동의 해외입양에 앞서

兒童의 發育狀態를 검진하는 비용과 아동을 해외로 입양하는데 소용 되는 경비 등이 다른 시설에 비하여 추가로 소요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해외입양기관 때문에 一時保護施設의 兒童 1人當 平均 支出額이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表 3-10〉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平均 支出合計(1996年)

							(單位: %	ấ, 萬원)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u>전</u> 체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선 세
직접비								
주식비	2.8	4.4	4.1	3.4	0.2	3.4	4.3	4.2
부식비	7.7	10.0	9.2	9.4	0.7	5.1	8.4	9.5
간식비	3.3	2.9	8.5	1.9	0.2	1.1	1.3	3.2
피복비	1.7	2.8	1.9	1.6	0.7	1.0	2.4	2.6
보건의료비	0.7	0.2	0.2	-	0.1	2.0	0.2	0.3
연료비	0.7	0.5	0.5	0.4	-	0.2	0.4	0.5
교육훈련비	0.8	8.5	2.1	29.3	-	1.7	9.6	7.6
기타 직접비	1.8	4.2	1.4	3.0	-	1.5	0.8	3.5
소계	19.5	33.5	27.9	49.0	1.9	16.0	27.4	31.4
	(7,846)	(12,658)	(31,974)	(20,500)	(115)	(5,735)	(13,958)	(12,368)
간접비								
수용비	0.9	1.1	1.5	1.0	0.9	1.8	0.8	1.1
제세·공과금	1.5	1.7	2.4	1.5	1.0	1.5	1.7	1.7
난방연료비	2.0	1.8	2.5	1.2	3.1	2.0	1.6	1.9
차량유지비	0.5	0.8	0.3	0.9	0.9	0.5	0.5	0.7
시설유지비	1.9	1.9	1.6	1.1	1.0	5.4	1.0	2.0
시설보강비	13.2	7.4	11.9	4.8	15.2	12.8	29.0	8.9
인건비	53.8	37.8	50.0	36.2	66.4	51.6	32.2	40.3
기타 간접비	4.1	6.5	1.2	2.6	4.6	5.4	5.5	5.9
소계	77.9	59.0	71.4	49.3	93.1	81.0	72.3	62.5
	(31,287)	(22,310)	(81,933)	(20,651)	(5,697)	(28,929)	(36,772)	(24,601)
이월금	2.6 (1,022)	7.5 (2,854)	0.7 (817)	1.7 (710)	5.0 (304)	3.0 (1,058)	0.3 (143)	6.1 (2,403)
합 계	100.0 (40,155)	100.0 (37,822)	100.0 (114,724)	100.0 (41,861)	100.0 (6,116)	100.0 (35,722)	100.0 (50,873)	100.0 (39,372)
(N) ¹⁾	(20)	(210)	(7)	(5)	(8)	(9)	(6)	(265)

註: 1) 지출항목에 대해 무응답한 6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한편, 兒童 1人當 平均 支出額이 가장 적은 시설은 자립지원시설로 서 아동 1인당 지출액이 26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 립지원시설의 설립목적이 兒童을 養育 保護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된 아동들이 자립할 때까지 숙식의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養 育・保護와 관련된 비용은 支出하지 않기 때문이다.

〈表 3-11〉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兒童 1人當 總 支出額과 平均 支出額 (單位: 施設數, 萬원)

						•		
	영아 시설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 도시설	자립지 원시설	일시보 호시설	교호 시설	전 체
	16	1 =	1 =	<u> </u>	U 1E	7 15	16	
총 지출액								
4백만원 미만	-	15	-	-	6	1	-	22
4 ~ 6백만원 미만	5	109	4	2	1	3	1	125
6 ~ 8백만원 미만	11	59	3	1	-	3	2	79
8 ~ 1천만원 미만	4	20	-	-	-	-	1	25
1천만원 이상	-	7	-	2	-	3	2	14
계	20	210	7	5	7	10	6	265
평 균	689	623	610	1,243	267	2,219	861	696

第 4 節 施設設備

1. 施設의 建坪

<表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兒童福祉 收容施設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1인당 평균 건평은 29.6㎡였다.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103 m²인 직업보도시설이 가장 建坪이 넓었으며, 그 다음이 50.7 m²인 교 호시설이었다. 이처럼 직업보도시설이나 교호시설이 타시설 보다 상 대적으로 兒童 1人當 平均 建坪이 넓은 이유는 이들 두 시설 모두 수 용아동들에 대한 교육·훈련장소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한편 모든 시설들은 法定 面積보다는 훨씬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12〉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收容兒童 1人當 建坪 및 平均 建坪 (單位: 施設數, m²)

								, ,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전 체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전 체
수용아동 1인당								
건평								
20m² 미만	14	78	3	-	-	5	-	100
20 ~ 40m² 미만	7	113	4	1	5	2	2	134
40 ~ 60m² 미만	-	12	-	-	2	1	3	18
60 ~ 80m² 미만	-	2	-	-	-	1	-	3
80m² 이상	-	4	-	5	2	1	1	13
계 ¹⁾	21	209	7	6	9	10	6	268
평 균	17.4	27.0	22.7	103.0	45.2	42.9	50.7	29.6
법정 면적	11.22	12.54	12.54	22.54	4.29	12.54	22.54	-

註: 1) 무응답 3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한편, 兒童 1人當 建坪이 가장 적은 시설은 영아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시설의 아동들은 신체도 가장 적을 뿐만 아니라 영아시설은 포복실, 거실과 방 등이 主要施設인 까닭에 상대적으로 타시설 보다 아동 1인당 평균 건평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영아시설은 21개 시설 모두가 40㎡ 미만이었고, 특히 14개 시설은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職業補導施設은 6개 시설중 5개 시설이 80㎡ 이상이었다.

2. 施設의 設置年度

兒童福祉 收容施設은 6.25 동란 후의 혼란기인 1950년대에 전체 시설의 약 57.7%인 154개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940년대에 42개 시설이, 1960년대에 42개 시설이 각각 설치됨에 따 라 全體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89.1%인 238개 시설이 '69년 이전에 설 립된 것이었다. 한편, 최초 설립년도가 1990년 이후인 시설은 8개 시 설로 전체 시설의 3.0%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兒童福祉 收容施設들이 3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3-13〉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의 最初 設置年度

(單位・施設數)

						((甲位:)	心
	영아	육아	영 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전 체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엔 세
최초 설치년도								
50년 이전	1	41	-	-	-	-	-	42
50 ~ 59년	11	136	4	-	1	1	1	154
60 ~ 69년	2	31	1	4	1	2	1	42
70 ~ 79년	-	-	1	-	-	2	1	4
80 ~ 89년	6	1	1	1	2	4	2	17
90년 이후	1	-	-	1	5	-	1	8
계 ¹⁾	21	209	7	6	9	9	6	267

註: 1) 무응답 4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이러한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最初 設置年度를 시설종별로 나누어 보면, 육아시설의 경우 전체 209개 시설중 65.1%에 해당하는 136개 시설이 1950년대에 설치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6·25동란으로 인 한 전쟁고아들이 대량으로 양산됨에 따라 이들 戰爭孤兒들을 양육할 시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또한 1개 시설을 제외 한 208개 시설이 1969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종류의 施設보다 상대적으로 오래된 시설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自立支 援施設의 경우는 1980년 이후에 전체 9개 시설중 7개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相對的으로 최근에 많이 設立된 것으로 보인다.

〈表 3-14〉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現所在 施設의 設置年度 (單位: 施設數)

	영아	육아	영·육아		자립지	일시보	교호	 전 체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E 11
시설의 설치년도								
50년 이전	-	13	-	-	-	-	-	13
50 ~ 59년	5	70	1	-	-	-	1	77
60 ~ 69년	4	40	-	-	-	1	1	46
70 ~ 79년	3	26	3	-	-	1	-	33
80 ~ 89년	9	39	2	3	2	5	2	62
90년 이후	-	20	1	3	7	2	2	35
계 ¹⁾	21	208	7	6	9	9	6	266

註: 1) 무응답 5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兒童福祉 收容施設 가운데 일부 시설은 최초의 설치장소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현재의장소에 시설이 設置된 年度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총 266개 시설가운데 1940년대에 설치된 시설은 4.9%인 13개 시설이고, 1950년대에 설치된 시설은 28.9%인 77개소, 1960년대에는 17.3%인 46개시설이 設置되었다. 한편, 1980년대에는 23.3%인 62개 시설이, 그리고 1990년대에는 13.2%인 35개 시설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현재의 장소에 시설이 설치된 연도는 最初 設置年度보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60년대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 전체의 51.1%나 되어 過半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그 동안機能補强事業의 一環으로 지속적으로 시설의 신축이나 개축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역사가 오래된 시설 가운데에는 여전히 노후한시설이 많아 持續的인 機能補强事業이 필요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3. 施設의 建物狀態

앞에서는 현 장소에 설치한 연도를 중심으로 施設의 老朽化 程度를

유추해 보았으나, 여기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시설의 상태를 알아 보기로 한다. 먼저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평균 건물동수 는 4개동이며, 2개동 이하인 경우가 전체 268개 시설중 101개 시설로 약 37.7%인 반면에 7개동 이상인 경우는 59개 시설로 약 22.0%로 나 타났다. 施設種別 平均 建物棟數를 보면, 영·육아시설이 5개동으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이 4.7개동인 교호시설, 4.3개동인 육아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建物棟數를 건물규모로 살펴보면 <表 3-15>와 같다.

〈表 3-15〉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全體 建物棟數 및 建物規模 (單位: 施設數, 棟數, m²)

	영아	육아	영 · 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고고 시설	전 체
전체 건물동수								
1 ~ 2개	13	65	1	2	10	7	3	101
3 ~ 47}	4	48	2	4	-	-	-	58
5 ~ 67∄	1	46	2	-	-	1	-	50
7개 이상	3	50	2	-	-	1	3	59
계 ¹⁾	21	209	7	6	10	9	6	268
평균	2.9	4.3	5.0	2.3	1.1	2.4	4.7	4.0
전체 건물규모								
1000m² 미만	11	39	-	-	9	3	-	62
$1000~\sim~1499\text{m}^2$	6	85	4	2	-	-	-	97
$1500 \sim 1999 \text{m}^2$	-	41	-	-	-	-	1	42
$2000~\sim~2499\text{m}^2$	1	19	1	1	-	1	1	24
2500m² 이상	1	16	2	3	-	-	3	25
계 ²⁾	19	200	7	6	9	4	5	251
평균	1,023	1,501	2,772	3,395	661	788	2,719	1,525

註: 1) 무응답 3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²⁾ 무응답 20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평균 건물규모는 1,525㎡였고,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職業補導施設의 平均 建物規模가 3,395㎡로 가장 컸으며, 그다음이 2,772㎡인 영·육아시설, 2,719㎡인 교호시설, 1,501㎡인 육아시설, 1,023㎡인 영아시설, 788㎡인 일시보호시설, 그리고 661㎡인 자립지원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에서는 施設의 建物棟數와 建物規模에 대해 알아 보았다. 여기서 는 1990년 이후 증·개축한 건물동수는 얼마나 되고, 그 규모는 얼마 나 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로 1990년 이후 증·개축한 건물동수와 건물규모는 <表 3-16>과 같다. 1990년 이 후에 시설을 증·개축한 사실이 있는 시설의 수는 全體 兒童福祉 收容 施設 268개소중 65.7%인 17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증·개축한 평균 건물동수는 1.9개였다. 建物棟數의 分布를 보면, 증개축한 사실 이 있는 전체 176개 시설중 57.4%인 101개 시설이 1990년 이후에 1개 동을 증·개축한 것으로 나타났고, 19개 시설은 4개동 이상을 증·개축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施設種別로 보면, 교호시설이 1990년 이후 증·개축한 건물동수가 평균 3.3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8개인 영·육아시설, 1.9개인 육아시설, 1.6개인 일시보호시설, 1.4개인 영아시 설 등의 순이었으며, 職業補導施設과 自立支援施設은 모두 1개동을 1990년 이후에 증·개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0년 이후 증·개 축한 建物規模는 평균 663㎡였으며, 시설종별로는 교호시설이 1,567㎡ 으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3-16〉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1990年 以後 増・改築한 建物 棟數 및 建物規模

(單位· 施設數 棟數 m²)

					(千世	:心议要	人, 1/不安/	(, III)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전 체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E 1
증·개축 건물동수								
1개	8	83	1	1	4	3	1	101
2개	-	31	1	-	-	1	-	33
371	-	21	1	-	-	1	-	23
4개 이상	1	15	1	-	-	-	2	19
계	9	150	4	1	4	5	3	176
평균 ¹⁾	1.4	1.9	2.8	1.0	1.0	1.6	3.3	1.9
증·개축 건물규모								
300m² 미만	7	34	1	-	-	2	-	44
$300~\sim~599\text{m}^2$	1	51	1	-	-	1	-	54
$600~\sim~899\text{m}^2$	1	24	-	1	2	1	1	30
$900~\sim~1199\text{m}^2$	-	18	1	-	-	-	-	19
1200m² 이상	-	23	1	-	-	-	2	26
계 ²⁾	9	150	4	1	2	4	3	173
평균	173	690	607	706	732	318	1,567	663

註: 1) '90년 이후 증 개축한 건물이 없는 시설과 무응답한 95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조사 당시 兒童福祉 收容施設에서 증·개축이 필요한 건물동수가 얼 마나 되는지를 알아본 바는 <表 3-17>과 같다. 아동복지 수용시설 총 268개소 가운데 47.0%인 126개시설에서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였으며, 이 경우 增·改築이 필요한 建物棟數는 평균 1.8개로 나타났 다. 그리고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26개 시설중 57.9%인 73개 시설이 1개동이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하여 약 3/5정도에 달했다. 시 설종별로 보면, 施設의 老朽度가 상대적으로 많은 육아시설이 증·개 축이 필요한 평균 건물동수가 1.9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영아시 설과 영·육아시설이 각각 1.6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2) &#}x27;90년 이후 증·개축한 건물이 없는 시설과 무응답한 98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表 3-17〉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増・改築이 필요한 建物棟數 및 建物規模

(單位: 施設數. 棟數. m²)

					(+1	工, 加西文文	人,一个友	\(\)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전 체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선 세
증·개축 건물동수								
1개	9	54	3	1	1	3	2	73
2개	1	26	1	-	-	-	1	29
3개	-	13	1	-	-	1	-	15
4개 이상	1	8	-	-	-	-	-	9
계 ¹⁾	11	101	5	1	1	4	3	126
평균	1.6	1.9	1.6	1.0	1.0	1.5	1.3	1.8
증·개축 건물규모								
200m² 미만	4	36	-	1	1	1	-	43
$200 \sim 399\mathrm{m}^2$	2	34	2	-	-	1	2	41
$400~\sim~599\text{m}^2$	1	16	-	-	-	-	-	17
600 m² 이상	3	15	3	-	-	-	1	22
계 ²⁾	10	101	5	1	1	2	3	123
평균	357	460	1,350	48	165	105	557	474

註: 1) 무응답 145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한편 增·改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설가운데 증·개축이 필요한 건물규모는 평균 4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施設當 平均面積 1,525㎡의 3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시설종별로 보면, 증·개축이 필요한 建物規模는 영·육아시설이 1,350㎡로 가장 넓었으며, 육아시설 은 460m²인 것으로 나타났다.

4. 施設의 地理的 位置

兒童福祉 收容施設이 위치하고 있는 地理的 位置의 特性을 보면, 대 부분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외딴지역에 떨어져 있는 시설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269개시설중

²⁾ 무응답 148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57.2%인 154개 시설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었고, 외딴지역에 위치하 고 있는 시설은 61개소나 되어 전체의 22.7%를 차지하고 있다. 그외, 市場地域이나 工團地域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은 4개소에 불과하였다.

시설 종별로 보면, 교호시설의 경우 외딴지역에 위치해 있는 비율 이 6개소중 4개소로 높았다. 한편, 育兒施設인 경우 외딴 지역에 위치 해 있는 경우가 49개소나 되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地 域社會에서 어울리며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미약한 실정임을 보여주 고 있다고 하겠다.

〈表 3-18〉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의 地域的 特性

(單位: 施設數)

						, ,		,,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전 체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전 체
시설의 지역적 특성								
주택가	14	116	4	4	8	7	1	154
시장지역	-	1	-	-	-	-	-	1
공단지역	-	2	1	-	-	-	-	3
외딴지역	4	49	-	1	2	1	4	61
기타	3	42	2	1	-	1	1	50
계	21	210	7	6	10	9	6	269

第5節 施設의 管理運營

1. 入所前後 兒童에 대한 記錄狀態

兒童福祉 收容施設에서 아동들의 입소전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상 태는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入所兒童들에 대한 입소전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가 전체 271개 시설중 22.5%인 61개 시설이었 고, 入所前 記錄管理狀態를 上·中·下로 구분하여 보면, 中 이하인 경 우가 56.8%인 154개 시설로서 대체적으로 입소전 기록관리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施設種別로 나누어 보면, 영아시설의 경우 입소전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가 전체 21개 시설중 42.9%인 9개 시설이었고, 入所前記錄管理狀態가 中 以下인 경우는 47.6%인 10개 시설로서 전체 영아시설 가운데 90.5%의 시설이 아동의 입소전 기록관리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育兒施設의 경우에는 입소전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가 17.5%인 37개 시설이었고, 입소전 기록관리상태가 중 이하인 경우는 63.5%인 134개 시설로 전체중 81.0%인 171개 시설이 入所前記錄管理狀態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시설의 경우에도 입소전 기록상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19〉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入所前 記錄保有狀態 및 入所後 生活記錄簿 作成狀態

(單位: 施設數)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전 체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선 세
입소전 기록보유상태								
기록이 없음	9	37	3	3	4	3	2	61
기록관리상태 상	2	29	2	-	-	4	3	40
기록관리상태 중	7	106	2	1	4	2	1	123
기록관리상태 하	3	28	-	-	-	-	-	31
무응답	-	11	-	2	2	1	-	16
계	21	211	7	6	10	10	6	271
생활기록부 작성상태								
기록이 없음	1	18	-	-	2	-	-	21
기록관리상태 상	10	56	3	2	1	4	2	78
기록관리상태 중	9	121	4	3	6	4	4	151
기록관리상태 하	-	12	-	-	-	-	-	12
무응답	1	4	-	1	1	2	-	9
계	21	211	7	6	10	10	6	271

한편 兒童福祉 收容施設에 입소한 아동들에 대한 입소후 생활기록 부 기록관리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271개 시설중 생활기록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7.7%인 21개 시설이었고, 兒童들의 入所後 生 活記錄簿를 작성하는 경우가 88.9%인 241개 시설이나 되지만, 이중 생 활기록부 기록관리상태가 중 이하인 경우는 60.1%인 163개 시설로 나 타나 입소후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을 하고 있더라도 記 錄管理狀態가 그다지 좋지 않은 시설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施設의 住居形態

가. 現在의 住居形態

兒童福祉 收容施設은 전체 271개 시설중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및 공동취사하는 경우가 전체의 48.0%인 130개 시설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이 44.3%인 120개 시설이 集團寄宿舍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 숙사제3)의 형태인 경우는 겨우 5.5%인 15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3-20〉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의 住居形態

(單位: 實數)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집단기숙사 소숙사제 기타 계 및 공동취사 영아시설 21 12 육아시설 11 106 94 211 영·육아시설 4 3 7 직업보도시설 5 6 1 자립지원시설 4 6 10 일시보호시설 7 3 10 교호시설 6 6 전 체 15 130 120 271

³⁾ 소숙사제는 한 울타리안에 여러 개의 가정형태를 띤 집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대 표적인 것이 서울의 S·O·S 마을임.

이처럼 여전히 집단기숙사 형태의 주거시설이 많은데, 이는 施設從 事者들이 수용아동들의 健全한 育成과 自立을 위해서는 소규모의 소 숙사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과는 현실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住居形態를 시설종별로 보면, 소숙사제의 주거형태인 시설은 육아시설 전체 211개 시설중 11개 시설과 자립지원시설 전체 10개 시설중 4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嬰兒施設은 전체 21개 시설중 12개 시설이 몇 개의 家庭形態로 分離 및 共同炊事하는 住居形態를 가지고, 나머지 9개 시설은 집단기숙사 형태를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시설의 경우는 전체중 50.2%인 106개 시설이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및 공동취사하는 주거형태를가지고, 전체의 44.5%인 94개 시설은 集團寄宿舍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영·육아시설은 각각 4개 시설과 3개 시설이, 일시보호시설은 각각7개 시설과 3개 시설이, 그리고 職業補導施設은 각각 1개 시설과 5개시설이 몇 개의 家庭形態로 分離 및 共同炊事하는 경우와 집단기숙사인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호시설의 경우에는 6개 시설 모두가집단기숙사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바람직한 住居形態

현재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住居形態와는 무관하게 바람직한 주거형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施設長 또는 總務를 대상으로 알아본 바,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바람직한 주거형태는 전체 268개 시설중 45.9%인 123개시설이 몇 개의 家庭形態로 分離 및 共同炊事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고, 26.1%인 70개 시설이 소숙사제의 형태를, 19.4%인 52개 시설은 그룹홈4

⁴⁾ 그룹 홈(Group Home)이란 몇 명의 아동들과 보호자 역할을 하는 보모와 일반가 정의 형태를 띠는 가정을 말함.

을 각각 바람직한 주거형태라고 응답하였으며, 集團寄宿舍가 바람직한 住居形態라고 응답한 경우는 7.5%인 20개 시설만이 응답하여 집단기숙 사는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주거형태로는 바람직한 주거형태라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現 住居形態가 집단기숙사인 경우가 전체의 44.3%인 120개 시설인 것으로 볼 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시설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嬰兒施設의 경우는 전체 21개 시설중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및 공동취사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住居形態라고 응답한 시설이 8개 시설, 소숙사제가 바람직하다고 응 답한 시설이 6개 시설, 그룹홈이 바람직하다는 시설이 5개 시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集團寄宿舍 形態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시설은 2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3-21〉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의 바람직한 住居形態

(單位: 實數)

					· · ·	- 1,50 -7
	그룹홈	소숙사제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및 공동취사	집단기숙사	기타	계
영아시설	5	6	8	2	-	21
육아시설	40	57	101	12	-	210
영・육아시설	1	1	5	-	-	7
직업보도시설	-	2	2	2	-	6
자립지원시설	4	2	1	-	2	9
일시보호시설	1	-	5	2	1	9
교호시설	1	2	1	2	-	6
_ 전 체 ¹⁾	52	70	123	20	3	268

註: 1) 무응답 3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육아시설의 경우는 전체 210개 시설중 몇 개의 家庭形態로 分離 및 共同炊事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시설이 전체의 48.1%인 101개 시설이었으며, 소숙사제가 바람직하다는 시설이 27.1%인 57개 시설이었고, 그룹홈이 바람직하다는 시설은 19.0%인 40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集團寄宿舍가 바람직하다는 시설은 5.7%인 12개 시설에 불과하였다.

嬰·育兒施設의 경우는 전체 7개 시설중 5개 시설이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및 공동취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거형태라고 하였고, 소숙사제와 그룹홈이 바람직하다는 경우는 각각 1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職業補導施設은 전체 6개 시설중 소숙사제, 집단기숙사, 몇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및 공동취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시설이 각각 2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自立支援施設의 경우에는 전체 10개 시설중 4개 시설이 그룹홈이 가장 바람직한 주거형태라고 응답하였으며, 一時保護施設의 경우에는 전체 9개 시설중 5개 시설이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및 공동취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주거형태라고 응답하였다. 교호시설의 경우에는 小宿舍制와 集團寄宿舍가바람직한 住居形態라는 경우가 각각 2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施設長이나 總務가 인식하고 있는 바람직한 시설의 형태는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되어 생활하지만 취사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며, 이보다는 選好度가 떨어지지만 小宿舍制나그룹홈도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집단기숙사제는 선호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장이나 총무는 兒童이 小規模의施設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認識하는 傾向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다. 現 住居形態와 바람직한 住居形態

현재 施設이 가지고 있는 住居形態와 바람직한 주거형태가 똑같이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및 공동취사하는 경우가 兒童福祉 收容施設 전체 268개 시설중 26.5%인 71개 시설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현

주거형태는 集團寄宿舍이나 바람직한 주거형태는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및 공동취사하는 경우로 전체의 18.7%인 50개 시설이었다.

현 주거형태가 小宿舍制이면서 바람직한 주거형태가 그룹홈이나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및 공동취사하는 형태인 경우가 각각 6개 시설 과 2개 시설이었고, 現 住居形態가 몇 개의 家庭形態로 分離 및 共同 炊事이면서 바람직한 주거형태가 소숙사제, 그룹홈, 집단기숙사인 경 우는 각각 32개 시설, 22개 시설, 3개 시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現 住居形態가 集團寄宿舍이면서 바람직한 주거형태가 그룹 홈, 소숙사제,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및 공동취사인 경우가 각각 21개 시설, 31개 시설, 50개 시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現 住居形態와 바람직한 住居形態가 같은 경우는 소숙사제는 6개 시설,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및 공동취사는 71개 시설, 集團寄宿舍 는 17개 시설 등 총 94개 시설로 전체의 35.1%에 불과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현 주거형태와 바람직한 주거형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現 住居形態가 집단기숙사이면서 바람직한 주거형태가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및 공동취사하는 경우가 50개 시설로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本 分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현재의 住居形態보다는 소규모의 주거형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재의 주거형태가 集團寄宿舍일 경우에는 바람직한 시설형태가 몇 개의 가 정형태로 분리되어 생활하지만 취사는 공동으로 하는 형태가 많고, 現在의 住居形態가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되어 생활하지만 취사는 공동으로 하는 형태인 경우에는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거나 또는 小宿 舍制度나 그룹홈을 바람직한 형태로 認識하고 있다는 점이다.

〈表 3-22〉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의 現 住居形態와 바람직한 住居形態

(單位: 施設數)

						F)	- J.V., //	世中又发入
	영아	육아	영·육아		자립지	일시보	교호	 전 체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겐 세
현 주거형태와 바람								
직한 주거형태								
소숙사제/그룹홈	-	5	-	-	1	-	-	6
소숙사제/소숙사제	-	5	-	-	1	-	-	6
소숙사제/공동취사	-	1	-	-	1	-	-	2
공동취사/그룹홈	3	18	-	-	-	1	-	22
공동취사/소숙사제	3	29	-	-	-	-	-	32
공동취사/공동취사	6	56	4	1	-	4	-	71
공동취사/집단기숙사	-	3	-	-	-	-	-	3
공동취사/기타	-	-	-	-	-	1	-	1
집단기숙사/그룹홈	2	17	1	-	-	-	1	21
집단기숙사/소숙사제	3	23	1	2	-	-	2	31
집단기숙사/공동취사	2	44	1	1	-	1	1	50
집단기숙사/집단기숙사	2	9	-	2	-	2	2	17
기타	-	-	-	-	6	-	-	6
계 ¹⁾	21	210	7	6	9	9	6	268

註: 1) 무응답 3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아동의 입장에서 向後 施設의 形態는 小規模化되어야 한다는데 대부분의 시설장이나 총무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정형 시설인 그룹홈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룹홈 등 施設의 小規模化를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아울러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해 政府의 積極的인 支援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라. 바람직한 住居形態로의 向後 轉換計劃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현 주거형태와 바람직한 주거형태가 다르면서 현 주거형태를 바람직한 주거형태로 轉換할 意向이 있는 경우는 전체 271개 시설가운데 약 1/4인 69개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69개 시 설을 대상으로 향후 몇 년내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 <表 3-23>이다. 향후 3년 이내에 바람직한 형태의 住居施設로 전환하 겠다는 경우가 轉換意向이 있는 시설의 69.6%인 48개시설이며, 향후 5년 이내에는 91.3%인 63개 시설이 전환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表 3-23〉兒童福祉 收容施設의 바람직한 住居形態로 轉換意思가 있 다면, 向後 몇 年內에 轉換計劃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상	전 체	
2	2	1	-	1	2	-	8	
3	4	4	_	1	_	_	12	

(單位: 施設數)

수거형태									
공동취사/그룹홈	2	2	1	-	1	2	-	8	
공동취사/소숙사제	3	4	4	-	1	-	-	12	
공동취사/집단기숙사	2	2	1	-	1	-	-	6	
집단기숙사/그룹홈	4	-	2	1	1	-	-	8	
집단기숙사/소숙사제	1	3	8	-	4	-	1	17	
집단기숙사/공동취사	2	4	3	-	5	1	2	17	
기타/소숙사제	-	-	-	-	1	-	-	1	
계 ¹⁾	14	15	19	1	14	3	3	69	

註: 1) 비해당과 무응답 202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3. 指導·監督

현 주거형태와 바람직한

아동복지 수용시설은 지난 1년간(1996년 1~12월) 지도·감독을 몇 번이나 받았는 지를 알아본 바는 <表 3-24>와 같다. 兒童福祉收容施 設은 지난 1년간 평균 지도·감독받은 횟수가 8.4회였고, 지도·감독을 전혀 받지않은 시설은 5개 시설이었는데 반해 13회 이상 指導·監督을 받은 경우는 36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종별로 보면, 가장 많 이 지도·감독을 받은 시설은 嬰兒施設로서 평균 횟수가 11.1회였으며, 그 다음이 8.7회인 영·육아시설, 8.5회인 육아시설, 7.2회인 교호시설, 6.4회인 직업보도시설, 5.4회인 일시보호시설, 그리고 4.8회인 자립지원 시설 등의 순으로 指導·監督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兒童福祉 收容施設에 대한 指導·監督을 위해 방문하는 행정 기관들로는 시·군·구청,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보건복지부 등이 며, 主要訪問目的은 정기감사, 특별감사, 위생점검, 소방점검, 안전점 검, 실태파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兒童福祉 收容施設들이 각 기관에서 나오는 지도·감독을 최소한 3개월에 2회 이상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의 경우 이러한 빈번한 指導·監督 때문에 고유업무가 지장을 받는 정도이다.

〈表 3-24〉 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지난 1年間 指導・監督回數와 平均回數

(單位: 施設數, 回)

						(千世		· 英X, 凹 /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전 체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겐 세
지도 감독횟수								
없었음	1	2	-	-	2	-	-	5
1 ~ 3ই	3	12	-	1	1	2	1	20
3 ~ 6ই	3	68	1	1	5	3	-	81
7 ~ 9회	4	56	4	3	1	1	3	72
10 ~ 12회	5	32	1	-	1	1	2	42
13회 이상	4	31	1	-	-	-	-	36
계 ¹⁾	20	201	7	5	10	7	6	256
평균	11.1	8.5	8.7	6.4	4.8	5.4	7.2	8.4

註: 1) 무응답 5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따라서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가능하면 보다 體系的으로 指導·監督을 하되 횟수는 줄일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 短期保護事業 運營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기존의 목적인 수용아동들의 장기보호와 함 께 "1996年度 兒童福祉事業指針"(보건복지부, 1996: 87~88)에 의거한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단기보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바는 <表 3-25>와 같다. 현재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短期保護事業을 운영 하고 있는 시설은 29개 시설이었고,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육아시설 이 15개 시설, 嬰兒施設이 8개 시설, 일시보호시설이 3개 시설, 자립 지원시설이 2개 시설, 교호시설이 1개 시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 ·육아시설과 직업보도시설은 短期保護事業을 운영하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25〉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短期保護(一時保護)事業 運營與否

(單位:%)

			(十匹, 70)
	운영함	운영안함	계 (N)
영아시설	42.1 (8)	57.9 (11)	100.0 (19)
육아시설	7.3 (15)	92.7 (191)	100.0 (206)
영·육아시설	- (0)	100.0 (7)	100.0 (7)
직업보도시설	- (0)	100.0 (6)	100.0 (6)
자립지원시설	22.2 (2)	77.8 (7)	100.0 (9)
일시보호시설	33.3 (3)	66.7 (6)	100.0 (9)
교호시설	16.7 (1)	83.3 (5)	100.0 (6)
전 체 ¹⁾	11.1 (29)	88.9 (233)	100.0 (262)

註: 1) 무응답 9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이러한 것은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수용률이 전체 평균 64.7%인 점 을 고려할 때 遊休空間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短期保護事 業이 活性化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短期保護事業을 운영하는 시설이 적

은데, 현재는 단기보호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는 단기보호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본 바는 <表 3-26>과 같다. 현재 兒童福祉 收容施設에서 단기보호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233개시설중 향후에 단기보호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 시설은 약 절반인 116개 시설이었다. 이를 施設種別로 보면, 육아시설은 97개 시설, 영·육아시설 7개 시설, 영아시설 5개 시설, 직업보도시설 3개 시설, 일시보호시설과 교호시설은 각각 2개 시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3-26〉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短期保護(一時保護)事業 向後 運 營意思與否

(單位: %)

			(1 = 70)
	운영 의사있음	운영 의사없음	계 (N)
영아시설	45.5 (5)	54.5 (6)	100.0 (11)
육아시설	50.8 (97)	49.2 (94)	100.0 (191)
영・육아시설	100.0 (7)	- (0)	100.0 (7)
직업보도시설	50.0 (3)	50.0 (3)	100.0 (6)
자립지원시설	- (0)	100.0 (7)	100.0 (7)
일시보호시설	33.3 (2)	66.7 (4)	100.0 (6)
교호시설	40.0 (2)	60.0 (3)	100.0 (5)
_ 전 체 ¹⁾	49.8 (116)	50.2 (117)	100.0 (233)

註: 1) 현재 단기보호(일시보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무응답한 경우인 29건 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이처럼 현재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短期保護事業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단기보호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이 거의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는 측면에서 遊休空間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차원에서 短期保護事業을 活性化시키는 方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地域住民福祉事業 運營

아동복지 수용시설 가운데 시설의 목적사업 외에 地域社會內 住民 福祉를 위하여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수는 전체 260개 시설중 36.9%인 96개이며,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육아시설이 73개 시 설로 가장 많고, 다음이 嬰兒施設과 一時保護施設로 각각 6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3-27〉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地域社會內 住民福祉 事業運營 與否 및 事業數

(單位: 施設數)

보 교호 설 시설	전 체
5	164
1	96
6	260
-	26
1	38
-	23
-	5
-	4
1	96
	- 1 - - -

註: 1) 무응답 11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그리고 兒童福祉 收容施設에서 목적사업 외에 지역사회내 住民福祉 事業을 운영하는 시설들이 운영하는 사업수를 보면, 2가지를 하는 경 우가 38개 시설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가지 사업을 運營하는 경 우로 26개 시설이었으며, 32개 시설은 3가지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目的事業以外에 地域社會內 住民福祉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운동장 개방'이 75개 시설로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공부방 운영'(31개 시설), '강당 실비대역'(30개 시설), '장학사업'(6개 시설), '獨居老人을 위한 도시락 전달사업'(4개 시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3-28〉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地域社會內 住民福祉事業

(單位: 施設數)

						()	,	3124904)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전 체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전 체
공부방 운영	-	28	-	1	1	1	-	31
강당 실비대여	2	24	2	1	-	-	1	30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전달사업	-	3	-	-	-	1	-	4
장학사업	-	2	-	-	-	4	-	6
운동장 개방	5	62	3	3	-	1	1	75
기타 사업	4	37	-	1	2	3	-	47

註: 각 문항에 중복 응답한 시설수임.

第6節 施設에 대한 認識 및 態度

1. 並設保育施設 設置 意思

兒童福祉 收容施設에 병설보육시설을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본 바는 <表 3-29>와 같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並設保育施設을 설치할 의사가 있는 시설은 전체 249개 시설중 52.2%인 130개 시설이며, 이를 시설종별로보면, 嬰兒施設은 전체 17개 시설중 8개 시설이, 육아시설은 전체 196개 시설중 54.6%인 107개 시설이, 영·육아시설은 전체 7개 시설중 6개 시설이 並設保育施設을 설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29〉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並設保育施設 設置意思與否外 設置施設

(單位・施設數)

						(月	37立: ガ	也过数)
	영아 시설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 도시설	자립지 원시설	일시보 호시설	교호 시설	 전 체
병설보육시설 설치의사여부								
설치 의사없음	9	89	1	4	7	5	4	119
설치 의사있음	8	107	6	2	1	4	2	130
계 ¹⁾	17	196	7	6	8	9	6	249
설치 의사가 있다면, 설치 시설								
영아전용 보육시설	6	18	4	-	-	3	1	32
장애아 보육시설	2	15	1	-	-	-	1	19
육아전용 보육시설	-	31	-	1	-	-	-	32
방과후 보육시설	-	34	-	-	1	1	-	36
24시간 보육시설	-	5	-	1	-	-	-	6
기타	-	4	1	-	-	-	-	5
계	8	107	6	2	1	4	2	130

註: 1) 무응답 22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아동복지 수용시설중 竝設保育施設을 설치할 의사를 가진 시설 130 개소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병설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지를 살 펴보면, 27.7%인 36개 시설이 放課後 保育施設을 설치하고자 하였고, 嬰兒專用 保育施設과 육아전용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각각 전체의 24.6%인 32개 시설이었으며, 전체의 14.6%인 19개 시설 은 障碍兒 保育施設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는 6개 시설이 24시 간 보육시설을 설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嬰兒施設의 경우에는 전체 8개 시설중 6개 시설이, 일시보호시설은 전체 4개 시설중 3개 시설이, 그리고 영·육아 시설은 전체 6개 시설중 4개 시설이 각각 嬰兒專用 保育施設을 설치 하고자 하였다. 육아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107개 시설중 31.8%인 34 개 시설이 放課後 保育施設, 29.0%인 31개 시설이 육아전용 보육시설, 16.8%인 18개 시설은 영아전용 보육시설, 14.0%인 15개 시설이 장애아 보육시설, 5개 시설은 24時間 保育施設 등을 설치하고자 하여 다양한 종류의 並設保育施設을 설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병설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에 차이가 났으나, 現 施設의 特性에 적합한 並設保育施設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兒童福祉 收容施設에 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시설의 여유설비를 이용하여 수용보호뿐만 아니라 이용기능을 포함하는 등 시설의 기능을 施設 種別 特性을 살리는 방향으로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2. 다른 福祉施設로의 轉換에 대한 認識

현재의 시설을 다른 福祉施設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은 전체 259개 시설중 39.4%인 102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인구의 감소와 政府의 「先家庭 後施設」 정책기조에 따라 시설에 收容保護하는 아동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따른 우려의 표시로 해석된다.

이를 施設種別로 보면, 영아시설은 전체 20개 시설중 6개 시설, 육아시설은 전체 203개 시설중 41.9%인 85개 시설, 영·육아시설과 교호시설은 각각 1개 시설, 職業補導施設과 自立支援施設은 각각 2개 시설, 그리고 일시보호시설은 과반수인 5개 시설 등이 다른 복지시설로轉換할 意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시설은 5개중 2개시설이, 일시보호시설은 2개시설중 1개시설이 다른 福祉施設로 전향할 의향이 있음을 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재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전체 수용률이

64.7%인 점을 고려할 때, 전환의향을 가진 시설의 비율은 39.4%로서 遊休收容率 35.3%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이 다른 복지시설로 전환하게 될 경우 오히려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공간을 100%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사료되므로, 전향의향이 있는 시설이 다른 福祉施設로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法的 制度的 補完策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表 3-30〉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다른 福祉施設로 轉換意向與否 및 選好 施設種類

(單位: 施設數)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전 체 원시설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호시설 시설 전환의향여부 전환의향없음 전환의향있음 계¹⁾ 있다면, 선호시설종류 영아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관 아동전용시설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註: 1) 무응답 12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노인복지시설

기타

그리고 兒童福祉 收容施設에서 다른 복지시설로 전환할 의향을 가진 시설들이 선호하는 시설은 어린이집이 가장 많아 전체 102개 시설 중 23.5%인 24개 시설이었고, 그 다음이 老人福祉施設로서 전체의 21.6%인 22개 시설이었다. 이 외에도 12개 시설이 障碍人福祉施設, 11

개 시설이 兒童專用施設 등으로 전환하기를 원했고, 나머지 시설들은 영아시설, 자립지원관,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등으로 轉換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兒童福祉 收容施設들이 전환하고자 하는 복지시설들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어 린이집과 같은 利用施設이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므로 이들이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法的·制度的 支援 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施設의 移轉에 대한 態度

아동복지 수용시설 전체 267개 시설중 시설을 다른 곳으로 移轉할 意思를 가진 시설은 22.5%인 60개 시설이었고,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영아시설 8개 시설, 육아시설 42개 시설, 嬰·育兒施設 1개 시설, 자립

〈表 3-31〉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의 移轉意思與否 및 가장 큰 要求事項

(單位: 施設數)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전 체 시설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이전의사여부 이전의사없음 13 167 5 8 207 6 4 4 이전의사있음 8 42 1 2 3 2 2 60 계¹⁾ 209 8 21 7 6 10 6 267 있다면, 요구사항 세제상의 혜택 5 6 1 이전비용지원 2 28 4 18 1 1 1 1 개발제한지역완화 2 10 1 1 14 지역주민의 5 4 1 시설입주 허용 기타 7 1 5 1 계 8 42 2 3 2 60 2

註: 1) 무응답 4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지원시설 3개 시설, 그리고 직업보도시설, 일시보호시설, 교호시설 등 은 각각 2개 시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兒童福祉 收容施設中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원하는 시설 의 수가 60개 시설이 있는데, 이들 시설들이 이전하고자 할 때 요구 사항은 가장 많은 것이 '移轉費用支援'(28개 시설)이었고, 그 다음이 '개발제한지역 완화'(14개 시설), '세제상의 혜택'(6개 시설), '地域住民 의 施設入住 許容'(5개 시설) 등이었다.

4. 施設運營中斷에 대한 態度

아동복지 수용시설 가운데 施設運營을 中斷할 意思가 있는 시설은 전체 257개 시설중 5.4%인 14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설 종별로 보면, 育兒施設이 10개소로 가장 많고, 영·육아시설, 직업보도 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등이 각각 1개 시설이었다.

〈表 3-32〉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運營中斷 意思與否 (單位: 施設數)

	영아 시설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 도시설	자립지 원시설	일시보 호시설	교호 시설	 전 체
운영중단 의사여부								
중단 의사없음	16	197	5	4	7	8	6	243
중단 의사있음	-	10	1	1	1	1	-	14
계 ¹⁾	16	207	6	5	8	9	6	257

註: 1) 무응답 14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5. 다른 施設運營法人으로의 轉換에 대한 態度

兒童福祉 收容施設 가운데 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지원법인으 로 전향할 의향을 가진 시설은 전체 261개 시설중 23.0%인 60개 시설 이었는데,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嬰兒施設과 一時保護施設이 각각 2 개 시설, 육아시설이 53개 시설, 직업보도시설, 자립지원시설, 교호시설은 각각 1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3-33〉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他施設運營法人이나 支援法人 으로 轉換意向與否 및 어떤 法人

_	- 工 半守?	火心い	ᅦᄴᄆᅔ	- 이건 -	ムハ			
						(=	單位: 方	色設數)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전 체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신 세
전환의향여부								
전환의향없음	18	153	7	5	7	6	5	201
전환의향있음	2	53	-	1	1	2	1	60
계 ¹⁾	20	206	7	6	8	8	6	261
있다면, 어떤 법인								
노인복지시설 운영법인	1	29	-	-	1	2	1	3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법인	1	12	-	1	-	-	-	14
부녀복지시설 운영법인	-	1	-	-	-	-	-	1
정신질환시설 운영법인	-	2	-	-	-	-	-	2
지원 법인	-	7	-	-	-	-	-	7
계 ²⁾	2	51	-	1	1	2	1	58

註: 1) 무응답 10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轉向意思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떤 법인으로의 전향을 원하는 지 시설장 또는 총무에게 질문한 결과, 전향의향이 있는 시설 60개중 56.7%인 34개 시설이 老人福祉施設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전향하고자하였고, 23.3%인 14개 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전향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7개시설은 지원법인으로, 그리고 精神疾患施設을 운영하는 법인 1개 시설, 婦女福祉施設을 운영하는 법인 2개 시설이 있었다.

²⁾ 전환의향이 있으면서 법인에 대해 무응답한 2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第4章 收容兒童의 現況

第1節 收容兒童의 一般特性

1. 性·年齡 等 人口學的 特性

제3장에서는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運營現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번 장에서는 이러한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兒童의 特性을 살펴 보기로 한다.

1997년 3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兒童福祉 收容施設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중 個人調査票에 응답한 아동은 모두 16,6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성별 분포를 보면 男子가 55.1%로서 44.9%인 女子 보다 약 10.2% 포인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분포는 시설의 종류별로 뚜렷한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自立支援施設을 제외한 나머지의 시설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으며, 특히 직업보도시설과 교호시설은 남자가 각각 93.8%와 95.3%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一時保護施設의 경우는 남자가 64.5%로 여자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시설, 육아시설, 영·육아시설은 男子가 女子보다소폭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는 自立支援施設로서 남자가 42.9%, 여자는 57.1%였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兒童들의 平均 年齡은 12.0 세로서 중학교 1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嬰兒施設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의 평균 연령은 2.6세로 가장 어렸는데 반해 자립지원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의 평균 연령은 21.8세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시설에 수용된 兒童들의 平均 年齡은 13.2세로서 중학교 2학년 정도에 해당되고 있으며, 영·육아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의 평균 연령은 8.9세로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職業補導施設에 수용된 아동들의 평균 연령은 16.2세로서 고등학교 2학년, 일시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의 평균 연령은 4세, 그리고 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의 평균 연령은 4세, 그리고 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의 평균 연령은 15.1세로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 해당되는 年齡이 平均水準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들의 평균 연령에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은 各 施設의 設立目的과 特性이 다르기 때문이다.

〈表 4-1〉施設種類別 收容兒童의 一般特性

(單位: %)

							(平位· ///
	영아 시설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 도시설	자립지 원시설	일시보 호시설	교호 시설	계
성별								
남자	52.3	53.4	54.5	93.8	42.9	64.5	95.3	55.1
여자	47.7	46.6	45.5	6.2	57.1	35.5	4.7	44.9
周 ¹⁾ (N)	100.0 (1,267)	100.0 (12,739)	100.0 (1,339)	100.0 (322)	100.0 (163)	100.0 (361)	100.0 (278)	100.0 (16,469)
<u>연령</u>	(1,207)	(12,700)	(1,000)	(022)	(100)	(001)	(=, 0)	(10,102)
0 ~ 4세	83.5	2.2	13.8	-	-	70.9	-	10.8
5 ~ 9세	14.8	16.7	35.3	-	-	9.7	3.9	17.2
10 ~ 14세	1.7	37.5	46.1	14.3	-	9.7	34.8	33.9
15 ~ 19세	-	41.2	4.3	83.9	12.6	9.4	60.9	35.2
20세 이상	-	2.4	0.5	1.8	87.4	0.3	0.4	2.9
周 ²⁾ (N)	100.0 (1,269)	100.0 (12,787)	100.0 (1,341)	100.0 (322)	100.0 (167)	100.0 (361)	100.0 (279)	100.0 (16,526)
 평균	2.6	13.2	8.9	16.2	21.8	4.0	15.1	12.0

註: 1) 무응답 151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²⁾ 무응답 94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한편, 兒童福祉 收容施設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의 연령분포를 보 면, 10대 후반인 15세에서 19세 사이인 경우가 3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대초반인 10세에서 14세 사이로 33.9%인 것으로 나타났 다. 즉 兒童의 年齡이 10대인 경우가 69.1%인 것으로 나타나 시설에 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2/3가 感受性이 예민한 10대 연령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시설이 단순히 衣食住만 해결되어서 는 안되고, 10대에 특유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 니, 선생님의 役割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한 편, 5세에서 9세 사이는 17.2%, 4세 이하는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세 이상5)은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嬰兒施設과 一時保護施設은 4세 이하가 각 각 83.5%와 70.9%로 가장 많았고, 육아시설은 10대 후반인 15세에서 19세 사이가 4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0대 전반인 10세에 서 14세 사이로 37.5%였다. 嬰·育兒施設은 10대 전반인 10세에서 14 세 사이가 4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세에서 9세 사이로 35.3%였다. 직업보도시설과 교호시설은 10대 후반인 15세에서 19세 사이에 있는 兒童들이 각각 83.9%와 60.9%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자 립지원시설은 20세 이상이 87.4%로 나타났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兒童들의 學歷은 초등학교인 경우가 31.2% 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가 25.6%, 고등학교가 24.5%, 미취학이 15.8%, 기타가 2.9% 등으로 나타났다.

⁵⁾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퇴소하는 연령은 만 18세이지만 만 18세가 지나도 고등학 교 재학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까지 퇴소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음. 또한 자립지원시설의 경우에는 퇴소한 아동들이 자립할 때까지 2년간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20세를 지난 아동들이 수용되어 있음.

〈表 4-2〉施設種別 收容兒童의 學歷 및 宗教

(單位: %)

							ζ.	平压, 70)
	영아 시설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 도시설	자립지 원시설	일시보 호시설	교호 시설	계
학력								
미취학	97.5	6.5	25.1	2.2	-	66.9	1.5	15.8
초등학교	2.2	31.5	64.7	26.9	-	10.0	35.7	31.2
중학교	-	30.1	5.4	38.1	2.4	8.3	52.3	25.6
고등학교	-	29.5	2.7	17.5	83.6	3.6	9.0	24.5
기타	0.3	2.4	3.1	15.3	14.0	11.2	1.5	2.9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217)	(12,786)	(1,338)	(320)	(165)	(360)	(277)	(16,463)
종교								
무교	50.2	4.3	52.0	30.8	24.6	77.0	32.1	13.5
기독교	49.8	87.6	22.3	30.2	49.1	22.7	33.9	76.4
천주교	-	5.2	18.7	29.6	23.4	-	29.2	7.0
불교	-	1.6	6.9	8.8	1.8	-	4.4	2.1
기타	-	1.3	0.1	0.6	1.1	0.3	0.4	1.0
계 ²⁾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79)	(12,783)	(1,302)	(318)	(167)	(344)	(271)	(16,064)

註: 1) 무응답 157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兒童들의 宗教는 주로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의 시설장이나 재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전체적으로 보면 基督教가 76.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無敎로 13.5%였으며, 天主敎 7.0%, 佛敎 2.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수용아동들의 종교가 基督敎인 경우는 87.6%인 육아시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9.8%인 영아시설, 49.1%인 自立支援施設, 33.9%인 교호시설, 30.2%인 직업보도시설, 22.7%인 일시보호시설, 22.3%인 영·육아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收容兒童들의 宗敎가 무교인 경우는 77.0%인 일시보호시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2.0%인 영·육아시설, 50.2%인 영아시설, 32.1%인 교호시설, 30.8%인 직업보도시설, 24.6%인 자립 지원시설, 4.3%인 育兒施設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²⁾ 무응답 556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2. 障碍兒나 他市道出身 兒童數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兒童中 障碍兒나 他市道出身 兒童이 있는 시설은 110개 시설로서 전체 시설의 40.6%이다. 특히 영 아시설은 전체 21개 시설중 76.2%인 16개 시설에서 障碍兒나 他市道 出身 兒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兒童福祉 收容施設中 장애아나 타시도출신 아동이 있는 경우에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障碍兒나 他市道 兒童이 있다고 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아수는 시설당 평균 2.2명이었고,가장 많은 경우가 施設當 平均 5.7명인 일시보호시설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당 평균 4.4명인 영아시설, 4.0명인 영·육아시설, 2.7명인 직업보도시설, 1.5명인 育兒施設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처럼 일시보호시설이 장애아를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를 양육하기도 어렵고,障碍兒를 入養하기도 어려워 장애아에 대한입양이 비교적 용이한 외국으로 입양시키기 위해 海外入養機關에 장애아를 입소시킨 결과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兒童福祉 收容施設中 타시도출신 아동을 수용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시설에는 평균 0.7명의 타시도출신 아동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보호시설이 他市道出身 兒童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으며 시설당 평균은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4-3〉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障碍兒나 他市道 兒童有無 및 平均 障碍兒와 他市道 兒童數

(單位: 施設數, 名)

						(單位:	施設製	女,名)
	영아 시설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 도시설	자립지 원시설	일시보 호시설	교호 시설	전 체
장애아/타시도아동유무								
없다	5	123	2	2	8	2	3	145
있다	16	76	5	3	2	6	2	110
무응답	-	12	-	1	-	2	1	16
계	21	211	7	6	10	10	6	271
있다면, 장애이수								
없음	-	23	-	1	2	-	2	28
1 ~ 2명	4	37	2	1	-	1	-	45
3 ~ 4명	3	11	1	-	-	-	-	15
5 ~ 6명	2	2	-	-	-	1	-	5
7명 이상	6	2	2	1	-	4	-	15
무응답	1	1	-	-	-	-	-	2
<u>계</u>	16	76	5	3	2	6	2	110
평균	4.4	1.5	4.0	2.7	-	5.7	-	2.2
있다면, 타시도아동수								
없음	10	50	4	2	-	4	-	70
1 ~ 2명	2	15	-	-	-	-	-	17
3 ~ 4명	-	5	-	-	-	-	-	5
5 ~ 6명	1	-	-	-	-	-	-	1
7명 이상	-	1	1	-	-	2	-	4
무응답	3	5	-	1	2	-	2	13
<u>계</u>	16	76	5	3	2	6	2	110
평균	0.5	0.6	1.4	-	-	2.3	-	0.7

3. 滿 18歳 以上 兒童數

일반적으로 아동이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兒童福祉 收容施設에는 만 18세 이상인 아동은 원칙적으로는 생활할 수 없다. 그러나 兒童福祉法 施行令 제9조에 의하면 만 18세 이상이면서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중인자, 心身・障碍兒로서 귀가나 취업이 곤란한 20세

미만인 자, 그리고 직업보도시설 또는 職業訓鍊施設에서 직업훈련중 인 자 등은 만 18세가 넘어도 延長兒童으로 취급하여 法的으로 收容 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1995: 165).

〈表 4-4〉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滿 18歲 以上 兒童數

(單位: 施設數, 名)

						(平)匹,	//巴门入安	^, ''
	영아 시설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 도시설	자립지 원시설	일시보 호시설	교호 시설	전 체
만 18세 이상 이동수	, ,	, ,	, ,	16	2 / 2	<u> </u>	1 -	
없다	16	21	5	3	2	8	-	55
5명 미만	-	83	1	1	-	1	4	90
5 ~ 9명	-	56	1	1	-	-	1	59
10 ~ 14명	-	25	-	-	1	-	-	26
15 ~ 19명	-	11	-	-	2	-	1	14
20명 이상	-	2	-	-	5	-	-	7
무응답	5	13	-	1	-	1	-	20
계	21	211	7	6	10	10	6	271
전체 평균	-	6.3	6.0	5.0	21.4	2.0	5.7	6.8
법정 허용아 평균	-	4.0	2.3	5.0	18.2	0.2	4.7	4.1
기타 연장아 평균	-	2.3	3.7	-	3.2	1.8	1.0	2.7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滿 18歲 以上 延長兒童數는 시설당 평균 6.8명이 있으며, 이는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10.6%에 해당되고 있다. 즉, 平均的으로 볼 때 10명중 1명이 만 18세이상인 연장아동이었다. 이중 법적으로 허용되는 延長兒童數는 시설당 평균 4.1명으로서 총 연장아동의 60.3%이었고, 법적으로는 허용이되고 있지 않지만 施設長의 재량으로 인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타 연장아는 시설당 평균 2.7명이었다. 이를 施設種別로 보면, 자립지원시설이 21.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자립지원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이 育兒施設을 퇴소한 연후에 入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자립지원시설의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만 18세 이상 아동이

18.2명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3.2명은 法的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아동들이다. 政府의 指針에 의하면, 자립지원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입소후 1년 이내로 자립지원시설의 利用期間이 제한되어 있지만,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으로 1년단위로 연장가능하며, 總 入所期間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보건복지부, 1995: 106)는 규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규정을 벗어난 경우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자립지원시설의 경우 定員 對比 現員의 比率이 64.8%에 불과한 상태여서 시설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비록 입소아동들에 대한 養育費가 支援은 되지 않지만 施設長의 判斷下에 이들이 3년 이상을 자립지원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육아시설의 경우에는 滿 18歲 以上인 兒童數가 시설당 평균 6.3명인데, 이중 법적으로 허용되는 아동수는 시설당 평균 4.0명이며, 법적기준을 초과한 其他 延長兒는 시설당 평균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육아시설의 경우도 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이 64.6%에 지나지 않아 施設空間에 여유가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시설장이 자신의 시설에서자란 아동들에 대한 책임과 관심이 많은 경우에는 法的으로 許容되지않는 만 18세 이상 아동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自立의 基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第2節 收容兒童들의 施設入所時期의 原因

1. 收容兒童들의 入所年度와 入所年齡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언제 입소하였는지, 그리고 그

當時의 年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 바는 다음과 같다. 現在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중 '91년 이후에 入所한 경우가 過半數를 넘는 55.2%였고, 그 다음이 '86년에서 '90년 사이로 32.9%였으며, '81년에서 '85년 사이는 11.1%, '80년 이전은 0.8%였다. 즉, 최근 6년 이내에 입소한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7년에서 11년된 兒童이 약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2년 이상된 경우도 약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施設種別로 보면, '91년 이후에 입소한 경우는 97.4%인 교호시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95.9%인 영아시설, 94.4%인 직업보도시설, 93.9%인 일시보호시설, 78.2%인 嬰·育兒施設, 46.8%인 육아시설, 31.5%인 자립지원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육아시설과 자립지원시설을 제외한 大部分의 施設에 수용되어 있는 兒童들의 入所年度는 '91년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아시설의 경우에는 '86년에서 '90년 사이가 39.2%로 가장 많아 長期入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립지원시설은 '81년에서 '85년 사이가 26.5%로 가장많았고, 특히 '80년 이전에 입소한 경우가 26.0%인 것으로 나타나 자립지원시설에 入所한 兒童들은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長期間 施設生活을 해 온 것으로 추측된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兒童들의 入所當時 年齡을 살펴보면, 과반수인 50.0%가 5세에서 9세 사이로 전체 평균 6.4세로 나타났다. 施設種別로 보면 아동들의 입소당시 평균 연령이 가장 높 은 시설은 14.7세인 직업보도시설이며, 그 다음은 13.3세인 교호시설 이었다. 이는 직업보도시설의 경우 入所對象者가 아동복지시설 수용 아동중 12세 이상된 아동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 의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호시설은 不良行爲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나 親權者나 後見人이 入所를 신청한 아동 또는 관계기관에서 보호위 탁된 아동이 대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한 兒童이 入所對象이 되기 때문이다.

〈表 4-5〉施設種類別 收容兒童의 入所年度와 入所年齡

(單位: %, 歲)

							(単位:	%, 威)
	영 아 시설	육 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 도시설	자립자 원시설	일시보 호시설	교 호 시설	계
입소년도								
~ 75년도	-	-	-	-	6.2	-	-	0.1
76~80년도	-	0.6	-	0.3	19.8	-	-	0.7
81~85년도	0.2	13.4	2.8	1.9	26.5	0.3	0.4	11.1
86~90년도	3.9	39.2	19.0	3.4	16.0	5.8	2.2	32.9
91~97년도	95.9	46.8	78.2	94.4	31.5	93.9	97.4	55.2
켸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002)	(12,597)	(1,339)	(321)	(162)	(360)	(278)	(16,059)
입소연령								
4세 이하	96.7	25.5	40.3	1.9	16.0	75.2	-	31.3
5 ~ 9세	2.9	56.9	50.9	2.5	32.7	15.4	8.4	50.0
10 ~ 14세	0.4	16.6	8.3	34.9	19.1	8.8	59.7	15.9
15 ~ 19세	-	1.0	0.5	60.4	18.5	0.6	31.9	2.7
20세 이상	-	-	-	0.3	13.7	-	-	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995)	(12,506)	(1,335)	(318)	(162)	(351)	(273)	(15,940)
_ 평균	1.1	6.6	5.2	14.7	11.0	2.8	13.3	6.4

註: 1) 무응답 561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한편, 兒童들의 入所當時 平均 年齡이 가장 적은 것은 영아시설로 평균 연령이 1.1세이며, 그 다음으로 적은 경우는 입소당시 평균 연령 이 2.8세인 일시보호시설이었다. 育兒施設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의 入所當時 平均 年齡은 6.6세였으며, 영·육아시설은 평균 연령이 5.2세 인 것으로 나타났다.

²⁾ 무응답 680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2. 收容兒童의 入所原因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兒童들의 入所原因을 살펴보면, 父母가 모두 生存해 있지만 離婚 등의 사유로 입소한 경우가 42.5%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만 생존한 경우는 13.5%, 어머니가 死亡하고 아버지만 生存한 경우가 5.6%,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는 6.2%, 棄兒인 경우가 22.9%, 迷兒인 경우가 5.0% 등으로 나타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아는 6.2%에 불과하고, 父母中 어느 한 쪽이라도 生存하고 있는 경우가 최소한 6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원인으로 入所하게된 경우는 비록 적은 비율이지만 아동자 신의 문제로 인하여 입소한 경우가 3.0%였고, 入養했다가 실패하여 다시 입소하게 된 파양의 경우가 0.8%였으며, 少年少女家長에서 입소 한 경우가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兒童福祉 收容施設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의 입소원인을 시설종별로 보면, 영아시설의 경우 부모 모두가 생존하고 있지만 離婚으로 입소한 경우가 5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棄兒인 경우로 39.7%였다. 즉, 離婚이나 棄兒 등 이들 두 가지 入所原因이 전체의 94.2%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중 어느 한 쪽이라도 생존한 경우는 최소한 58.5%였다. 育兒施設, 영·육아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등은 嬰兒施設과 마찬가지로 시설에 입소한 중요한 원인이 부모모두가 생존하지만 이혼한 경우와 기아인 경우로서 각각 41.4%, 50.1%, 53.2%와 20.7%, 35.9%, 36.0% 등이었다. 그리고 이들 시설들에 入所한 兒童들이 부모중 어느 한 쪽이라도 生存한 경우는 각각 63.9%, 58.8%, 57.9% 등이었다.

〈表 4-6〉施設種類別 收容兒童의 入所原因

(單位: %)

								1 1-1
	영아 시설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 도시설	자립지 원시설	일시보 호시설	교호 시설	계
기아	39.7	20.7	35.9	1.6	9.0	36.0	2.5	22.9
미아	0.9	5.8	1.2	7.2	13.2	0.8	2.5	5.0
부모사망	0.3	7.2	2.0	6.2	26.3	1.1	3.2	6.2
부 모 생 존 , 이혼	54.5	41.4	50.1	31.2	29.3	53.2	10.8	42.5
부死 모生	2.9	16.0	6.1	11.5	12.6	1.1	1.8	13.5
모死 부生	1.1	6.5	2.6	5.6	7.2	3.6	2.2	5.6
파양	0.3	0.9	0.8	0.3	-	1.7	-	0.8
소년가장	0.1	0.5	-	2.4	2.4	-	0.4	0.5
아 동 자 신 의 문제	0.2	1.0	1.3	34.0	-	2.5	76.6	3.0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258)	(12,811)	(1,342)	(321)	(167)	(361)	(279)	(16,539)

註: 1) 무응답 81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한편 직업보도시설과 교호시설의 경우는 兒童自身의 問題로 인하여입소한 경우가 각각 34.0%와 76.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모 모두가 생존해 있지만 離婚 등의 事由로 인하여 입소하게 된 경우로 각각 31.2%와 10.8%였다. 이처럼 직업보도시설과 교호시설은 아동자신의문제로 인하여 입소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이들 施設들의 目的이 정규학교에서 벗어난 아동들이나 初犯이나 가벼운 犯罪를 저질러소년원에 가지않고 入所한 兒童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自立支援施設의 경우는 부모 모두 생존하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입소한 경우가 2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父母 모두 死亡한 경우가 26.3%였으며, 그 외에는 迷兒인 경우가 13.2%, 아버지가 사망하고어머니만 생존한 경우가 12.6%, 棄兒인 경우가 9.0%,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버지만 生存한 경우가 7.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 父母生存 兒童들의 入所原因

위에서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兒童들의 入所原因을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들 아동중 부모가 생존한 아동들의 입소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父母가 生存하고 있으면서도 아동들이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입소한 원인은 부모의 行 方不明인 경우가 3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7.4%인 부모의 離 婚, 17.9%인 부모의 養育抛棄, 5.7%인 부모의 經濟的 貧困, 5.5%인 부 모의 再婚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부모의 疾病, 부모의 虐 待, 宗教的 理由 등으로 인한 경우들이었다.

이를 시설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영아시설, 영·육아시설 및 일시 보호시설 등의 경우는 父母의 養育抛棄로 인하여 입소한 경우가 각각 59.6%, 49.7%, 59.9% 등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각각 17.8%, 27.4%, 25.5% 등인 부모의 行方不明과 10.7%, 10.9%, 7.3% 등인 부모 의 離婚이 주요한 입소원인이었다. 한편, 육아시설의 경우에는 부모의 행방불명(38.3%)과 부모의 이혼(32.5%)이 主要한 入所原因이었다.

직업보도시설의 경우에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입소한 한 경우가 2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9.2%인 부모의 행방불명과 10.1%인 父母의 再婚과 經濟的 貧困이었다. 교호시설의 경우에는 각각 24.1%인 부모의 이혼과 행방불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모의 학대(17.2%), 부모의 재혼(13.8%), 부모의 經濟的 貧困(10.3%) 등이 主要한 入所原因이었다. 자립지원시설의 경우에는 부모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입소한 경우가 4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父母의 離婚(28.9%), 부모의 行方不明(13.3%) 등이 주요한 입소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表 4-7〉施設種類別 父母生存한 兒童들의 入所原因

(單位: %)

	영 아 시설	육 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 도시설	자립지 원시설	일시보 호시설	교 호 시설	계
이혼	10.7	32.5	10.9	22.2	28.9	7.3	24.1	27.4
행방불명	17.8	38.3	27.4	19.2	13.3	25.5	24.1	34.4
양육포기	59.6	7.5	49.7	2.0	-	59.9	3.5	17.9
부모재혼	0.3	6.5	3.4	10.1	4.4	0.5	13.8	5.5
부모학대	0.9	2.7	1.9	5.1	2.2	1.6	17.2	2.5
부모질병	3.9	4.6	3.0	2.0	6.7	0.5	-	4.2
부모빈곤	3.9	6.0	2.5	10.1	40.0	2.1	10.3	5.7
종교이유	-	0.1	-	-	2.2	1.0	3.5	0.1
기타	2.9	1.8	1.2	29.3	2.3	1.6	3.5	2.3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685)	(5,258)	(672)	(99)	(45)	(192)	(29)	(6,980)

註: 1) 부모가 사망한 경우나 알지못하는 경우와 무응답한 9,640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나. 父 또는 母가 生存한 兒童들의 入所原因

앞에서는 부모들이 모두 생존한 경우에 한해 살펴보았고, 여기에서는 부모중 어느 한 쪽 父母가 生存한 경우에 아동들이 입소하게된 원인을 살펴보았다(表 4-8 참조).

부모중 어느 한 쪽이 생존한 아동들의 입소원인을 보면, 부모의 가출로 인하여 입소한 경우가 3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父母의再婚(18.6%), 부모의 經濟的 貧困(16.0%), 부모의 疾病(11.2%) 등이 주요한 입소원인이었으며, 특히 부모의 收監으로 인하여 입소한 경우도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영아시설(30.0%), 육아시설(35.5%), 영·육아시설(36.2%), 일시보호시설(53.3%) 등은 父母의 家出이 가장 중요한 입소원인이었고, 직업보도시설은 부모의 재혼이 24.1%로 가장 중요한 入所原因이었으며, 자립지원시설은 부모의 再婚과 經濟的 貧困이 똑같이

27.3%로 가장 중요한 입소원인이었다. 그리고 교호시설의 경우에는 부모의 경제적 빈곤이 45.5%로 가장 重要한 入所原因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4-8〉施設種類別 父 또는 母가 生存한 兒童들의 入所原因

(單位・%)

								千匹 70)
	영아 시설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 도시설	자립지 원시설	일시보 호시설	교호 시설	계
부모질병	20.0	11.0	13.8	11.1	9.1	-	9.1	11.2
부모재혼	4.0	18.9	14.7	24.1	27.3	-	-	18.6
부모가출	30.0	35.5	36.2	20.4	24.2	53.3	9.1	35.1
부모학대	-	2.8	6.9	9.3	-	-	18.2	3.1
부모수감	4.0	4.7	8.6	1.9	-	6.7	9.1	4.8
부모빈곤	24.0	15.8	9.5	14.8	27.3	26.7	45.5	16.0
종교이유	-	0.1	-	-	-	-	-	0.1
기타	18.0	11.2	10.3	18.4	12.1	13.3	9.0	11.1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50)	(2,815)	(116)	(54)	(33)	(15)	(11)	(3,094)

註: 1) 부모가 모두 생존했거나 혹은 사망했거나 부모의 생존을 알지못하는 경우와 무응답한 13,526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다. 兒童自身의 問題로 入所한 兒童들의 入所原因

여기에서는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중 아동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입소한 兒童들의 入所原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아동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입소한 경우중 가 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입소원인은 전체의 40.4%인 常習家出이었고, 그 다음이 盜癖(20.4%), 家庭不適應(14.8%), 學習遲進兒(2.8%), 初期自 閉症(0.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상습가출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常習家出은 시설종별에 관계없이 가장 큰 입소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는 바, 구체적으로는 육아시설의 46.1%, 영·육아시설의 86.7%, 직업보도시설의 38.1%, 一時保護施設의 55.6%, 교호시설의

35.0%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습가출 다음으로 중요한 입소원인은 시설종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여 육아시설, 영·육아시설, 일시보호시설은 각각 32.2%, 6.7%, 33.3% 등인 家庭不適應이었고, 직업보도시설과 교호시설은 각각 20.0%와 30.4%인 盜癖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4-9〉施設種類別 兒童自身의 問題로 入所한 兒童들의 入所原因 (單位: %)

							(+14.70)
	영아 시설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도 시설	일시보 호시설	교호 시설	계
상습가출	-	46.1	86.7	38.1	55.6	35.0	40.4
도벽	-	7.0	-	20.0	-	30.4	20.4
가정부적응	-	32.2	6.7	18.1	33.3	3.7	14.8
초기자폐증	-	0.9	-	1.0	-	-	0.4
학습지진아	-	3.5	-	6.7	11.1	0.5	2.8
기타	100.0	10.3	6.6	16.1	-	30.4	21.2
켸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	(115)	(15)	(105)	(9)	(214)	(460)

註: 1) 아동자신의 문제로 입소하지 않은 경우와 무응답한 16,160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라. 嬰兒園에서의 轉園與否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중 嬰兒園으로부터 전원해 온 경우는 전체아동의 15.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종별로 보면 영·육아시설이 3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4%인 自立支援施設, 14.6%

〈表 4-10〉施設種類別 嬰兒園에서의 轉園與否

(單位: %)

	영아 시설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 도시설	자립지 원시설	일시보 호시설	교호 시설	계
예	12.9	14.3	33.9	8.4	20.4	0.8	14.6	15.6
아니오	87.1	85.7	66.1	91.6	79.6	99.2	85.4	84.4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673)	(12,234)	(1,282)	(286)	(162)	(358)	(261)	(15,256)

註: 1) 무응답 1,364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인 교호시설, 14.3%인 육아시설, 12.9%인 영아시설, 8.4%인 직업보도 시설, 0.8%인 一時保護施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第3節 收容兒童의 家族事項

1. 施設入所前 同居家族과 親戚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함께 살았던 가족이 누구인지 살펴보면, 父母와 함께 산 경우(10.6%), 아버지와 함께 산 경우(8.4%), 父母와 親族과 함께 산 경우(8.2%), 어머니와 함께 산 경우(6.0%) 등 施設兒童 5명중 2명 이상이 최소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같이 산 경우로 나타났다. 한편, 親父母와는 이미 헤어져 祖父母, 부모의 兄弟姉妹 등 기타 친족과 같이 생활하다가 시설에 들어온 아동은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약 1/4의 兒童은 施設入所前 같이 생활한 家族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영아시설의 경우는 入所兒童의 年齡이 어리기 때문에 입소전에 함께 살았던 가족이나 친척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69.7%로 월등히 많았고, 父母와 親戚과 함께 산 경우는 11.1%, 아버지와 친척과 함께 산 경우는 6.7%, 어머니와 親戚과 함께 산 경우는 6.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育兒施設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입소전 같이 생활한 가족이나 친척을 보면, 아버지와 親戚과 함께 산 경우가 2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친척과 함께 산 경우(19.9%), 祖父母나 外祖父母와 함께 산 경우(12.2%), 其他 親族과 함께 산 경우(12.1%), 어머니·친척과 함께 산 경우(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嬰.育兒施設의 경우는 입소전에 함께 살았던 家族이나 親戚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3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타 친족과 함께 산 경우(30.8%), 아버지와 親戚과 함께 산 경우(11.0%), 부모와 친척과 함께 산 경우(10.8%), 조부모나 외조부모와 함께 산 경우(7.4%), 어머니와 親戚과 함께 산 경우(6.9%)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兒童들중 家族이나 親戚과의 동거내용을 모른다고 응답한 아동 외에는 대부분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다가 입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家族의 解體가 離婚이나 또는 貧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때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相談事業이나 生活保護事業 등 家 族政策을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이 가족으로부 터 분리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겠다.

아울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兒童의 特性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과거의 고아와는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이러한 要保護兒童의 特性이 반영된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社會福祉士의 주도로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시설아동과 가족과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이 早期에 家庭에 復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것이다. 이때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社會福祉專門要員이나 기타 자원을 활용하여 아동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며, 이는 兒童의 家族이 건강해지면 보다 조기에 가정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兒童虐待 등의 요인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보다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表 4-11〉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入所前 함께 살았던 家族과 親戚

							十)	11. 70)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전 체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부모	8.2	10.9	8.7	12.1	22.8	9.4	8.6	10.6
부모 + 친족	2.9	9.0	2.1	24.2	7.1	1.9	18.3	8.2
아버지	5.4	11.2	5.7	4.3	2.4	9.7	8.6	10.0
부 + 친족	1.3	8.9	5.3	19.6	3.0	1.8	31.2	8.4
어머니	4.6	6.0	4.8	6.2	7.1	17.2	4.3	6.0
모 + 친족	1.7	4.3	2.1	9.0	6.0	1.8	7.5	4.0
조부모/외조부모	3.2	12.2	7.4	6.5	17.4	5.8	5.7	10.8
부모의 형제·자매	1.1	6.4	2.2	5.0	3.6	0.1	5.7	5.5
기타 친족	1.9	12.1	30.8	8.4	11.4	17.6	7.9	12.8
미상	69.7	19.0	30.9	4.7	19.2	34.7	2.2	2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273)	(12,875)	(1,343)	(322)	(167)	(361)	(279)	(16,620)

2. 收容兒童의 家族이나 親戚과의 交流

가. 兒童의 家族이나 親戚집 訪問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중 가족이나 친척집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全體 兒童의 29.3%로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10명중 약 3명이 가족이나 친척집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職業補導施設에서 생활하고 있는 兒童의 家族訪問 經驗率이 35.2%로 나타나, 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보다 가족방문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보도시설외에도 育兒施設이 34.1%, 자립지원시설이 31.4%로서 높게 나타난 반면, 교호시설이 17.9%, 一時保護施設이 9.0%, 영아시설이 5.9%, 그리고 영·육아시설이 5.2% 등의 순으로 相對的으로 낮게 나타났다.

〈表 4-12〉施設種類別 家族이나 親戚집 訪問經驗與否 分布

	영아 시설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 도시설	자립지 원시설	일시보 호시설	교호 시설	계
없다	94.1	65.9	94.8	64.8	68.6	91.0	82.1	70.7
있다	5.9	34.1	5.2	35.2	31.4	9.0	17.9	29.3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92)	(12,636)	(1,340)	(304)	(159)	(356)	(273)	(15,960)

註: 1) 무응답 660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이러한 兒童들의 家族이나 親戚집을 방문한 경험률은 1번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는 아동이 분석대상이 되므로 가족과 어느 정도 자주방문하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家族과의 紐帶感의 程度를 파악하기 위하여 訪問回數를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은 지난 1년간 가족이나 친척집을 訪問한 回數는 평균 4.1회로 나타나 약 3달에 한 번꼴로 가족이나 친척집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施設種別로 보면, 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收容兒童들증 가족이나 친척집을 방문한 경험을 가진 수용아동들은 지난 1년간 평균 8.4회를 방문하여 타시설의家族이나 친척집을 訪問한 經驗回數 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교호시설 다음으로는 평균 7.0회인 자립지원시설, 평균 5.2회인 직업보도시설, 평균 4.1회인 육아시설, 평균 2.9회인 嬰兒施設, 평균 2.1회인 영·육아시설, 평균 2.0회인 일시보호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중에서 이들 家族이나 親戚을 방문한 經驗이 있는 아동들중 방문한 가족이나 친척을 살펴보면, 38.9%의 아동이 부모중 한 명을 訪問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버지만 방문한 경우가 19.6%, 어머니만 방문한 경우가 15.7%이며, 父母모두 訪問한 경우는 3.6%에 불과하였다.

〈表 4-13〉	施設種類別	지난	1年間	家族이나	親戚집	訪問回數	分布
						(單位: %	を,回)

	영아 시설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 도시설	자립지 원시설	일시보 호시설	교호 시설	계
1 ~ 3회	72.0	66.3	88.2	57.4	37.5	96.7	57.1	66.3
4 ~ 6	22.0	19.6	5.9	16.8	14.6	3.3	16.3	19.2
7 ~ 9	4.0	3.4	2.9	11.9	6.3	-	6.1	3.7
10 ~ 12	-	5.8	3.0	9.9	29.2	-	4.1	6.0
13회 이상	2.0	4.9	-	4.0	12.4	-	16.4	4.8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50)	(4,144)	(68)	(101)	(48)	(30)	(49)	(4,490)
평균	2.9	4.1	2.1	5.2	7.0	2.0	8.4	4.1

註: 1) 비해당과 무응답한 12,130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한편, 父母外의 친척을 訪問한 경우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경우가 부모의 형제·자매로서 24.6%이며, 다음이 祖父母나 外祖父母인 경우로 19.2%의 分布를 나타내고 있다.

나. 家族이나 親戚의 施設訪問

앞에서는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兒童들이 그들의 家族이나 친척집을 방문한 경험을 알아보았고, 이제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收容되어 있는 兒童들을 찾아 온 경우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동들의 가족이나 친척이 시설로 아동을 방문한 비율은 全體 兒童中 72.9%나 되어, 아동들이 家族이나 親戚을 訪問하는비율보다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동들을 찾아오는 비율이 높은 양상을보여주고 있다.

시설종별로 家族이나 親戚이 아동을 만나기 위해 시설을 방문하는 비율은 영·육아시설이 92.9%나 되고 있으며, 그 다음이 90.8%인 일시 보호시설, 87.4%인 영아시설, 79.5%인 自立支援施設, 69.8%인 육아시설, 67.1%인 직업보도시설, 45.6%인 교호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表 4-14〉施設種類別 家族이나 親戚訪問 與否

	영아 시설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 도시설	자립지 원시설	일시보 호시설	교호 시설	계
예	87.4	69.8	92.9	67.1	79.5	90.8	45.6	72.9
아니오	12.6	30.2	7.1	32.9	20.5	9.2	54.4	27.1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907)	(12,692)	(1,342)	(307)	(156)	(359)	(272)	(16,035)

註: 1) 무응답 585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한편, 이러한 家族이나 親戚들이 어느 정도 자주 시설을 방문하는 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 1년간 가족이나 친척들이 시설을 訪問한 回數를 알아보았다. 지난 1년간 아동복지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施設을 방문한 平均回數는 3.5회로 약 4달에 한 번꼴로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表 4-15〉 施設種類別 지난 1年間 家族이나 親戚이 찾아온 回數 (單位: % 回)

							(+144	· /0, 🖽/
	영아 시설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 도시설	자립지 원시설	일시보 호시설	교호 시설	계
1 ~ 3회	82.9	71.9	74.2	69.8	51.6	74.2	46.9	71.2
4 ~ 6	14.3	17.2	11.8	14.6	29.0	16.1	25.9	17.3
7 ~ 9	-	2.5	4.3	7.3	-	-	11.2	2.9
10 ~ 12	1.0	5.5	8.6	6.3	19.4	-	9.8	5.6
13회 이상	1.8	2.9	1.1	2.0	-	9.7	6.2	3.0
켸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05)	(3,629)	(93)	(96)	(31)	(31)	(143)	(4,128)
평균	2.7	3.5	3.5	4.2	4.4	4.3	5.0	3.5

註: 1) 비해당과 무응답한 12,492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이를 施設種別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호시설에 수용된 兒童들의 家族이나 親戚들이 방문한 平均回數가 5.0회로 타시설에 수용된 아동들 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수용아동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施設을 訪問하는 平均回數가 많은 시설의 종류는 4.4회인 자립지원시설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4.3회인 일시보호시설, 4.2회인 직업보도시설, 3.5회인 육아시설과 영·육아시설, 2.7회인 嬰兒施設 등의 순으로나타났다.

지난 1년간 兒童福祉 收容施設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을 찾아온 가족이나 친척은 주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찾아온 比率은 25.6%이며, 어머니가 찾아온 비율은 18.3%로서 아버지의 비율보다는 조금 낮았다. 한편, 父母 모두 찾아온 비율은 4.6%로 낮았다. 그외에는 父母의 兄弟·姉妹가 찾아온 비율이 19.8%이고, 祖父母 또는 外祖父母가 찾아온 경우는 13.0%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함께 生活하는 兒童의 親兄弟・姉妹數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兒童들중에는 그들의 親兄弟 ·姉妹들이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조사결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兒童들중 함께 생활하는 친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는 59.6%로서 5명중 3명은 親兄弟·姉妹와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 으며, 친형제·자매가 1명이 있는 경우는 32.1%, 2명이 있는 경우는 6.5%, 그리고 3명 이상이 있는 경우는 1.7%인 것으로 나타나, 평균적 으로 0.5명의 親兄弟·姉妹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平均 親兄弟·姉妹 數는 육아시설이 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0.5명인 자립지원 시설이었으며, 영·육아시설과 一時保護施設은 각각 0.2명인 것으로 나 타났다.

〈表 4-16〉 施設種類別 施設에서 함께 生活하는 親兄弟·姉妹數

								(+12.70)
	영아 시설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 도시설	자립지 원시설	일시보 호시설	교호 시설	계
없다	87.5	53.3	79.7	93.4	67.7	83.1	90.0	59.6
1명	12.0	36.9	17.1	3.5	24.1	15.8	7.4	32.1
2명	0.5	7.8	2.8	1.3	3.8	1.1	2.6	6.5
3명	-	1.7	0.4	1.6	3.2	-	-	1.4
4명	-	0.2	-	-	1.2	-	-	0.2
5명	-	0.1	-	0.3	-	-	-	0.1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912)	(12,767)	(1,342)	(316)	(158)	(361)	(269)	(16,125)
평균	0.1	0.6	0.2	0.1	0.5	0.2	0.1	0.5

註: 1) 무응답 495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4. 收容兒童 父母의 生存與否 및 經濟生活水準

가. 父母의 生存與否

입소당시 부모가 모두 사망한 兒童은 6.2%이고, 적어도 1명은 생존해 있는 경우는 적어도 61.6%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가운데 조사 당시에 父母의 生存與否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아동들의 父母가 현재 모두 生存하고 있는 경우는 29.7%였고, 어머니만 生存한 경우는 15.0%였으며, 아버지만 생존한 경우는 8.3%로 나타나 부모중 어느 한 쪽이라도 생존하고 있는 兒童의 比率은 최소 53.0%인 반면, 부모 모두가사망한 경우는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父母의 生存與否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40.3%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아동에게 있어서 父母가 生存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正常 家庭이나 偏父母家庭에서 家族解體를 겪음으로써 고아아닌 고아로 전 락하게 되므로, 地域社會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중 가족해체의 위험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家族解體를 미연에 예방하는 대책을 강구해줌으로써 부모가 있는 아동이 고아아닌 孤兒로 전락하는 것을 豫防해야 할 것이다.

〈表 4-17〉施設種類別 父母의 生存與否 分布

(單位: %)

								(平匹, 70)
	영아 시설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 도시설	자립지 원시설	일시보 호시설	교호 시설	계
모두 생존	43.3	28.3	20.8	52.8	22.7	43.8	49.3	29.7
아버지만	2.4	9.1	2.6	10.3	9.2	4.7	18.7	8.3
어머니만	4.8	17.1	5.6	16.9	14.1	4.4	11.2	15.0
모두사망	0.8	7.4	2.1	6.3	24.5	5.0	4.3	6.7
모르겠다	48.7	38.1	68.9	13.7	29.5	42.1	16.5	40.3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916)	(12,817)	(1,342)	(320)	(163)	(361)	(278)	(16,197)

註: 1) 무응답 423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收容兒童들의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는 52.8%인 직업보도시설이 타시설 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20.8%인 영·육아시설이 相對的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중어느 한 쪽이라도 생존한 경우는 職業補導施設이 8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79.2%인 교호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보도시설과 교호시설은 대체로 中學校 以上인 경우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부모의 생존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반면에 영아시설,영·육아시설과 일시보호시설 등의 경우는 시설에 入所하는 年齡이 영아로서 나이가 어려 父母의 生存與否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이들 시설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모중 어느 한 쪽이라도 生存해 있을 可能性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나. 父母의 經濟生活水準

시설아동들의 부모들중 어느 한 쪽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에 父 또는 母의 經濟生活水準에 대한 兒童의 意識을 조사해 보았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은 부 또는 모가 생존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父 또는 母의 經濟生活水準을 모르는 경우가과반수를 넘는 5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 또는 모의 경제생활수준을알고 있을 경우 그들의 經濟生活水準이 下라고 응답한 아동이 34.2%였으며, 경제생활수준이 中이라고 응답한 아동은 13.4%이며, 경제생활수준이 上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父 또는 母의 經濟生活水準이 낮은 것으로 評價하고 있었다.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부 또는 모의 경제생활수준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嬰兒施設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의 71.3%로 타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이 69.9%인 영·육아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父 또는 母의 經濟生活水準이 下인 경우는 74.2%인 일시보호시설이타시설 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았고, 그 다음이 61.2%인 자립지원시설이었으며, 부 또는 모의 경제생활수준이 中인 경우는 43.8%인 교호시설이, 그리고 부 또는 모의 경제생활수준이 上인 경우는 5.1%인직업보도시설이 각각 타시설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兒童福祉 收容施設中 직업보도시설과 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의 부 또는 모의 경제생활수준이 타시설에수용되어 있는 연흥들의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이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이 經濟的인 餘力을 가진父母가 있어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규학교에서 벗어나 입소하는 경우 또는 소년원에 가기에는 輕犯罪에 해당하는 犯罪를 저질러 入所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表 4-18〉施設種類別 父 또는 母의 經濟生活水準

	영아 시설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 도시설	자립지 원시설	일시보호 시설	교호 시설	계
상	-	0.8	0.3	5.1	1.5	1.1	2.3	1.0
중	2.6	12.7	3.6	37.9	6.0	15.1	43.8	13.4
하	26.1	33.3	26.2	36.0	61.2	74.2	45.2	34.2
모르겠다	71.3	53.2	69.9	21.0	31.3	9.6	8.7	51.4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91)	(6,791)	(385)	(253)	(67)	(186)	(219)	(8,292)

註: 1) 부모가 사망했거나 알지못하는 경우와 무응답한 8,328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5. 施設兒童의 용돈과 용돈출처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收容되어 있는 兒童들의 한 달 용돈은 얼마나되고, 이들 용돈은 어떻게 마련하게 되는지 그 출처를 알아본 바는 <表 4-19>와 같다. 兒童福祉 收容施設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의 한 달 용돈은 평균 1만 1천원이었고, 시설종별로는 평균 약 5만3천원인 自立支援施設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평균 약 2만 1천원인 직업보도시설이었다. 이처럼 자립지원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이 용돈이 가장 많은 이유는 이들 收容者들이 만 18세가 넘어 육아시설에서나와 獨立生活을 영위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 수용아들 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아 써야할 용도가 많기 때문이며, 또한 嬰兒施設이 상대적으로 가장 용돈이 적은 이유는 이들이 아직도 어려서 용돈을 관리할줄도 모르고,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結果라고 할 수 있다.

兒童福祉 收容施設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의 용돈은 어떻게 얻게 되는지 그 출처를 알아본 바, 전체 아동중 75.7%가 시설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施設과 後援金으로 용돈을 받는 경우로 12.2%

였다. 그리고 父母나 親戚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경우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수용아동들중 60%가 넘는 兒童들이 부모가 있으면서도 그들의 父母로부터 용돈을 받는 경우가 극히 微微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4-19〉施設種類別 收容兒童의 한 달 용돈과 용돈출처

(單位: %, 千원)

						(+	1. 70,	1 12)
	영아 시설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도 시설	. 자립지원 시설	일시보호 시설	교호 시설	계
한달 용돈								
만원 이하	100.0	67.1	92.9	47.2	12.2	68.4	48.7	68.7
11 ~ 20천원	-	24.0	1.2	20.7	4.1	31.6	39.7	21.8
21 ~ 30천원	-	5.8	0.3	16.6	-	-	3.8	5.5
31 ~ 40천원	-	1.1	0.2	0.7	-	-	5.1	1.0
41 ~ 50천원	-	1.3	0.2	6.6	12.2	-	2.6	1.4
51천원 이상	-	0.8	5.2	8.3	71.4	-	-	1.6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6)	(11,698)	(1,212)	(290)	(49)	(38)	(78)	(13,391)
평균	0.2	11.2	9.3	20.8	52.8	2.3	6.5	11.0
용돈출처								
①시설	40.0	74.1	97.4	53.8	2.4	94.4	92.2	75.7
②부모친척	-	0.6	-	34.8	19.0	5.6	2.6	1.3
③후원금	-	7.5	0.1	0.7	2.4	-	-	6.6
1+2	-	2.5	0.8	9.2	76.2	-	1.3	2.7
1+3	60.0	13.7	1.1	0.7	-	-	1.3	12.2
2+3	-	0.2	-	-	-	-	-	0.2
1+2+3	-	1.5	0.6	0.8	-	-	2.6	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	(11,611)	(1,212)	(273)	(42)	(36)	(77)	(13,276)

註: 1) 무응답 3,229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收容兒童들이 시설로부터 용돈을 받는 경우가 90.0%가 넘는 시설은 영·육아시설(97.4%), 일시보호시설(94.4%), 교호시설(92.2%) 등이었고, 직업보도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兒童들은 父母나 親戚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경우가 34.8%로 타시설 보다 상대적

²⁾ 용돈이 없는 경우와 무응답한 3,344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으로 많았으며, 자립지원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은 施設과 父母 나 親戚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경우가 76.2%로 他施設 보다 상대적으 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第4節 收容兒童의 將來問題(高等學生 以上)

1. 將來 希望學校

兒童福祉 收容施設에서 생활하고 있는 高等學校 在學 以上의 兒童들은 자신들이 희망하는 최종학교를 고등학교로 생각하는 경우가 54.0%로 과반수를 넘었고, 專門大 以上을 원하는 경우는 46.0%였다.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전문대 이상을 원하는 경우는 영·육아시설이 71.4%로 他施設 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高等學校까지만 원하는 경우는 62.3%인 직업보도시설이 타시설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4-20〉 施設種類別 收容兒童의 希望하는 最終學校

(單位: %)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도 시설	자립지 원시설	일시보호 시설	교호 시설	계
고등학교	54.1	28.6	62.3	52.7	45.5	56.3	54.0
전문대이상	45.9	71.4	37.7	47.3	54.5	43.8	46.0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829)	(42)	(114)	(150)	(11)	(16)	(4,162)

註: 1) 중학교 이하인 경우와 무응답한 12,458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高等學校 在學 以上인 兒童들이 고등학교까지만 다니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직장을 희망하기 때문(53.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獨立生活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경우로 19.4%였으며, 공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17.7%였다. 그리고 周邊環境이 안되어서 고등학교까지

만 다니겠다는 경우는 5.6%였다. 이러한 이유들을 볼 때 兒童福祉收容施設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등학교 재학 이상인 아동들은 職場을 희망하는 경우와 獨立生活을 원하는 경우가 약 7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립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

〈表 4-21〉施設種類別 高等學校까지만 다니고 싶다는 理由

(單位: %)

							(112,77)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도 시설	자립지원 시설	일시보호 시설	교호 시설	계
공부거부	17.6	8.3	33.8	9.0	-	22.2	17.7
환경안됨	5.1	-	2.9	24.4	-	-	5.6
직장희망	54.5	91.7	32.4	47.4	80.0	55.6	53.8
독립생활	19.3	-	29.4	16.7	20.0	11.1	19.4
기타	3.5	-	1.5	2.5	-	11.1	3.5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045)	(12)	(68)	(78)	(5)	(9)	(2,217)

註: 1) 중학교 이하인 경우와 무응답한 14,403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表 4-22〉 施設種類別 專門大 以上 다니고 싶다는 理由

(單位: %)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도 시설	자립지원 시설	일시보호 시설	교호 시설	계
공부희망	14.3	3.3	18.6	46.5	33.3	14.3	15.4
더나은직장	68.3	76.7	51.2	43.7	66.7	71.4	67.2
사회적명예	7.5	10.0	14.0	5.6	-	-	7.6
기타	9.9	10.0	16.2	4.2	-	14.3	9.8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740)	(30)	(43)	(71)	(6)	(7)	(1,897)

註: 1) 중학교 이하인 경우와 무응답한 14,723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高等學校 在學 以上인 兒童 들중 專門大 以上을 다니고 싶다고 응답한 아동을 대상으로 그 이유 를 알아본 바, 가장 많은 경우가 더 나은 職場을 얻기 위한 경우로 67.2%였고, 그 다음이 공부를 희망하기 때문이라는 경우로 15.4%였으며, 社會的 名譽를 위한 경우는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2. 退所時 걱정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高等學校 在學 以上인 兒童들의 시설퇴소시가장 걱정되는 것은 자립하는 것으로서 전체의 41.8%였고, 그 다음이施設出身에 대한 社會的 偏見 23.4%, 취직기회가 없을까봐 11.3%, 살거처가 없는 점 10.4% 등이었으며, 걱정거리가 없다는 경우는 11.6%에불과하였다. 이처럼 兒童福祉 收容施設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등학교 재학 이상인 아동들은 대부분 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며, 특히 혼자서 自立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에서 모든 것을 지원받으며 생활해 온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生計를 책임져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表 4-23〉 施設種類別 退所時 가장 걱정되는 것

(單位: %)

	육아 시설	영육아시 설	직업보도 시설	자립지원 시설	일시보호 시설	교호 시설	계
없음	11.1	9.5	28.9	9.9	18.2	12.5	11.6
자립	41.9	59.5	41.3	35.2	54.5	25.0	41.8
취직기회	11.7	4.8	10.7	3.1	9.1	31.3	11.3
살거처	10.2	4.8	2.5	22.8	-	-	10.4
사회적 편견	23.6	21.4	13.2	28.4	18.2	12.5	23.4
기타	1.5	-	3.4	0.6	-	18.7	1.5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928)	(42)	(121)	(162)	(11)	(16)	(4,280)

註: 1) 중학교 이하인 경우와 무응답한 12,340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3. 將來 希望職業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고등학교 재학 이상인 아동들이 취직을 한다면 어떠한 職業을 원하는 지를 알아본 바는 <表 4-24>와 같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고등학교 재학 이상인 아동들의 希望職業은 專門·技術職이 3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사무직(19.4%), 판매서비스직(17.6%), 기능공(9.0%), 행정관리직(4.6%), 單純勞務職(2.2%), 농업근로자(1.0%)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4-24〉施設種類別 將來 希望職業

(單位: %)

							(十匹, 70)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도 시설	자립지원 시설	일시보호 시설	교호 시설	계
행정관리자	4.5	2.4	1.6	8.6	18.2	-	4.6
전문/기술	38.6	47.6	60.7	44.4	36.4	50.0	39.6
사무직원	19.8	9.5	4.1	25.3	18.2	18.8	19.4
판매서비스	18.1	23.8	9.0	11.1	-	25.0	17.6
농업근로자	1.0	2.4	0.8	0.6	-	-	1.0
기능공	9.0	4.8	17.2	3.1	27.2	-	9.0
단순노무	2.2	-	0.8	4.3	-	-	2.2
기타	6.8	9.5	5.8	2.6	-	6.2	6.6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921)	(42)	(122)	(162)	(11)	(16)	(4,274)

註: 1) 중학교 이하인 경우와 무응답한 12,346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이러한 兒童들의 希望職業과는 달리 취직시 고려하는 사항을 알아 본 바는 <表 4-25>와 같다. 취직시 그 직업을 통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지를 35.4%의 아동이 응답하여 가장 많이 考慮하는 事項이었고, 그 다음이 俸給을 많이 주는지(23.4%),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지 (20.0%), 住居問題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15.4%) 등으로 나타나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있었으며, 그 직업을 통해서 社會에 貢獻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경우는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4-25〉施設種類別 就業時 考慮事項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도 시설	자립지원 시설	일시보호 시설	교호 시설	계
봉급	23.3	14.3	26.2	24.7	27.3	18.7	23.4
주거문제	15.6	16.7	9.8	14.2	9.1	25.0	15.4
장기여부	19.9	23.8	18.9	21.0	27.3	18.7	20.0
보람	35.5	38.1	33.6	34.6	36.3	31.3	35.4
사회공헌	4.3	2.4	10.7	4.9	-	-	4.5
기타	1.4	4.7	0.8	0.6	-	6.3	1.3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929)	(42)	(122)	(162)	(11)	(16)	(4,282)

註: 1) 중학교 이하인 경우와 무응답한 12,338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4. 退所後 居住計劃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高等學校 在學 以上인 兒童들은 퇴소후 주거에 대해 퇴소시점에 가봐야 안다고 하는 경우가 3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會社寄宿舍(17.0%), 가족이나 친척집(15.0%), 선배나 동기들과 방을 마련(9.3%), 자립생활관(9.2%), 住宅傳費金으로 마련(7.2%), 직장에서 해결(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表 4-26〉施設種類別 退所後 居住計劃

(單位: %)

						,	1 1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 도시설	자립지 원시설	일시보 호시설	교호 시설	계
가족·친척집	15.0	9.4	27.9	3.2	9.1	43.8	15.0
회사기숙사	17.6	16.7	8.2	9.9	36.4	6.2	17.0
선배와 동기들과 함께 방 마련	9.9	-	3.3	3.2	9.1	-	9.3
자립생활관	7.4	4.8	15.6	50.3	-	-	9.2
직장에서 해결	5.1	14.3	4.1	3.7	-	-	5.0
주택전세금으로 마련	7.4	4.8	8.2	4.3	-	-	7.2
그때가봐야 앎	35.9	50.0	32.7	21.7	45.4	50.0	35.5
기타	1.7	-	-	3.7	-	-	1.8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930)	(42)	(122)	(161)	(11)	(16)	(4,282)

註: 1) 중학교 이하인 경우와 무응답한 12,338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5. 自立生活館에 대한 認識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고등학교 재학 이상인 아동들이 시설에서 退所한 연후에 自立生活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를 알아본 바는 <表 4-27>과 같다. 시설에서 퇴소한 연후에 自立生活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경우는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高等學校 在學 以上인 兒童들중 62.0%였고, 나머지 38.0%는 시설에서 퇴소한 연후에 자립생활관을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측면에서 볼 때 施設兒童들에 대해 自立生活館의 設立目的과 利用可能性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립지원시설과 일시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고등학교 재학 이상 인 아동들은 90.0% 이상이 시설에서 退所한 연후에 自立生活館을 이 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27〉 施設種類別 自立生活館의 利用可能 認知度

(單位: %)

						•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도 시설	자립지원 시설	일시보호 시설	교호 시설	계
전혀모름	38.7	71.4	44.6	5.6	10.0	62.5	38.0
조금은 앎	39.1	23.8	30.6	19.6	90.0	37.5	38.2
잘알고있음	22.2	4.8	24.8	74.8	-	-	23.8
_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922)	(42)	(121)	(143)	(10)	(16)	(4,254)

註: 1) 중학교 이하인 경우와 무응답한 12,366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한편, 아동들은 시설에서 퇴소한 연후에 자립생활관을 이용하겠다는 경우가 31.7%였고, 자립생활관을 이용할 생각이 없는 경우는 23.6%에 불과하였으며, 과반수에 가까운 44.7%는 자립생활관을 이용할 지를 아직도 잘모르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4-28〉施設種類別 退所後 自立生活館의 利用與否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도 시설	자립지원 시설	일시보호 시설	교호 시설	계
생각있다	29.5	33.3	30.3	89.6	27.3	43.8	31.7
생각없다	24.3	23.8	28.6	1.4	-	50.0	23.6
모르겠다	46.2	42.9	41.1	9.0	72.7	6.2	44.7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901)	(42)	(119)	(144)	(11)	(16)	(4,233)

註: 1) 중학교 이하인 경우와 무응답한 12,387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一時保護施設에 수용되어 있는 고등학교 재학 이상인 아동들중 72.7%가 시설에서 퇴소한 연후에 自立生活館을 이용할 것인가를 모르겠다고 하여 자립생활관에 대해 알고있다는 인식이 90.0%인 것과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과는 상당한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施設에서 退所한 연후에 자립생활관을 이용할 생각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간섭받기 싫어서, 施設延長이라는 분위기가 싫어서, 직장관계로 인하여, 身分露出이 싫어서 등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들은 시설에서 벗어나 독립된 생활을 원하고 있으며, 自立生活館을 또 다른 하나의 시설로 認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6. 自立支援金에 대한 認識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에는 退所兒童들에게 자립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자립지원금에 대한 인지여부를 알아본바는 <表 4-29>와 같다. 自立支援金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경우가 56.4%였고, 조금 알고 있다는 경우가 35.8%로 나타나 자립지원금에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경우는 分析對象 兒童의 92.2%인 것으로나타나 대부분의 고등학교 재학 이상의 아동들은 자립지원금에 대해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表 4-29〉施設種類別 自立支援金에 대한 認知度

(單位: %) 육아 시설 일시보호 영육아 직업보도 자립지원 계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전혀모름 6.8 14.3 33.7 7.2 56.3 7.8 조금은 앎 25.5 27.3 37.5 36.5 47.6 19.4 35.8 잘알고있음 56.7 38.1 40.8 73.4 72.7 6.2 56.4 계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2)(98) (11)(16) (N) (3,920)(124)(4,211)

註: 1) 중학교 이하인 경우와 무응답한 12,409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한편, 退所後 이러한 自立支援金을 받는 경우에 자립지원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아본 바는 <表 4-30>과 같다. 住宅資金으로 사용하겠다는 경우가 3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定期積金(29.6%),自己開發費(21.8%), 가재도구(8.8%), 연고자지원(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립지원금을 住宅資金으로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아동이 많으나, 현실적으로 주택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自立支援金의 現實化가 우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表 4-30〉施設種類別 自立支援金의 使用用度 計劃

(單位: %) 육아 시설 영육아 직업보도 자립지원 일시보호 교호 계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주택자금 35.7 36.4 31.0 28.6 24.8 정기적금 29.6 29.6 46.8 22.4 45.5 30.0 16.6 가재도구 24.0 8.4 16.6 3.9 8.8 연고자지원 1.0 1.3 3.2 10.0 1.1 자기개발비 21.6 31.0 13.0 54.5 50.0 21.8 24.8 기타 3.0 4.8 6.4 0.8 10.0 3.0 계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175)(3,910)(42)(77)(125)(11)(10)

註: 1) 중학교 이하인 경우와 무응답한 12445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예를 들면, 부산시의 경우는 1998년도 시설퇴소자 2인 기준으로 2 천만원의 傳貰資金을 지원하고 있는데(부산광역시, 1998: 62), 이 정도 는 되어야 자립지원금이 아동의 自立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 다.

第5章 從事者 退所兒童 現況

第 1 節 從事者 現況

1. 施設當 從事者 規模

법적 기준에 따른 아동복지 수용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을 보면, 兒童福祉 收容施設에는 모두 시설장 1인을 두고, 자립지원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복지 수용시설들에는 총무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아시설의 경우에는 兒童 5人當 保育士를 1인씩 두도록 하고, 육아시설과 일시보호시설은 아동 10인당 보육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보도시설과 교호시설은 아동 30인당 보육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이 외에도 施設種類 및 規模에 따라 간호사, 생활지도원, 의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취사부, 세탁부 등을 필요에 따라 두도록 하고 있다.

兒童福祉 收容施設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총 3,129명으로 시설당 평균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施設當 從事者數를 시설종별로 구분해 보면, 시설당 평균 34명인 영·육아시설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영아시설로서 평균 18명이며, 그 다음이 施設當 平均 17명인 교호시설, 시설당 평균 16명인 일시보호시설, 시설당 평균 12명인 직업보도시설, 시설당 평균 10명인 育兒施設, 그리고 시설당 평균 3명인 자립지원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自立生活館의 從事者 規模가 평균 3명에 불과한 것은 법적 기준이 정하는 인력이 3명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며, 기타 나머지 시설들 의 경우에는 수용되어 있는 收容兒童들의 규모에 따라 보육사를 둘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설종별 종사자 규모에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表 5-1〉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의 從事者規模

(單位: 施設數, 名)

						(+144	. //BIX	女人, 1口 <i>J</i>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전 체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신 세
종사자규모								_
5명 미만	-	-	-	-	10	-	-	10
5 ~ 9명	3	99	1	2	-	-	-	105
10 ~ 14명	8	95	4	3	-	4	1	115
15 ~ 19명	5	10	1	-	-	5	3	24
20명 이상	5	5	1	1	-	1	1	14
계 ¹⁾	21	209	7	6	10	10	5	268
평균	18	10	34	12	3	16	17	11
종사자수 ²⁾	369	2,168	243	72	30	154	93	3,129

註: 1) 무응답 3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2. 施設의 從事者 1人當 收容兒童數

전체적으로 보면 從事者 한 사람이 평균 5.7명의 아동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施設種別로 從事者 의 配置基準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설종별로 구분해서 종사자 1인 당 아동수를 당해 施設의 配置基準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먼저, 영·육아시설의 경우 從事者 1人當 兒童數는 평균 12.3명으로 다른 종류의 시설보다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종사자 1인당 아동수의 분포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개의 嬰·育兒施設中 6개의 시설은 종사자 1인당 아동수가 6명 미만이었으나, 나머지 1개 시설에서 종사자 1인당 아동수가 9명을 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설 때문에 영·육아시설의 從事者 1人當 兒童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²⁾ 종사자수는 271개 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 이므로 평균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음.

육아시설의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평균 6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從事者 1人當 兒童數의 분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209개 육아시설중 97.1%에 해당하는 203개시설에서 종사자 1인당 아동수가 8명 이하로서 法定 配置基準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表 5-2〉兒童福祉 收容施設 種別 從事者 1人當 收容兒童數 (單位: 施設數, 名)

						(十日	L. // LIX	一致人, 1口 /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전 체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겐 세
종사자 1인당								
수용아동수								
2명 이하	9	-	-	3	1	5	1	19
3명 ~ 4명	12	37	2	1	1	3	4	60
5명 ~ 6명	-	124	4	1	2	2	-	133
7명 ~ 8명	-	42	-	1	4	-	-	47
9명 이상	-	6	1	-	1	-	-	8
계 ¹⁾	21	209	7	6	9	10	5	267
평 균	2.8	6.0	12.3	3.3	6.4	2.8	3.2	5.7

註: 1) 무응답 4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3. 從事者의 職種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職種別 人員數를 살펴보면 <表 5-3>과 같다. 保育士는 총 1,634명으로 각 시설당 약 6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生活指導員과 職業訓鍊敎師는 각각 86명과 45명으로 전체 271개 시설의 31.7%와 16.6% 정도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相談要員은 30개 시설에만 있으며, 醫師와 營養士는 전체 아동복지 수용시설중 단지 7개 시설에만 근무하고 있으며, 看護士나 看護助務士는 전체 아동복지 수용시설 271개의 52.8%인 143개 시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사부는 289명으로 각 시설당 약 1.1명이 있으며, 세탁부는 전체 271개 시설의 45.4%인 123개 施設에 근무하고 있

었다. 한편, 經理는 14개 시설에만 근무하고 있으며, 警備員과 補助員은 각각 36개 시설과 28개 시설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5-3〉施設種類別 從事者의 職種

(單位: 實數)

							(±• 只数/)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계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71
시설장	21	207	6	5	6	10	6	261
총무	20	206	7	6	9	7	6	261
의사	1	5	1	-	-	-	-	7
간호사/ 간호조무사	20	103	7	-	-	9	4	143
영양사	2	4	-	-	-	-	1	7
보육사	235	1144	137	15	8	78	17	1634
생활지도원	2	73	1	5	-	1	4	86
직업훈련교사	-	8	-	20	-	-	17	45
상담요원	8	5	3	-	1	11	2	30
취사부	21	217	19	12	-	10	10	289
세탁부	15	83	8	1	-	12	4	123
경리	1	6	1	1	-	5	-	14
경비원	2	9	4	2	2	1	16	36
보조원	2	23	-	-	1	2	-	28
기타	19	73	49	5	2	8	2	158
무응답	-	2	-	-	1	-	4	7
(N)	(369)	(2,168)	(243)	(72)	(30)	(154)	(93)	(3,129)
(시설수)	(21)	(211)	(7)	(6)	(10)	(10)	(6)	(271)

시설종별로 보면 保育士는 각 시설당 평균 영아시설 11.2명, 육아시설 5.4명, 영·육아시설 19.6명, 직업보도시설 2.5명, 자립지원시설 0.8명, 一時保護施設 7.8명, 교호시설 2.8명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육아시설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生活指導員은 영아시설 2개소, 육아시설 73개소, 영·육아시설과 일시보호시설은 각 1개소, 직업보도시설은 5개소, 교호시설은 4개 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職業訓鍊教師는 육아시설 8개 시설에 있었고, 직업보도시

설에 20명, 교호시설에 1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相談要員은 영아시설 8개, 육아시설 5개, 영·육아시설 3개, 자립지원시설 1개, 교호시설은 2개 시설 등에서 勤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는 각 시설당 평균 1.1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從事者의 一般特性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종사하는 從事者들의 性別分布를 보면 <表 5-4>와 같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3,129명중 女子가 75.6%였고, 男子는 23.0%였다. 이를 施設種別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경우는 직업보도시설(54.2%), 자립지원시설(60.0%), 교호시설(59.1%) 등이었고, 나머지 영아시설, 육아시설, 영·육아시설, 일시보호시설 등은 女子가 75.1%에서 89.7%사이로 男子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5-4〉施設種類別 從事者의 性別

(單位: %)

	영아 시설	육아 시설	영육아 시설	직업보 도시설	자립지 원시설	일시보 호시설	교호 시설	계
남자	10.3	22.9	23.9	54.2	60.0	10.4	59.1	23.0
여자	89.7	75.1	76.1	45.8	40.0	89.6	40.9	75.6
무응답	-	2.0	-	-	-	-	-	1.4
계 (N)	100.0 (369)	100.0 (2,168)	100.0 (243)	100.0 (72)	100.0 (30)	100.0 (154)	100.0 (93)	100.0 (3,129)

兒童福祉 收容施設에 종사하는 從事者의 年齡을 보면 <表 5-5>와 같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평균 연령은 39.3세 였다. 이를 年齡分布로 보면, 29세 이하인 경우가 3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4.0%인 30대 였으며, 60세 이상 8.3%이며, 70세 이상

의 高年齡도 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5-5〉施設種類別 從事者의 年齡

(單位: %, 歲)

							(手世	/0, //X.)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يا <u>ا</u>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계
29세 이하	48.0	30.7	28.9	22.4	24.1	46.8	34.4	33.2
30 ~ 39세	14.4	25.0	27.7	44.8	27.6	14.2	29.0	24.0
40 ~ 49세	14.9	18.0	23.1	11.9	13.8	15.6	16.1	17.7
50 ~ 59세	13.5	14.1	13.2	17.9	13.8	12.8	11.8	13.9
60 ~ 69세	6.3	9.0	5.8	3.0	13.8	9.2	7.5	8.3
70세 이상	2.9	3.2	1.3	-	6.9	1.4	1.2	2.9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48)	(2,036)	(242)	(67)	(29)	(141)	(93)	(2,956)
평 균	36.4	40.1	38.6	38.7	42.7	37.0	37.6	39.3

註: 1) 무응답 173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종사하는 從事者들의 學歷은 <表 5-6>과 같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高等學校가 47.4%로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大學校 以上(26.1%), 중학교 이하(19.7%), 전문대학(6.0%) 등의 순이었다.

〈表 5-6〉施設種類別 從事者의 學歷

(單位: %)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계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711
중학교 이하	18.2	20.3	18.9	15.3	13.3	13.6	28.0	19.7
고등학교	55.6	46.5	50.2	45.8	40.0	53.9	21.5	47.4
전문대학	7.6	5.4	13.2	5.6	-	1.3	4.3	6.0
대학교 이상	18.4	26.6	17.7	33.3	46.7	31.2	45.2	26.1
기타	0.2	0.8	-	-	-	-	1.0	0.6
무응답	-	0.4	-	-	-	-	-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69)	(2,168)	(243)	(72)	(30)	(154)	(93)	(3,129)

5. 從事者에 대한 政府補助與否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종사하는 從事者들에 대해 政府補助를 받고있는 지를 알아본 바는 <表 5-7>과 같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3,129명중 政府補助를 받는 경우가 87.9%였으며, 10.0%는 정부보조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施設種別로 보면, 정부보조를 받는 경우가 영아시설(87.5%), 육아시설(91.3%), 영·육아시설(96.7%), 직업보도시설(88.9%), 자립지원시설(80.0%), 일시보호시설(37.7%), 교호시설(73.1%) 등으로 나타나 嬰·育兒施設이 가장 많이 政府補助를 받고 있는 반면에 일시보호시설이 가장 적게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시보호시설이 정부보조금을 가장적게 받는 이유는 이들 일시보호시설이 入養機關으로서 영·유아들을 入養할 때 일정한 金額을 받고 있어서 그 만큼 政府補助金을 지원하지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表 5-7〉施設種類別 從事者에 대한 政府補助與否

(單位:%)

							,	十四. 70)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계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Al
보조받음	87.5	91.3	96.7	88.9	80.0	37.7	73.1	87.9
보조받지 않음	10.0	8.3	3.3	11.1	20.0	33.1	26.9	10.0
무응답	2.4	0.4	-	-	-	29.2	-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69)	(2,168)	(243)	(72)	(30)	(154)	(93)	(3,129)

6. 從事者의 資格證與否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종사하는 從事者들이 해당직종과 관련한 資格 證 所持與否를 알아본 바는 <表 5-8>과 같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중 해당직종과 관련한 資格證을 所持한 比率은 32.4% 였고, 67.0%는 資格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5-8〉施設種類別 從事者의 該當職種 資格證與否

(單位: %)

								(+12.70)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긔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계
자격증 있음	31.4	31.1	32.1	47.2	43.3	40.9	37.6	32.4
자격증 없음	68.6	68.1	67.5	52.8	56.7	59.1	62.4	67.0
무응답	-	0.8	0.4	-	-	-	-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69)	(2,168)	(243)	(72)	(30)	(154)	(93)	(3,129)

7. 從事者의 勤務年數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종사하는 從事者들의 勤務年數를 살펴보면 <表 5-9>와 같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平均 勤務年數는 약 8년인 97.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백분율 분포로보면 勤務年數가 3년 이하인 경우가 4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년에서 6년 사이인 경우가 14.8%로 많았으며, 21년 이상 長期 勤續한 경우도 10.3%에 달했다.

아동복지 수용시설 종별 從事者의 平均 勤務年數를 보면, 영아시설은 약 7.2년(85.9개월), 육아시설은 약 8.5년(102.1개월), 영·육아시설은 약 10.2년(122.4개월), 職業補導施設은 약 6년(72.5개월), 자립지원시설은 약 8.5년(102.2개월), 일시보호시설은 약 5.2년(62.9개월), 교호시설은 약 3.2년(38.5개월) 등인 것으로 나타나 영·육아시설에 從事하는 從事者들이 가장 오랜기간 동안 근무하였으며, 교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가장 짧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5-9〉施設種類別 從事者의 勤務年數

(單位: %, 個月)

								. ,, . ,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يا <u>ا</u>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계
3년 이하	53.0	44.9	25.9	49.3	40.0	62.1	63.0	45.8
3 ~ 6년	15.5	14.3	17.3	16.9	16.7	11.7	19.6	14.8
6 ~ 9년	4.3	8.6	10.7	7.0	20.0	5.5	9.8	8.2
9 ~ 12년	5.7	7.2	9.9	8.5	-	4.1	5.4	7.0
12 ~ 15년	5.2	5.3	4.5	9.9	3.3	7.6	2.2	5.3
15 ~ 18년	2.2	4.6	15.2	1.4	-	2.1	-	4.8
18 ~ 21년	3.0	4.1	2.5	5.6	6.7	4.8	-	3.8
21년 이상	11.1	11.0	14.0	1.4	13.3	2.1	-	10.3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68)	(2,143)	(243)	(71)	(30)	(145)	(92)	(5,382)
평 균	85.9	102.1	122.4	72.5	102.2	62.9	38.5	97.4

註: 1) 무응답 37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이러한 施設種別 從事者 平均 勤務年數를 백분율 분포로 보면, 종사자의 근무년수가 3년 이하인 경우는 63.0%인 교호시설이 타시설 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從事者의 勤務年數가 15년 이상 장기인 경우는 31.7%인 영·육아시설이 타시설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호시설에서 종사하는 從事者들은 100.0%가 모두 15년이하의 勤務年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第2節 退所兒童의 現況

1. 退所兒童의 一般特性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기록보관중인 1996년 4월 1일부터 1997년 3 월 31일 사이에 退所한 退所兒童들은 전체 5,4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들의 일반특성을 살펴보면, 全體 退 所兒童 5,422명중 60.0%가 남자였고, 여자는 39.9%였다. 이러한 퇴소아 동의 성별을 施設種別로 보면, 교호시설과 직업보도시설은 男子가 각각 95.0%와 93.4%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에 자립지원시설은 女子가 71.4%로 絶對多數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영아시설, 육아시설, 영·육아시설, 일시보호시설 등은 男子가 女子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表 5-10 참조).

〈表 5-10〉施設種類別 退所兒童의 性別

(單位: %)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يا <u>ا</u>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계
남자	55.4	55.7	59.1	93.4	28.6	51.9	95.0	60.0
여자	44.6	44.2	40.9	6.6	71.4	48.1	5.0	39.9
무응답	-	0.1	-	-	-	-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757)	(2,272)	(450)	(152)	(42)	(1,189)	(560)	(5,422)

退所兒童들의 年齡分布를 보면 <表 5-11>과 같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들의 전체 평균 연령은 10.8세였고, 이들 退所兒童들의 年齡分布를 보면, 15세에서 19세 사이가 3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4세 이하가 29.3%였다. 이를 施設種別로 보면, 자립지원시설에서 退所한 兒童들의 평균 연령이 21.9세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평균 연령 17.1세인 직업보도시설, 16.5세인 교호시설, 15.5세인 育兒施設 등의 순이었으며, 일시보호시설의 경우는 平均 年齡이 2.6세로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 시설종별로 평균 연령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들 施設들의 設立目的과 施設入所年齡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表 5-11〉施設種類別 退所兒童의 年齢

(單位: %, 歲)

							•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계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711
4세 이하	68.3	3.6	17.1	-	-	76.1	-	29.3
5 ~ 9세	20.3	12.4	9.6	-	-	13.2	0.4	11.8
10 ~ 14세	7.9	13.9	63.1	5.5	-	8.6	10.5	15.3
15 ~ 19세	3.5	54.2	8.7	86.3	5.7	1.9	83.0	35.3
20세 이상	-	15.9	1.5	8.2	94.3	0.2	6.1	8.3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757)	(2,245)	(450)	(152)	(35)	(1,189)	(560)	(5,382)
평 균	4.0	15.5	10.7	17.1	21.9	2.6	16.5	10.8

註: 1) 무응답 40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시설종별로 退所兒童들의 年齡分布를 살펴보면, 영아시설과 일시보호시설은 4세 이하가 각각 68.3%와 76.1%로 가장 많았고, 육아시설, 직업보도시설과 교호시설 등은 15세에서 19세 사이가 각각 54.2%, 86.3%와 83.0%로 가장 많았으며, 嬰·育兒施設은 10세에서 14세 사이가 63.1%로, 그리고 자립지원시설은 20세 이상이 94.3%로 각각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退所兒童들의 學歷을 보면 <表 5-12>와 같다. 퇴소아동들의 학력은 미취학이 3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高等學校(25.5%), 初等學校(17.5%), 中學校(15.8%), 專門大 以上(1.2%)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영아시설과 일시보호시설은 시설의 특성상 미취학이 각각 87.6%와 85.1%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육아시설은 高等學校 學歷이 54.5%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영·육아시설은 초등학교 학력이 62.4%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직업보도시설과 교호시설은 中學校 學歷이 각각 66.4%와 63.6%로 가장 많았고, 자립지원시설은 고등학교 학력이 73.8%로 絶對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5-12〉施設種類別 退所兒童의 學歷

								1 124 70)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J]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계
미취학	87.6	9.5	33.3	0.7	-	85.1	2.7	37.9
초등학교	3.8	15.7	62.4	21.1	2.4	11.5	20.0	17.5
중학교	0.8	16.4	0.7	66.4	4.8	1.1	63.6	15.8
고등학교	-	54.5	3.1	11.8	73.8	0.4	13.2	25.5
전문대 이상	-	2.5	0.5	-	14.3	-	0.2	1.2
기타	7.8	1.4	-	-	4.7	1.9	0.3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757)	(2,272)	(450)	(152)	(42)	(1,189)	(560)	(5,422)

2. 退所兒童의 收容期間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退所한 兒童들은 입소하여 퇴소할때까지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수용되어 있었는 지를 알아본 바는 <表 5-13>과같다. 兒童福祉 收容施設에 수용되어 있다가 퇴소한 아동들은 전체평균 약 4년인 48.9개월 동안 수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退所兒童들의 收容期間의 分布를 보면, 수용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가 6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수용기간이 9년에서 12년 사이인 경우로 12.0%였으며, 15년 이상 收容되어 있었던 경우는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平均 收容期間이 가장 긴 경우는 육아시설 로서 평균 93.6개월이었고, 그 다음이 영·육아시설(54.7개월), 자립지 원시설(33.5개월), 직업보도시설(27.2개월), 영아시설(15.3개월), 교호시 설(11.2개월)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一時保護施設의 경우는 평균 4.5개월 정도 수용되어 있다가 退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 한 各 施設別 收容期間의 差異는 시설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서로간에 단순 比較하기는 곤란한 것이다.

各 施設種別 收容期間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시보호시설의 경

우는 84.9%가 수용기간이 6개월 이하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교호시설과 영아시설도 收容期間이 6개월 이하인 경우가 각각 65.0%와 51.3%로 나타나 과반수를 넘었으며, 직업보도시설의 경우는 수용기간이 7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4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收容期間이 1년에서 5년 사이인 경우가 40.1%였다. 육아시설의 경우는 수용기간이 10년에서 15년 사이가 31.8%로 가장 많았으며, 收容期間이 15년 이상인 경우가 5.2%로 나타나 長期間 收容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5-13〉施設種類別 退所兒童의 收容期間

(單位: %, 個月)

							(1:2	/v, IEI/J/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계
6개월 이하	51.3	10.6	19.8	5.9	-	84.9	65.0	38.9
7 ~ 12개월	10.2	4.9	14.0	46.7	7.1	9.8	17.3	10.0
1 ~ 5년	34.8	16.7	26.4	40.1	92.9	4.5	15.2	18.4
5 ~ 10년	3.4	30.8	21.8	4.6	-	0.5	2.5	15.6
10 ~ 15년	0.3	31.8	17.8	1.3	-	0.3	-	14.9
15년 이상	-	5.2	0.2	1.4	-	-	-	2.2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742)	(2,245)	(450)	(152)	(42)	(1,189)	(560)	(5,382)
평 균	15.3	93.6	54.7	27.2	33.5	4.5	11.2	48.9

註: 1) 무응답 42건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3. 退所兒童의 退所事由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退所하는 兒童들의 退所事由를 보면, 연고자 인계로 인한 경우가 3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延長兒 退所 (16.6%), 入養·委託(16.0%), 他施設 轉園(15.5%), 無斷退所(6.7%) 등이었 고, 특히 死亡으로 인하여 퇴소하는 경우도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영아시설과 교호시설은 緣故者 引繼로 인하

여 퇴소한 경우가 각각 42.0%와 72.3%로 가장 주요한 퇴소사유였고, 영·육아시설은 他施設 轉園으로 인한 경우가 64.2%로, 일시보호시설은 입양·위탁으로 인한 경우가 57.7%로 나타나 각각 가장 主要한 退所事由로 나타났다. 자립지원시설은 延長兒 退所로 인한 경우가 47.6%로 가장 주요한 퇴소사유였다. 그리고 육아시설의 경우에는 主要 退所事由가 연장아 퇴소(37.4%)와 연고자 인계(3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退所兒童들의 主要 退所事由가 약간씩 차이를 나타냈다.

〈表 5-14〉施設種類別 退所兒童의 退所事由

(單位: %)

								1 1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계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Al
타시설전원	27.1	4.0	64.2	-	-	20.3	2.3	15.5
연장아퇴소	0.1	37.4	2.2	-	47.6	0.2	2.7	16.6
연고자인계	42.0	36.2	25.3	27.0	2.4	17.9	72.3	35.3
무단퇴소	6.3	9.5	2.7	10.5	-	1.9	8.9	6.7
입양·위탁	19.7	0.4	4.9	-	-	57.7	-	16.0
사망	2.2	0.4	0.7	-	-	1.7	0.4	0.9
기타	-	11.1	-	61.8	50.0	0.2	10.9	8.0
무응답	2.6	1.0	-	0.7	-	0.1	2.5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757)	(2,272)	(450)	(152)	(42)	(1,189)	(560)	(5,422)

4. 退所兒童의 就業與否 및 職種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지난 1년간 退所한 兒童들의 就業與否를 알아본 바, 退所兒童들중 취업을 한 경우는 24.6%였고, 비취업이 32.8% 였으며, 취업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42.6%였다. 이처럼 就業率이 낮은 이유는 만 18세 이상으로 인하여 퇴소한 경우보다는 他施設轉園, 緣故者 引繼, 入養·委託, 無斷退所 등으로 인하여 퇴소한 경우

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취업여부를 사실상 파악할 수도 없고, 취업연령전에 兒童福祉 收容施設에서 퇴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퇴소아동들의 취업여부를 시설종별로 살펴보면, 영아시설의 경우는 就業한 경우가 전혀 없는 반면에 自立支援施設의 경우에는 100.0%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보도시설의 경우에는 71.1%가 就業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육아시설의 경우에는 48.7%가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호시설, 영·육아시설과 일시보호시설은 각각 10.2%, 3.3%, 0.4% 등이 就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施設의 設立目的과 特性에 따라 퇴소아동들의 就業率이 큰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각 시설에서 퇴소한 兒童들의 年齡이나 退所事由가상이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表 5-15〉施設種類別 退所兒童의 就業與否 및 職種

(單位: %)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교호 계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취업여부 취업 71.1 100.0 0.4 10.2 24.6 48.7 3.3 비취업 41.3 21.0 92.0 12.5 20.1 55.9 32.8 무응답 58.7 30.3 4.7 16.4 79.5 33.9 4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757)(2,272)(450)(152)(42) (1,189)(560)(5,422)직종 전문기술직 20.0 15.7 13.0 21.4 3.5 15.2 사무직 13.1 6.7 1.9 38.1 12.3 도소매판매 4.9 6.7 11.9 4.5 음식·숙박업 6.5 13.3 0.9 5.6 기타서비스직 14.9 8.8 20.0 4.6 14.3 13.8 농업근로자 0.8 0.7 기능공 24.1 26.7 79.6 11.9 60.0 75.4 30.6 단순노무직 12.3 15.2 17.6 2.4 무응답 40.0 2.4 6.6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8)(42)(N)(1,106)(15) (5) (57) (1,333)

이처럼 退所한 兒童中 就業兒童들이 과연 어떠한 직종에 취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들이 가장 많이 취직하는 職種은 30.6%인 기능공이었고, 그 다음이 單純勞務職(15.2%), 전문기술직(15.2%), 기타서비스직(13.8%), 사무직(12.3%), 음식·숙박업(5.6%), 도소매판매(4.5%), 농업근로자(0.7%) 등의 순이었다.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自立支援施設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모두 기능공이 가장 많아 육아시설(24.1%), 영·육아시설(26.7%), 직업보도시설(79.6%), 일시보호시설(60.0%), 교호시설(75.4%) 등이었으나, 특히 직업보도시설과 교호시설의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직업보도시설과 교호시설이 正常的인 學校過程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職業敎育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립지원시설의 경우에는 事務職이 3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문기술직(21.4%), 기타 서비스직(14.3%), 기능공과 도소매판매(11.9%), 단순노무직(2.4%) 등의 순으로 나타나 다른 시설들에서 退所한 兒童들의 職種과는 약간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退所하는 兒童들은 거처를 확보하기 위해 宿食이제공되는 직종인 기능공,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등을 選好하는 傾向이 있으므로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 事務職이나 專門・技術職의 경우에는 숙식의 문제로 인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退所兒童들 보다는 더 많은 아동들이 自立支援施設에 입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退所兒童의 住居類型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퇴소한 兒童들의 退所後 住居類型을 보면 父母집이 2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會社寄宿舍(10.0%), 양부모 집(9.2%), 共同으로 自炊(5.9%), 단독으로 자취(5.1%), 자립생활관(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영아시설, 육아시설, 교호시설, 직업보도시설 등은 退所後 父母집으로 간 경우가 각각 26.9%, 20.8%, 53.8%, 1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육아시설은 退所兒童들의 住居類型에 무응답한 경우가 93.3%에 달하였으나, 응답자중에서는 3.6%인부모집이 역시 가장 많았다. 일시보호시설의 경우는 이들 기관이 주로 入養機關인 관계로 인하여 30.7%인 養父母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립지원시설은 퇴소아동들이 이미 20세를 넘은 성인인 까닭에 단독으로 자취(42.9%)하는 경우와 共同으로 自炊(23.8%)하는 경우가 전체중 66.7%에 달하고 있었다.

〈表 5-16〉施設種類別 退所兒童의 住居類型

(單位: %)

	영아	육아	영육아	직업보	자립지	일시보		
	시설	시설	시설	도시설	원시설	호시설	시설	계
자취(단독)	-	10.2	1.6	11.8	42.9	-	-	5.1
자취(공동)	4.0	11.9	0.4	2.0	23.8	0.1	0.9	5.9
부모집	26.9	20.8	3.6	17.8	4.8	5.8	53.8	20.1
양부모집	15.1	0.7	0.2	1.3	-	30.7	-	9.2
회사기숙사	-	20.2	0.9	4.6	-	1.3	10.5	10.0
자립생활관	-	2.0	-	2.6	16.7	-	-	1.1
기타	16.9	7.1	-	1.3	2.4	27.1	5.7	11.9
무응답	37.1	27.1	93.3	58.6	9.4	35.0	29.1	3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757)	(2,272)	(450)	(152)	(42)	(1,189)	(560)	(5,422)

第6章 主要結果要約 및 政策提言

第1節 主要結果 要約

本 研究의 目的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兒童福祉 收容施設과 동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全數調査를 실시하여 시설의 운영 현황과 수용되어 있는 아동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아동복지 수용시 설에 대한 運營改善 및 收容兒童의 福祉增進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調查對象은 아동복지 수용시설 271개소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이며, 調查內容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현황 및 아동의 의식 및 개인사항에 대한 것이다. 調查期間은 1997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15일간이며, 1997년 3월 31일을 조사기준일로 하였다. 主要 調查內容은 먼저 아동복지 수용시설 현황으로서 수입, 지출 등재정실태, 시설 규모, 거실수, 방수 등 시설·설비의 규모 및 상태, 정원, 현원, 입·퇴소 현황 등 收容兒童 現況, 施設 從事者 現況과 기타管理 運營 現況에 대한 것이다. 또한 아동개인조사는 개인의 특성을파악하기 위하여 성, 연령, 교육정도 등 兒童의 一般事項, 입소당시의연령,원인,부모의 생존여부 등 입소당시의 상황, 가족 및 친척의 시설 방문 등 家族事項, 그리고 고등학생 이상인 경우 퇴소후 직업 등將來希望事項에 대해 조사하였다.

主要 調査結果는 다음과 같다.

1. 調査現況

1997년 3월 31일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兒童福祉 收容施設은 총

271개로서, 이 가운데 육아시설이 77.9%인 211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이 嬰兒施設로서 21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施設에 收容되어 있는 兒童은 총 16,620명으로서 육아시설에 12,875명(77.5%), 영육아시설 1,343명(8.1%), 영아시설 1,273명(7.7%)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2. 定員과 現員

아동복지 수용시설 전체의 平均 定員은 10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平均 定員이 가장 많은 시설은 280명인 영·육아시설이었고, 그 다음이 101명인 육아시설, 97명인 교호시설, 89명인 일시보호시설 등의순이었다. 定員의 分布를 보면, 정원이 60명에서 89명 사이인 시설이 100개 시설로 전체의 37.0%였고, 정원이 90명에서 119명 사이는 29.6%인 80개 시설이었으며, 比較的 小規模施設인 60명 미만의 정원을 가진 시설이 33개 시설(12.2%)인 반면에 150명 이상의 大型施設도 23개 시설(8.5%)이었다.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平均 現員은 6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현원이 가장 많은 시설은 192명인 영·육아시설이며, 육아시설의 경우는 평균 현원이 64명으로 嬰·育兒施設 다음으로 많았으며, 現員의 分布를 보면, 현원이 30명에서 59명 사이인 경우가 132개 시설로 전체의 48.9%였고, 60명에서 89명 사이인 경우는 100개 시설로 전체의 37.0%인 것으로 나타났다. 現員이 30명 미만인 시설이 18개 시설인반면, 90명 이상인 시설은 20개 시설이었다.

定員 對比 現員의 比率을 보면, 전체 시설의 평균은 64.7%로서 이는 일본의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1995년도 收容率 76.7%(후생성, 1995: 21)보다 더 낮은 수용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종별 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을 보면, 嬰·育兒施設이 74.3%로 가장 수용률이 높고, 직업보도시설이 49.5%로 가장 낮은 수용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처럼 낮은

수용률로 인하여 施設의 一部가 遊休施設化되고 있으며, 따라서 施設 運營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施設長이나 總務가 판단하고 있는 당해 施設의 適正兒童數는 평균 7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수용하고 있는 평균 현원 64명보다는 많고, 평균 정원 101명 보다는 적은 것으로서 現在 兒童福祉 收容施 設의 遊休空間이 많다는 점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법정 정원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동 1인당 소요면적의 現實化를 통한 定員의 再調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施設運營現況

아동복지 수용시설 全體의 平均 收入은 3억 9천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종별로 보면, 영·육아시설이 약 11억 5천만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영·육아시설중 한 施設의 總收入이 약 59억 2천4백만원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 다음이 약 10억 8천만원인 一時保護施設, 약 5억 천만원인 교호시설, 약 4억 2천만원인 직업보도시설, 약 4억원인 영아시설, 약 3억 6천만원인 育兒施設, 약 6천만원인자립지원시설 등의 순으로 총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總收入分布를 보면, 3억에서 4억 미만인 시설이 전체 267개 시설중 88개 시설로약 33.0%였고, 약 27.0%인 72개 시설은 2억에서 3억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억 이상인 경우는 총 37개 시설로 전체의 약 13.9%이었다. 總收入을 收入源別로 나누어 보면, 전체 수입중 政府補助金이71.5%, 민간지원금이 14.2%, 自體收入金이 13.5%, 그리고 외원보조금은 0.8%이었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支出內容을 살펴보면, 수용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直接費가 31.4%였고, 間接費가 62.5%, 그리고 이월금이

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들의 의식주에 지출되는 것은 19.5%였고, 아동들의 자립을 위한 情緒 및 能力開發을 위해 투입되는 教育訓鍊費는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人件費가 차지하는 비중이 40.3%로 나타나 시설운영을 위한 지출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施設補强 및 維持費로 10.9%를 지출하였다.

아동 1인당 평균 지출액은 696만원이었으며, 兒童 1人當 支出額이 4백만원에서 6백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 265개 시설중 47.2%인 125 개로 가장 많았고, 4백만원 미만인 경우가 22개 시설인 반면, 1천만원이상인 시설도 14개 시설이었다.

總 271個 施設中 무응답 4개시설을 제외한 267개 시설중 약 57.7% 인 154개 시설이 '50년대에 설치되었고, 89.1%인 238개 시설이 '69년 이전에 설립되어 大部分의 施設이 설립후 3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建物棟數는 평균 4개동이며, 2개동 이하인 경우가 전체 268개 시설중 101개 시설로 약 37.7%인 반면에 7개동 이상인 경우는 59개 시설로 약 22.0%였다. 兒童福祉 收容施設에서 중·개축이 필요한 건물동수는 평균 1.8개로 나타났다. 시설종별로 보면, 施設의 老朽度가 상대적으로 많은 육아시설이 增·改築이 필요한 평균 건물동수가 1.9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6개인 영아시설과 영·육아시설의 순이었다.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現 住居形態는 전체 271개 시설중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및 공동취사하는 경우가 전체의 48.0%인 130개 시설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4.3%인 120개 시설이 集團寄宿舍 形態, 小宿舍制의 형태인 경우는 겨우 5.5%인 15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施設形態로서는 전체 268개 시설중 45.9%인 123개 시설이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및 공동취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응 답하여 가장 많았고, 26.1%인 70개 시설이 小宿舍의 形態를, 19.4%인 52개 시설은 그룹홈을 각각 바람직한 주거형태로 보고 있었다. 集團 寄宿舍가 바람직한 住居形態라고 응답한 경우는 7.5%인 20개 시설로 나타나 대부분의 시설장들은 집단기숙사가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바람 직한 주거형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現 住居形態와 바람직한 住居形態를 비교해 보면 이 두가지 형태가 똑같이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및 공동취사' 하는 경우가 전체시설의 26.5%인 71개 시설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현 주거형태는 集團 寄宿舍이나 바람직한 주거형태는 '몇 개의 家庭形態로 分離 및 共同炊事'하는 경우로 전체의 18.7%인 50개 시설이었다.

4. 施設에 대한 認識 및 態度(施設長)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並設保育施設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전체 249개 시설중 52.2%인 130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운데 주로 설치하고 싶은 보육시설은 放課後 保育施設(36개 시설), 영아(32개 시설) 및 육아(32개 시설) 전용 보육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障碍兒 專用保育施設도 19개 시설에서 설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을 다른 福祉施設로 轉換할 意向이 있는 경우는 전체 259개 시설중 39.4%인 102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종 별로 보면, 嬰兒施設은 전체 20개 시설중 6개 시설, 育兒施設은 전체 203개 시설중 41.9%인 85개 시설, 영·육아시설과 교호시설은 각각 1개 시설, 職業補導施設과 자립지원시설은 각각 2개 시설, 그리고 일시보호시설은 과반수인 5개 시설 등이 다른 福祉施設로 轉換할 意向을 갖고 있었다.

兒童福祉 收容施設에서 다른 복지시설로 전환할 의향을 가진 시설 들이 선호하는 시설은 어린이집이 가장 많아 전체 102개 시설중 23.5%인 24개 시설이었고, 그 다음이 老人福祉施設로서 전체의 21.6% 인 22개 시설이었다. 특히 육아시설의 경우 다른 복지시설로 전환하 고자 하는 의향을 가진 시설이 85개 시설이나 되고 있었다.

兒童福祉 收容施設 전체 267개 시설중 시설을 이전할 의사를 가진 시설은 22.5%인 60개 시설이었으며, 移轉時 要求事項中 가장 많은 것이 移轉費用支援이었고, 그 다음이 開發制限地域 緩和, 세제상의 혜택, 지역주민의 시설입주 허용 등이었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施設運營을 中斷할 意思가 있는 시설은 전체 257개 시설중 5.4%인 14개 시설이었으며, 육아시설 가운데 10개 시설이 운영을 中斷할 意思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지원법인으로 轉向할 意向을 가진 施設은 전체 261개 시설중 23.0%인 60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영아시설과 일시보호시설이 각각 2개 시설, 육아시설이 53개 시설, 직업보도시설, 자립지원시설, 교호시설은 각각 1개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轉換意向이 있는 시설 60개중 34개 시설이 老人福祉施設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전향하고자 하였고, 14개 시설은 障碍人福祉施設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轉向하고자 하였다.

5. 收容兒童의 現況

收容兒童의 성·연령·교육수준 등 一般特性을 보면, 남자가 55.1%로 44.9%인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兒童들의 平均 年齡은 12세였으며, 이를 시설 종별로 보면, 자립지원시설이 21.8세로 가장 높고, 직업보도시설 16.2세, 교호시설 15.1세, 육아시설 13.2세, 영·육아시설 8.9세, 一時保護施 設 4세, 그리고 영아시설 2.6세의 순이었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兒童의 敎育程度別 分布를 보면, 초등학교

인 경우가 31.2%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가 25.6%, 고등학교가 24.5%, 미취학이 15.8%, 기타가 2.9%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宗敎는 기독교가 76.4%로 絶對多數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무교로 13.5%였으며, 천주교 7.0%, 불교 2.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入所한 兒童의 入所當時 理由를 보면, 부모가 모두 死亡한 경우보다는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입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父母가 모두 死亡한 孤兒인 경우는 6.2%에 불과한 반면,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離婚, 再婚, 行方不明 등의 요인으로 입소한 경우가 42.3%로 가장 많고, 부 또는 모 가운데 1인이 생존해 있는 경우는 19.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父母의 生存與否를 알 수 없으나, 생존이 예상되는 棄兒나 迷兒의 이유로 입소한 경우는 27.8%에 이르고 있다.

현재까지 父母가 모두 生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 兒童은 28.9%이며, 아버지만 생존해 있는 경우는 8.1%, 어머니만 생존해 있는 경우는 14.7%인 반면, 父母 모두 死亡한 것으로 파악된 兒童은 6.5%이었다. 입소당시와는 달리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부모의 현재 생존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미상)가 41.8%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父母 生存與否가 未詳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생존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부모의 생존여부를 파악해 보면, 父母가 모두 死亡한 경우가 11.2%이며, 나머지 88.8%는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로 日本의 養護施設 收容兒童의 85%가 부모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부모중 어느 한 쪽이라도 생존한 경우에 父 또는 母의 經濟生活水 準을 모르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 51.4%였고, 그들의 부 또는 모의 경제생활수준이 下인 경우가 34.2%였으며, 經濟生活水準이 中인 경우 는 13.4%로 나타났다. 이중 "모르겠다"를 제외할 경우 약 2/3인 66.5% 가 생존 父 또는 母의 生活水準이 下라고 보고하고 있었다.

6. 收容兒童의 將來問題(高等學校 在學 以上)

자신들이 希望하는 最終學校를 고등학교로 생각하는 경우가 54.0%로 과반수를 넘었고, 전문대 이상을 원하는 경우는 46.0%로 나타났다. 高等學校까지만 다니기를 원하는 이유는 첫째, 53.8%가 職場을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獨立生活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경우로 19.4%였으며, 공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17.7%였으며, 周邊環境이 안되어서 高等學校까지만 다니겠다는 경우는 5.6%였다.

한편 專門大 以上을 다니고 싶어하는 理由를 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한 경우로 67.2%였고, 그 다음이 공부를 희망하기 때문이라는 경우로 15.4%였으며, 社會的 名譽를 위한 경우는 7.6%이었다.

施設退所時 가장 걱정되는 것은 自立하는 것으로서 전체의 41.8%였고, 그 다음이 施設出身에 대한 社會的 偏見 23.4%, 취직기회가 없을까 봐 11.3%, 살 거처가 없는 점 10.4% 등이었으며, 걱정거리가 없다는 경우는 11.6%였다.

고등학교 재학 이상 아동들의 將來 希望職業은 전문·기술직이 3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事務職(19.4%), 판매서비스직(17.6%), 기능 공(9.0%), 行政管理職(4.6%), 단순노무직(2.2%), 농업근로자(1.0%) 등의 순이었다.

退所後 住居問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퇴소시점에 가봐야 안다고 하는 경우가 3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會社寄宿舍(17.0%), 가족이나 친척집(15.0%), 선배나 동기들과 방을 마련(9.3%), 자립생활관(9.2%), 住宅傳貰金으로 마련(7.2%), 직장에서 해결

(5.0%) 등의 순이었다.

시설에서 退所한 후에 自立生活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고등학교 재학 이상인 아동들중 62.0%였고, 나머지 38.0%는 시설에서 退所한 然後에 自立生活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퇴소후 지급되는 自立支援金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경우가 56.4%였고, 조금알고 있다는 경우가 35.8%로 나타나 자립지원금에 대해 아는 경우는 92.2%였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高等學校 在學 以上인 아동들은 그들이 시설에서 퇴소시 받게되는 자립지원금을 주택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경우가 3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定期積金(29.6%), 자기개발비(21.8%), 가재도구(8.8%), 緣故者 支援(1.1%) 등의순이었다.

7. 從事者 現況

兒童福祉 收容施設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총 3,129명으로 시설당 평균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施設當 從事者數를 시설종별로 구분해 보면, 시설당 평균 34명인 영·육아시설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영아시설로서 평균 18명이며, 그 다음이 施設當 平均 17명인 교호시설, 시설당 평균 16명인 일시보호시설, 시설당 평균 12명인 직업보도시설, 施設當 平均 10명인 육아시설, 그리고 시설당 평균 3명인 자립지원시설 등의 순이었다. 從事者 한 사람이 평균 5.7명의 아동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육아시설의 경우 從事者 1人當 兒童數는 평균 12.3명으로 다른 종류의 시설보다 많았고, 육아시설의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평균 6명을 保護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保育士는 총 1,634명으로 각 시설당 약 6명이 있었다. 生活指導員과 職業訓鍊敎師는 각각 86명과 45명으로 전체 271개 시설의 31.7%와 16.6% 정도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相談要員은 30개 시설에만 있으며, 醫師와 營養士는 전체 아동복지 수용시설중 단지 7개 시설에만 근무하고 있으며, 看護士나 看護助務士는 전체 아동복지 수용시설 271개의 52.8%인 143개 시설에 있었다. 취사부는 289명으로 各 施設當 약 1.1명이 있으며, 세탁부는 전체 271개 시설의 45.4%인 123개 시설에 근무하고 있었다. 한편, 경리는 14개 시설에만 근무하고 있으며, 警備員과 補助員은 각각 36개 시설과 28개 시설에만 있었다.

兒童福祉 收容施設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3,129명중 여자가 75.6%였고, 남자는 23.0%였다. 이를 시설종별로 보면, 男子가 女子 보다 많은 경우는 직업보도시설(54.2%), 자립지원시설(60.0%), 교호시설(59.1%) 등이었고, 나머지 영아시설, 육아시설, 영·육아시설, 일시보호시설 등은 여자가 75.1%에서 89.7%사이로 남자 보다 월등히 많았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종사하는 從事者들의 平均 年齡은 39.3세였다. 이를 연령분포로 보면, 29세 이하인 경우가 3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4.0%인 30대 였으며, 60세 이상 8.3%이며, 70세 이상의 高年齡도 2.9%나 되었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종사하는 從事者들은 高等學校 卒業이 47.4%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학교 이상(26.1%), 중학교 이하(19.7%), 專門大學(6.0%) 등의 순이었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3,129명중 政府補助를 받는 경우가 87.9%였으며, 10.0%는 정부보조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施設種別로 보면, 정부보조를 받는 경우가 영아시설 (87.5%), 육아시설(91.3%), 영·육아시설(96.7%), 職業補導施設(88.9%), 자립지원시설(80.0%), 일시보호시설(37.7%), 교호시설(73.1%) 등으로 나타나 嬰·育兒施設이 가장 많이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반면에 일시보호시설이 가장 적게 政府補助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중 해당직종과 관련한 資格證을 所持한 比率은 32.4%였고, 67.0%는 자격증이 없었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종사하는 從事者들의 平均 勤務年數는 약 8년인 97.4개월이었다. 이를 百分率 分布로 보면 勤務年數가 3년 이하인 경우가 4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년에서 6년 사이인 경우가 14.8%로 많았으며, 21년 이상 長期 勤續한 경우도 10.3%에 달했다.

8. 退所兒童 現況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지난 1년간 退所한 退所兒童들은 전체 5,422명이었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5,422명중 60.0% 가 男子였고, 女子는 39.9%였다. 시설종별로 보면, 교호시설과 직업보도시설은 남자가 각각 95.0%와 93.4%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에 自立支援施設은 여자가 71.4%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영아시설, 육아시설, 영·육아시설, 일시보호시설 등은 男子가 女子보다 약간 많았다.

퇴소한 아동들의 全體 平均 年齡은 10.8세였고, 15세에서 19세 사이가 3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4세 이하가 29.3%였다. 시설종 별로 보면, 자립지원시설에서 退所한 兒童들의 平均 年齡이 21.9세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평균 연령 17.1세인 직업보도시설, 16.5세인 교호시설, 15.5세인 육아시설 등의 순이었으며, 일시보호시설의 경우는 平均 年齡이 2.6세로 가장 적었다.

退所兒童들의 學歷은 미취학이 3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고 등학교(25.5%), 초등학교(17.5%), 중학교(15.8%), 전문대 이상(1.2%) 등 의 순이었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가 退所한 兒童들은 전체 평균 약 4년인 48.9개월 동안 수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退 所兒童들의 收容期間의 分布를 보면, 수용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가 6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수용기간이 9년에서 12년 사이인 경우로 12.0%였으며, 15년 이상 收容되어 있었던 경우는 2.2%였다.

退所事由를 보면, 緣故者 引繼로 인한 경우가 3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연장아 퇴소(16.6%), 입양·위탁(16.0%), 타시설 전원(15.5%), 무단퇴소(6.7%) 등이었고, 특히 死亡으로 인하여 퇴소하는 경우도 0.9%였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지난 1년간 退所한 兒童들의 就業與否를 알아본 바, 퇴소아동들중 취업을 한 경우는 24.6%였고, 비취업이 32.8% 였으며, 就業與否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42.6%였다. 퇴소한 아동중취업아동들의 취업직종은 30.6%인 기능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單純勞務職(15.2%), 전문기술직(15.2%), 기타 서비스직(13.8%), 事務職(12.3%), 음식·숙박업(5.6%), 도소매판매(4.5%), 농업근로자(0.7%) 등의순이었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들의 退所後 住居類型을 보면 父母집이 2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회사기숙사(10.0%), 양부모 집(9.2%), 공동으로 자취(5.9%), 單獨으로 自炊(5.1%), 자립생활관(1.1%) 등의 순이었다.

第2節 政策提言

1.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機能 再定立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수용률은 64.7%로서 매우 낮다. 과거와 같은 진정한 의미의 고아는 전체의 6.2%에 불과하고 수용아동중 부모중 어 느 한 쪽이라도 생존한 경우가 61.6%로서 收容兒童의 特性이 과거와 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시설중 39.4%가 어린이집, 老人福 祉施設,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전환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短期保 護(一時保護)事業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이 과반수를 넘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定員 對比 現員의 比率을 볼 때,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용시설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외에 利用施 設의 機能을 추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이혼, 가출,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一時的으로 兒童을 행복 하고 건전하게 養育과 敎育시키기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부 터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때 필요한 書間 및 短期保護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 수용시설은 일시보호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여 地域社會 兒童福 祉 중심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보호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영·육아시설의 수요 감소와 心 理・情緒的・身體的 治療 및 教育, 교화 및 선도 등 특수보호 목적의 전문적 시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旣存施設의 機能을 재정립하여 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을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부응 하여 수용위주의 기능에서 탈피하여 地域社會의 兒童福祉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施設法人의 경우 적절한 가정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法人의 관리하에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룹홈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특히 少年少女家長世帶 등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주관하는 그룹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要保護兒童 일시보호제도의 도입 등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기능을 강화하여 이용시설로서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 정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는 兒童을 委託保護하여 아동유기를 예방하 고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기존의 저소득층위주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施設의 轉換에 대한 시설장의 견해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시설아동의 감소 등으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政府의 財政支援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타 목적시설로의 전환의향이 있는 시설은 과감하게 전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單一目的施設制度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제도의 도입 등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이때 施設의 統廢合이나 施設運營의 中斷時에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인조항 등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시설장의 사유재산을 법인화하였던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볼 때, 施設運營의 中斷에 따른 응분의보상 등 재산권의 처분문제도 이제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때가 도래한 것으로 생각된다(장고봉사회복지회관, 1990).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 시설은 지역별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것이 요구되므로 施設의 整備 및 擴充은 지역별 복지욕구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地域別 福祉欲求把握을 위한調査·研究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大規模 集團寄宿舍에서 小規模의 小宿舍 施設로 轉換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施設長이나 總務중 집단기숙사 주거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겨우 7.5%에 불과하여 集團寄宿舍는 결코 바람직한 住居形態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및 공동취사하는 형태나 소숙사제, 그룹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에 대한 시각을 단순한 수용 및 보호를목적으로 하는 大規模 集團收容概念에서 수용자 개인의 개성과 능력

을 개발할 수 있는 소규모의 가정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施設內 兒童과 保育士로 세대를 형성하고 가정생활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세대구성은 施設 兒童의 年齡이나 성격을 고려하여야 하고 보육사가 어머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兒童의 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SOS 마을처럼 小規模 家庭의 形態로 부모의 역할을 하는 保育士와 소수의 아동들로 이루어진 그룹홈형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정생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兒童의 父母 및 家族이나 친구를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하여 접촉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社會適應能力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기존 시설을 소숙사로 전환할 경우 이에 따른 施設의 再建築費用과 小宿舍制度 도입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 施設運營의 開放 및 地域社會 參與 誘導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수용시설을 개방함으로써 地域社會의 重要施設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보호아동의 부모 및 가족, 친구 등 사회인들과의 相互接觸이 가능하도록 社會適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 후원자 및 결연자 발굴및 관리, 관할 지역내 각종 문화·체육시설 및 其他 福祉施設의 활용등 지역사회내에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조직화 내지 체계화하여 地域社會의 參與를 誘導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缺損家庭, 脆弱家庭의 兒童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지역내 공공 및 민간방송국, 신문·잡지 등을 통하여 시설의 설비, 장비 및 서 비스 등 施設의 活動을 弘報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나 친척, 이웃 및 기타 지역사회 주민들의 시설아동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단순한 慈善이나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心身이 건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 도록 施設兒童에 대한 認識의 變化를 誘導해야 할 것이다.

4. 兒童福祉 收容施設 入所對象의 現實化

수용시설의 입소자격을 현행 無依無托하여야 한다는 資格基準을 완화하여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돌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입소가 가능하도록 入所資格條件을 現實化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나 부양능력자가 없거나 또는 이들의 생활수준요인 외에도 家出, 離婚, 再婚, 兒童虐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施設入所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와의 접촉을 양성화하면서, 부모와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家庭에 早期復歸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아동상담소와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자에 의해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던 入·退所 決定은 아동 및 가족의 상태에 근거 한 專門的 審査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설입소를 가능한 예 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入所資格基準을 現實化함으로써 입소자격의 비현실성에 따른 아동유기 등을 방지하고, 정원에 비해 현재 64% 정 도만 수용하고 있는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活用性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家族프로그램의 活性化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役割은 가족이 없는 아동, 또는 가족이 있어

도 아동 또는 그 가족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게 家庭을 代理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설보호는 家庭保護의 次善策이라는 입장에서 가족이 있는 아동들의 시설입소는 가능한 예방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一時的으로 施設保護가 제공되고 이들의 상황이 개선되면 가능한 조기에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施設入所 豫防과 早期 家庭復歸를 위해서는 아동의 입·퇴소 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에 대한 조치와 함께 가정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며, 또한 일단 시설에 入所한 兒童에 대해서는 가족과의 관계를 持續・强化시키는 多樣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시설아동의 조기 가정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家族과 兒童의 關係를 지속적으로 維持·强化시켜야 할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토·일요일이나 방학기간중 또는 수시로 외출·외박을 실시하며, 父母 또는 家族의 施設訪問을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족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가족이 있는 아동들의 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一時的으로 施設保護를 제공하 되 이들의 상황이 개선되면 가능한 조기에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家族解體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6.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專門化 및 專門人力 確保

아동복지 수용시설에 종사하는 從事者들중 해당직종 資格證을 소지한 경우가 전체중 32.4%에 불과하고, 근무년수도 3년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45.8%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從事者들의 學歷도 고등학교 이하가 전체의 67.1%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從事者들의 人件費가 타직종에 비해 相對的으로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므로 종사인력의 인건비를 상향조정하고 適正人力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從

事者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다한 업무량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從事者 人件費 支給基準과 配置基準의 개정이 필요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國內外 優秀施設의 見學 및 視察 등 기술교류제도를 마련하여 새로운 기술 도입은 물론 사기앙양책을 마련하고, 國內外 專門訓練機關이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훈련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關聯施設이나 機關과의 相互連繫網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退所兒童 管理體系 强化

收容兒童中 시설에서 퇴소한 연후에 自立生活館을 이용할 생각이 있는 경우가 약 1,342명이며, 아직 결정하지 못한 아동들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2,000명 수준은 되리라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自立生活館은 총 10개 시설에 총 167명이 수용되고 있어 이들 이용 희망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退所兒童들은 거처를 확보하기 위해 숙식이 제공되는 직종인 기능공, 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직, 단순노무직 등을 選好하는 傾向이 있으며, 자립지원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은 사무직, 전문·기술직 등에 보다 많이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설에서 退所한 兒童의 事後管理를 위한 자활지원센터의 확충 등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職場이나 居處가 불안정하거나 마련될 수 없을 경우 현재 18세까지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세 정도까지 延長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시설에서 거처와 숙식을 제공하거나 自活支援센터에 委託措置할 수 있게 制度的인 裝置를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해당시설이 분담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

여야 할 것이다.

退所兒童들이 시설에서 퇴소후 안정된 職業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 퇴소아동들 중에서 직업을 구하 지 못하는 경우에 입소시켜 敎育·訓練을 시키고, 就業斡旋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퇴소아동에 관한 직장, 거처 및 가족관계 등 個人의 環境調査資料는 관련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시설에서 작성 및 관리하고, 退所兒童과 施設이 有機的인 連繫關係를 맺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退所兒童들이 전문대학 이상을 다니는 경우에는 이들이 졸업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學費를 장기대부해주어 退所兒童들이 自立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8. 自立支援金의 現實化

현행 정부에서 지원하는 自立支援金은 평균 174만원으로 전체 271 개 시설중 67.9%인 184개 시설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自立支援金은 평균 713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施設長들이 認識하고 있다. 그리고 自立支援金을 住宅資金으로 사용하겠다는 아동들이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의 自立支援金으로는 현실적으로 住宅資金으로 활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보다 現實化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부산시의 경우 1998년도 施設退所者 2人을 기준으로 2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自立支援金이 退所兒童들을 위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9. 施設運營의 評價體系開發

정부는 시설운영평가 체계를 개발하여 施設의 運營成果를 비교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전국적으로 시설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標準評價模型을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중심으로 지역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評價指針을 開發해야 할 것이다. 시설운영평가결과는 정부의 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한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施設評價의 等級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제공이나 보호아동 배치시 근거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優秀施設에 대해서는 국내·외 시찰 및 연수를 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하는 등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施設間의 事業成果를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評價의 結果를 공개하여 施設運營改善과 保護對象者의「삶의 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국민복지기획단, 『「삶의 질」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 1995.
- 김광빈,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아동복지법 개정 대토론회』,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1998.
- 김기환, 『한국 아동정책의 당면과제』, 『21세기 한국의 아동정책』, 한국아동 단체협의회, 1997.
- 김미혜,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운영개선』,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 方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김영모외, 『한국아동복지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3.
- 김영자,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 대학교 사회과학개발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응석외, 『아동복지 수용시설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김현숙, 「사회변화에 따른 육아시설사업 개선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논문집』, 제20집, 1997.
- 김현용, 「사회변화와 아동복지」, 『현대사회와 아동』, 1997.
- 김현용, 「아동의 시설보호와 가정보호」, 『한국사회복지의 선택』, 나남출판, 1995.
- 노혜련, 「아동복지서비스」, 『현대사회와 아동』, 1997.
- 박용철, 『요보호아동 그룹홈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1998.
- 박태영, 「아동복지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22회 아동복지세미나, 한국아 동복지시설연합회, 1997.

- 변용찬, 「가족복지서비스 기능강화」,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변용찬·이상영·이상헌,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996.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지침』, 1996, 1998.
- 손의목, 『시설퇴소 연장아동들의 자립지원 방안』,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1993.
- 신현수, 「한국 아동정책의 현황과 과제」, 『21세기 한국의 아동정책』, 한국아 동단체협의회, 1997.
- 어윤배, 「21세기의 아동복지정책방향」, 제22회 아동복지세미나, 한국아동복지 시설연합회, 1997.
- 어윤배, 「아동복지시설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지역사회 아동복지센타 확대 방안」, 제1회 아동복지시설 총무세미나,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1996.
- 이배근, 「선진국의 아동정책과 우리의 과제」, 『21세기 한국의 아동정책』, 한 국아동단체협의회, 1997.
- 이배근, 「아동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1993.
- 이태수·함철호·이용교,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연구』, 인간과 복지, 1997.
- 장고봉사회복지회관, 『2000연대를 향한 한국 사회복지 총람』, 1990.
- 장인협, 『한국아동복지의 미래』,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1993.
- 장인협·오정수,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 전광현,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사회복지시설론』, 범론사, 1990.
- 전광현, 「일본의 아동복지법 개정방향」, 제22회 아동복지세미나, 한국아동복 지시설연합회, 1997.
- 정기원·오미연,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조남훈 외4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고』,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1997.
- 최영욱,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론』, 범론사, 1990.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 장기발전계획』, 1992.
- 木下茂幸,「日本兒童福祉施設の現況と課題」,第21回 兒童福祉세미나,韓國兒童福祉施設聯合會,1996.
- 本下茂幸,「日本兒童福祉施設の現況と發展方向」,第23回 兒童福祉세미나,韓國兒童福祉施設聯合會,1998.
- 全國社會福祉協議會、『社會福祉の動向』、1996.
- 全國社會福祉協議會·兒童福祉部,『平成8年度 兒童福祉關係資料集』, 1996.
- 厚生省, 『平成7年度 社會福祉施設等調査報告』, 1995.
- Gambrill, E. and Stein, T. J., *Controversial Issues in Child Welfare*, Allyn and Bacon, 1994.
- Kadushin, A. and Martin, J. A., Child Welfare Services,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8.
- Laird, J. and Hartman, A., A Handbook of Child Welfare, The Free Press, 1985.
- Lindsey, D., The Welfare of Children,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Pecora, P. J., Whittaker, J. K., and Maluccio, A. N., *The Child Welfare Challenge*, Aldine De Gruyter, 1992.
- UNICEF,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8.
- Zietz, D., Child Welfare: Principles and Methods, John Wiley & Sons, Inc., 1959.
- Zuckerman, E., Child Welfare, The Free Press, 1983.

附 錄

施設調査票 /

兒童個人調査票 /

시 설 조 사 표

조 사 표 번 호									
지	역		일	련번	호				

시설종류:	□ 1. 영아시설	□ 5. 자립지원시설
	□ 2. 육아시설	□ 6. 일시보호시설
	□ 3. 영육아 종합시설	□ 7. 교호시설
	□ 4. 직업보도시설	□ 8. 기타
기 관 명:		
소 재 지:	시 도——	구 시 군
전화번호:		
FAX 번호:		
작성일자:	1997년월일	

보 건 복 지 부

I. 재정 실태

* 1996년도 세입·세축 격산서 천부 인망

1. 수입 (1996년도 결산기준)

구 분	금	<u>ज</u> ्
정부보조금 : 국고보조, 지방비(시비, 도비, 군비)		천원
민간지원금 : 민간단체보조, 아동결연후원금, 기타 기부금		천원
외 원 보 조		천원
자체수입 : 법인보조, 수익사업, 기 타 ¹⁾		천원
합 계		천원

주: 1) 이월금, 이자수입, 바자회 수입 등 포함

2. 지출 (1996년도 결산기준)

(단위: 천원)

	항 목	정 부 보 조	기타 지원금 ¹⁾	합 계
	주식비			
	부식비			
	간식비			
직	피복비			
접	보건의료비			
비	연료비			
	교육·훈련비 ²⁾			
	기타직접비			
	소 계			
	수용비			
	제세·공과금			
	난방연료비			
간	차량유지비			
접	시설유지비			
비	시설보강비			
	인건비			
	기타간접비 ³⁾			
	소 계			
0	월 금			
	총 계			

- 1) 자체수입, 민간보조, 외원보조를 합한것임.
- 2) 아동개인 후원비 포함
- 3) 비품비 포함.

* 수입과 지출의 합계는 같아야 합니다.

Ⅱ. 시설설비

* 1997. 3. 31 현재상태층 기재해 주십시오.

3.	전체	규모	(대지)	$\underline{\hspace{1cm}}$ m^2	(임야)	m ²
			(건평)	$\underline{\hspace{1cm}}$ m^2	(전답)	m ²

4. 각 시설·설비의 규모 및 상태

					시	설있음	2				
구 분	시설 없음	규 모 ¹⁾			설비상태정도2)			증. 필	개축 2성	비	_
	W -				상	중	하	필요	필요 없음	UĮ	고
1. 거실		개	m	2							
2. 방		개	m								
3. 사무실			m	2							
4. 양호실			m	2							
5. 상담실			m	2							
6. 조리실		개	n	1 ²							
7. 관찰실			m								
8. 포복실			m								
9. 오락실			m								
10. 놀이터			m								
11. 강당			m	2							
12. 도서실			m	2							
13. 운동장			m	2							
14. 자원봉사자실			m^2								
15. 컴퓨터실			m^2								
16. 교양·프로그램실 ³⁾			m^2								

주: 1) 규모: 여러 개가 있는 경우는 합산함.

- 2) 시설·설비상태: 시설설비기준, 사용상의 편의성,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응답함.
- 3) 음악감상실, 미술실, 예의범절실 등 포함.

5-1. 현소재 시설의 설치연도는?	5.	귀 시설의 최초 설치연도는	? <u>년</u> 도	
□ 1. 주택가 □ 4. 외판지역 □ 2. 시장지역 □ 5. 기타 (무엇:) □ 3. 공단지역 7. 상기 귀 시설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은 무엇입니까? 유리한점:		5-1. 현소재 시설의 설치인	년도는? <u>년</u> 도	
니까? 유리한점:	6.	□ 1. 주택가□ 2. 시장지역)
8. 귀 시설은 다음의 기관들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기 관 (도보 또는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1.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 2. 가장 가까운 보건의료기관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3. 읍·면·동사무소 4.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9. 귀 시설의 건물은 몇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중 증·개축의 필요성이 있는 건물은 몇 동입니까? 또한 전체 건물중 1990년 이후에 증·개축한 건물은 몇동입니까? * 전체 건물 동수: 동 (m') * 증·개축이 필요한 동수: 동 (m')	7.	니까?		리한 점은 무엇입
기 관 (도보 또는 가장 편리한 거리 (Km) 1.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 2. 가장 가까운 보건의료기관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3. 읍·면·동사무소 4.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9. 귀 시설의 건물은 몇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중 증·개축의 필요성이 있는 건물은 몇 동입니까? 또한 전체 건물증 1990년 이후에 증·개축한 건물은 몇동입니까? * 전체 건물 동수: 동 (m²) * 증·개축이 필요한 동수: 동 (m²)		불리한 점:		
기 관 (도보 또는 가장 편리한	8.	귀 시설은 다음의 기관들과	-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	까?
2. 가장 가까운 보건의료기관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3. 읍·면·동사무소 4.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9. 귀 시설의 건물은 몇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중 증·개축의 필요성이 있는 건물은 몇 동입니까? 또한 전체 건물중 1990년 이후에 중·개축한 건물은 몇동입니까? * 전체 건물 동수: 동 (m') * 증·개축이 필요한 동수: 동 (m')		기 관	소요 시간 (도보 또는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거리 (Km)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3. 읍·면·동사무소 4.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9. 귀 시설의 건물은 몇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중 증·개축의 필요성이 있는 건물은 몇 동입니까? 또한 전체 건물중 1990년 이후에 증·개축한 건물은 몇동입니까? * 전체 건물 동수: 동 (m') * 증·개축이 필요한 동수: 동 (m')	1.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		
4.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9. 귀 시설의 건물은 몇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중 증·개축의 필요성이 있는 건물은 몇 동입니까? 또한 전체 건물중 1990년 이후에 증·개축한 건물은 몇동입니까? * 전체 건물 동수: 동 (m') * 증·개축이 필요한 동수: 동 (m')				
9. 귀 시설의 건물은 몇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중 증·개축의 필요성이 있는 건물은 몇 동입니까? 또한 전체 건물중 1990년 이후에 증·개축한 건물은 몇동입니까? * 전체 건물 동수: 동 (m') * 증·개축이 필요한 동수: 동 (m')	3.	읍·면·동사무소		
요성이 있는 건물은 몇 동입니까? 또한 전체 건물중 1990년 이후에 증·개축한 건물은 몇동입니까? * 전체 건물 동수: 동 (m') * 증·개축이 필요한 동수: 동 (m')	4.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요성이 있는 건물은 몇 동입 증·개축한 건물은 몇동입니까 * 전체 건물 동수: * 증·개축이 필요한 동수: _	입니까? 또한 전체 건물증 †? 통 (m²) 동 (m²)	중 1990년 이후에

10. 입소아동의 복지와 시설운영의 합리성을 고려할 때, 귀 시설의 적정 수용인원은 몇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귀 시설의 적정 아동규모:명 * 이유:								
11. 귀 시설의 주거형태는? □ 1. 시설내에서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생활하며 취사도 분리 (소숙사제) □ 2. 시설내에서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생활하나 공동취사 □ 3. 집단 기숙사 형태 □ 4. 기타 (무엇:								
12. 귀하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주거형태가 어떤 형태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독립적인 단독 가정형태 (그룹홈) □ 2. 시설내에서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생활하며 취사도 분리 (소숙사제) □ 3. 시설내에서 몇 개의 가정형태로 분리 생활하나 공동취사 □ 4. 집단 기숙사 형태 □ 5. 기타 (무엇:								
13. 귀 시설의 실제 주거형태가 귀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주거형태외다를 경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형태로 전환할 의사가 있습니까?								
□ 1. 있다 → 13-1. 있다면, 언제 전환하실 계획입니까? 언제: 13-2.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13-3. 이에 따른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무엇:								
□ 2. 없다 → 13-4.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Ⅲ. 수용아동 현황

* 1997. 3. 31 현재상태흥 기재해 주십시 오. 개인벽 조사표흥 참조하여 작성하 여 주시기 바な니다.

14.	정원:	 .명 (정원	승인년도:	 <u>년)</u>		
15.	현원:	 명				
					(단위:	명)

5	민원수	•		재학중인 학교 또는 최종학교												부모	생존	유무	
7.11		۲.	미	초	등학	E	Z	들학고	2	고	등학	교	대	학교	모두	부만	_	모두 사망	모
계 	남 	여	취 학	중 퇴	재 학	졸 업	중 퇴	재 학	졸 업	중 퇴	재 학	졸 업	중 퇴	재학 이상	생존	생존			름

16. 귀 시설에서는 아동 개개인의 입소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입소후 아동에 대한 생활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 н	7	기록관리상태						
구 분	상	중	하	기록없음				
입소전 기록 보유 여부								
입소후 생활기록부 작성 여부								

17.	입·퇴소 현황	(1996. 4.	1 ~	1997. 3. 31)	
	가. 입소자수	(1996. 4.	1 ~	1997. 3. 31) 총	명

나. 시설입소경로별* 입소자수

입소경로*	계	남	0‡
1. 행정관서			
2. 경찰관서			
3. 타시설 전원			
4. 병원에서의 후송			
5. 연고자 의뢰			
6. 기타(무엇:)			
합 계			

- 라. 퇴소아동들의 퇴소당시의 상태
 - * 픽요시 다른 지면은 확용하여 주십시 오. 아내 분류를 참조하시어 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서 HJ	пь		ᄉᄋᄁᄓ	-	취연			
아동 일련 번호	성별	만 연령	학력 ¹⁾	수용기간	퇴소 ²⁾ 사유	취입 여부	직종 ³⁾	주거 ⁴⁾ 유형	퇴소시 문제 점 및 특기 사항
	1.남자 2.여자	(세)	의목	(몇년 몇개월)	Иπ	취업 여부 1.취업 2.비취업	70	π	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 학력 : ① 미취학 ② 초등중퇴 ③ 초등재학 ④ 초등졸 ⑤ 중학중퇴 ⑥ 중학재학 ⑦ 중학졸업 ⑧ 고교중퇴 ⑨ 고교재학 ⑩고졸 ⑪ 전문 대입학 ⑫ 4년제대입학 ⑬ 기타
- 2) 퇴소사유: ① 타시설 전원 ② 연장아 퇴소 ③ 연고자 인계 ④ 무단퇴소 ⑤ 입양·위탁 ⑥ 사망 ⑦ 기타
- 3) 직종 : ① 전문가/기술공/준전문가 ② 사무직원 ③ 도소매 판매 ④ 음 식·숙박업 ⑤ 기타 서비스직 근로자 ⑥ 농업근로자 ⑦ 기능공 ⑧ 단순노무직 근로자
- 4) 주거유형: ① 자취(단독) ② 자취(공동) ③ 부모집 ④ 양부모집 ⑤ 회 사기숙사 ⑥ 자립생활관 ⑦ 기타(무엇:

18.	현재	귀	시설에는	장애아나	다른	시·도	아동이	있습니까?	있다면	각각
	몇명c	이며	, 그들을	받아들인	이유는	- 무엇	입니까?)		

□ 1. 있다	구 분	장애아	타시·도아동				
☐ 1. 있다 ☐ 2. 없다	_1 _1	□ 명	□ 명				
	나. 수용이유: ① 관할구역내에 다른 적합한 시설이	□ 명	□ 명				
	없기 때문에 ② 행정기관에서 의뢰하였기 때문에 ③ 무의무탁한 아동이기 때문에	변 명 명	변 - 변 				
	④ 기타 (무엇: <u>)</u>	□ 명	□ 명				
19. 귀 시설 □ 1. ; ↓	년에는 만18세가 경과한 아동이 있습니까? 9 있다 (명) □ 2. 없다	있다면 및	莫명입니까?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중인 자						
법정	직업보도시설 또는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중인 자						
연장	심신장애아로서 귀가·취업이 곤란한 20세미만의 자						
허용자	기타(무엇:)						
	소계						
기타 연장	-자		명				
합	계		명				
어떤 G □ 1. 3.	질문에서 법정연장허용자 이외의 연장아동여 가동들 입니까? 고등학교 재학생(명) □ 2. 대학교 재학 직업훈련원생(명) □ 4. 미취업대기 사회부적응자(명) □ 6. 기타 (학생(명 자(명)	<u>}</u>)				

21. 귀 시설아동의 퇴소시 지급하는 1인당 자립지원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구 분	액 수
정부 보조(국고, 지방비 포함)	원
시설 자체보조	원
기타(무엇:)	원
합 계	원

22.	이러한 까?	자립지원	금은 토	티소아동이	자립하기	위해	충분히	나다고	생각하	십니
		충분하다		□ 2. ·	불충분하	다		□ 3.	모르겠	다
				\						
22-	1. 불충년	분하다고	생각하	시면, 퇴소	아동들에	대한	자립지유	원금은	최소한	얼

22-1.	. 불충분하다고 생각히	하시면, 퇴소아동들에	대한 자립지원금은	- 최소한 얼
	마정도는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	_원		
	이유:			

Ⅳ. 직원 현황

* 픽인시 다른 지면을 활용하여 구십시오. 아내 분류를 참조하시어 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23. 종사인력 현황 (1997. 3. 31. 현재)

(단위: 명)

									- 11. 07
성명	구분 ¹⁾	남	ર્ વ	연령	정부 ²⁾ 보조여부	학력 ³⁾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	해당직종 자격증 소지 여부	근무연수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1) ①시설장, ②총무, ③의사, ④간호사(간호조무사), ⑤영양사, ⑥보육사, ⑦생활지도원, ⑧직업훈련교사, ⑨상담요원, ⑩취사부, ⑪세탁부, ⑫경리, ⑬경비원, ⑭보조원, ⑮기타 2)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종사자 여부 3) 학력: ① 무학 ② 초등중퇴 ③ 초등졸업 ④ 중학중퇴 ⑤ 중학졸업 ⑥ 고교중퇴 ⑦ 고교졸업 ⑧ 전문(대학)중퇴 ⑨ 대학졸업 ⑪ 대학원졸업 ⑪ 기타

23-1. 귀 시설의 아동수를 감안하였을 때 추가로 필요한 직원은 어떤 종류(예: 운전기사, 전기기사, 사무원 등)의 몇명입니까?

구분	필요인원수	사유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	
6.	명	
7.	명	
8.	명	
9.	명	
10.	명	

V. 관리운영

24.	귀	시설은	은 지난	1년간	(1996.)	$\sim 12)$	시설운	영의	지도감독	및	점검을
	위	해 행기	정기관(서	시의회	포함)의	방문을	모두	몇차리	ᅨ 받으셨	습니	까?
	-	계:			차례						

24-1.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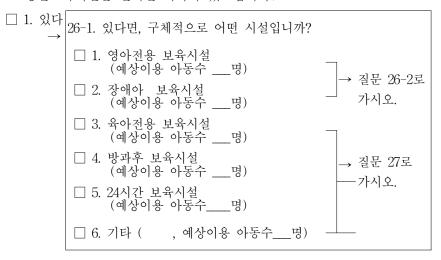
			•)
일련번호	기관명	일시	방문목적 ¹⁾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주: 1) 정기감사, 특별감사, 위생점검, 소방점검 등을 기술함.

25. 귀 시설에서는 현재와 같은 아동의 장기보호와 함께 '96년도 아동복지 사업지침(87~88 페이지 참조)에 의거한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단기보 호사업 (일시보호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1. 운영하고 있다 →	25-1. 운영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2. 운영하고 있지 않다→	25-2.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운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 1. 있다 □ 0. 없다
	25-3. 운영할 의사가 있다면 이에 따른 가장 큰 요 구사항은?

26. 귀 시설에서는 구조적으로 독립된 유휴건물이 있거나 별도 출입문 설치 등 간단한 건물개조를 통해 기존의 아동사업과 함께 아래와 같은 병설보육시설을 설치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2. 없다 → 질문 27 로 가시오

26-2. 현재 정부에서는 기존의 아동시설에서 영아나 장애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건비 및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설치비중 어떤 종류의 지원을 원하십니까?
□ 1. 건물신축: 평, 예상이용아동수명 □ 2. 건물개보수: 평, 예상이용아동수명
27. 귀 시설에서는 목적사업외에 지역사회내 주민복지를 위한 또 다른 사업(예: 공부방운영, 운동장 개방, 강당 실비대여,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전달사업,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1.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사업입니까? (있는데로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 2.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운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 (질문 27-5로) ↓ 27-3. 운영할 의사가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 1. 있다 □ 2. 없다↓28-1. 전환의향이 있다면 선호:	 하는 시설좆류는?
	□ 8. 어린이집
□ 2. 육아시설	□ 9. 장애인복지시설
□ 3. 아동직업보도시설	□ 10. 노인복지시설
□ 4. 아동일시보호시설	□ 11. 부녀복지시설
□ 5. 교호시설	□ 12. 부랑인선도시설
□ 6. 자립지원관	□ 13. 기타 선호시설
□ 7. 아동전용시설	①
	②
	3
	<u>4</u>
28-2. 위의 다른 특정 복지시설	로로 전환하고 싶은 이유는?
(해당난에 모두 체크)	
□ 1. 지역사회에 필요하기 및	. – ,
□ 2. 기존시설을 가장 잘 횔	
□ 3. 행정기관에서 권유하므	
□ 4. 기타 (무엇:)
9. 귀 시설에서는 시설을 이건	선할 의사가 있습니까?

	 세제상의 이전비를 	의 혜택	에 따른 가장 큰 요구사항은? 3. 지역주민의 시설입주 허용 4. 기타(무엇:
30. 7	귀 시설에서	는 만약 가능하다	면 시설운영을 중단할 의사가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를 현재의 아동시설법인에서 노인·장애인 법인으로 전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1. 있다	□ 2. 없다	
	\downarrow		
3	81-1. 구체	적으로는 무엇입니	까?
	1 4	-인복지시설 운영	법인
	2 3	}애인복지시설 운 [©]	영법인
	③ 부	부녀복지시설 운영	법인
	④ 투	-랑인복지시설 운 약	영법인
	(5) Z	성신질환시설 운영	법인
	<u>6</u> ×] 원법인	

32.	지수용시설 주십시요?	관련하여	건의	및	요망사항이	있으시면	말
							_
							_

아동 개인 조사표6

(조사기준: 1997년 3월 31일 현재)

조 사 표 번 호		
지역	일련번호	개 인

시설종류:	□ 1. 영아시설□ 2. 육아시설□ 3. 영육아 종합시설□ 4. 직업보도시설	□ 5. 자립지원시설□ 6. 일시보호시설□ 7. 교호시설□ 8. 기타
기 관 명:		
소 재 지:	시 도 —	구 시 군
작성일자:	1997년월일	

보 건 복 지 부

⁶⁾ 본 아동 개인 조사표는 아동 자신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성된 조사표 는 총무가 검토후 제출토록 함. 시설 조사표상의 현원과 일치하여야 함.

⁻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경우: 일반사항과 가족사항까지 보육사가 대신 작성함.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학생인 경우: 일반사항과 가족사항까지 스스로 작성함.

⁻ 고등학생 이상: 모든 항목에 대해 스스로 작성함.

I. 일반사항

1.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 1. 남자 □ 2. 여자
2.	태어난 년도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만으로 몇 살입니까? * 태어난 년도: 19년월 * 현재 나이: 만세
3.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0. 학교에 다니지 않았음 □ 3. 고등학교(재학중, 중퇴, 졸업) □ 1. 국민학교(재학, 중퇴, 졸업) □ 4. 기타(무엇:) □ 2. 중학교(재학중, 중퇴, 졸업)
4.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 0. 없다 □ 2. 천주교 □ 4. 기타(무엇:) □ 1. 기독교 □ 3. 불교
5.	처음 시설에 들어온 년도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의 나이는 몇살이었습니까? * 입소년도: 19 년 * 그 당시 연령: 만세
6.	처음 시설에 들어온 원인은 무엇입니까? □ 1. 기아 □ 2. 미아 □ 3. 부모 모두 사망 □ 4. 부모 모두 생존해 있으나 이혼, 행방불명, 재혼 등으로 인하여 →(6-1로) □ 5. 부사망 모생존해 있으나 재혼,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6-2로) □ 6. 모사망 부생존해 있으나 재혼,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6-2로) □ 7. 파양(입양했다가 실패로 입소한 경우) □ 8. 소년소녀가장
	□ 9. 아동자신의 문제 즉 상습가출, 도벽 등으로 인하여 →(6-3으로)

6-1. (질문 6에 4번을 응답한 경우) 부모 모두 생존해 있으나 시설에 들어오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1. 이혼 □ 2. 가출, 행방불명 □ 3. 양육포기(미혼모 포함) □ 4. 부모재혼 □ 5. 부모학대(방임, 방치) □ 6. 부모 질병 □ 7. 부모 빈곤 □ 8. 종교적인 이유 □ 9. 기타 ()
6-2. (질문 6에 5, 6번을 응답한 경우) 부 또는 모가 생존해 있지만 시설에 들어오게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1. 부 또는 모의 질병 □ 2. 부 또는 모의 재혼 □ 3. 부 또는 모의 가출(행방불명) □ 4. 부 또는 모의 학대(방임, 방치) □ 5. 부 또는 모의 수감(알콜, 약물중독 포함) □ 6. 부 또는 모의 빈곤 □ 7. 종교적인 이유 □ 8. 부 또는 모의 행방불명후 친인척의 방임·방치 □ 9. 기타 (
니까?
□ 1. 상습가출 □ 2. 도벽 □ 3. 가정부적응 □ 4. 초기자폐층
□ 5. 학습지진아 □ 6. 약물(본드 등) 남용 □ 7. 기타(무엇:)
7. 영아원에서 전원(轉院) 여부
□ 1. 예 □ 2. 아니오

Ⅱ. 가족사항

8.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함께 살았던 가족과 친척은 모두 누구였습니까?(당시에 함께 살았던 사람은 모두 √해주십시오.)			
☐ 2. 어머니☐ 3. 친할다☐ 4. 친할다	니 아버지 머니	□ 7. 삼촌 □ 8. 외삼촌 □ 9. 고모	 □ 11. 계부(양아버지) □ 12. 계모(양어머니) □ 13. 영아원에서 생활 □ 14. 모르겠다 □ 15. 기타(누구:)
9.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가족이나 친척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0. 없다 □ 1. 있다 →	* 방 9-2. 어떤	1년간(1996. 1-12) 문횟수 : 가족이나 친척을 변 구 :	앙문하였습니까?
10. 시설에 가끔	찾아오는 ;	가족이나 친척이 있	습니까?
□ 0. 없다 □ 1. 있다 →	* 3 10-2. 주회	찾아온 횟수 :	나 친척은 누구입니까?
11.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형제 또는 자매가 있습니까?			
□ 0. 없다		□ 1. 있다 (몇:	명)

12.	부모의 생존여부는?
	□ 1. 모두 생존 □ 2. 아버지만 생존 □ 3. 어머니만 생존 □ 4. 모두 사망 □ 5. 모르겠다.
13.	부모중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 부 또는 모의 경제 생활 수준은 어떻습니까?
	□ 1. 상 □ 2. 중 □ 3. 하 □ 4. 모르겠다.
14.	현재 받고 있는 용돈은 한달에 얼마나 됩니까? * 얼마: 한달에원
	14-1. 다음 중 누구에게서 받고 있습니까? 모두 응답하시오.
	① 시설에서 주고 있음. ② 부/모/친척 ③ 후원금 ④ 기타

중학생이하인 경우는 질문 끝.

Ⅲ. 장래문제

* 고등학생 이상만 응답하시오.

15.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고 싶은지요?

□ 1. 고등학교 →	15-1. 고등학교 까지만 다니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공부가 하기 싫어서 □ 2. 공부할 환경이 안되어서 □ 3. 직장에 다니고 싶어서 □ 4. 시설에서 떠나 독립생활을 하고 싶어서 □ 5. 기타 (무엇:)
□ 2. 전문대 이상 →	15-2. 전문대학 이상을 다니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공부가 하고 싶어서 □ 2.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 3. 사회적 명예를 얻기 위해서 □ 4. 기타 (무엇:)
□ 0. 걱정되는 것○□ 1. 혼자 자립해서	었이 가장 걱정이 됩니까?] 없음 □ 4. 시설출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 살아가야 하는 것 ;을까봐 □ 5. 기타 (무엇:) 는 점
17. 취업을 한다면, 어떤 □ 1. 행정관리자 □ 4. 판매·서비스 ²	직업을 원합니까? □ 2. 전문가/기술공 □ 3. 사무직원 □ 5. 농업근로자 □ 6. 기능공
□ 7. 단순노무직 급	² 로자 □ 8. 기타(무엇 :)

18. 취업을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 1. 봉급을 많이 주는지 □ 2. 주거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 3.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지 □ 4. 그 직업을 통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지 □ 5. 그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지 □ 6. 기타 (무엇:
19. 퇴소후 거주할 집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 1. 가족 또는 친척집 □ 2. 회사의 기숙사 □ 3. 선배나 동기들과 함께 돈을 모아 방을 마련함 □ 4. 자립생활관 □ 5. 직장에서 해결 □ 6. 주택전세금을 받아서 마련함. □ 7. 그때 가봐야 알겠다. □ 8. 기타(어디:
20. 퇴소후 자립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1. 전혀 모르고 있다□ 2. 조금은 알고 있다
21. 자립생활관은 퇴소후에 거처할 곳이 없는 아동에게 퇴소후 2년까지 아주 싼값으로 거처할 수 있게 해 주는 시설입니다. 퇴소후 자립생활관을 이 용할 생각이 있습니까?
□ 1. 이용할 생각이 있다 21-1. 이용할 생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 □ 2. 이용할 생각이 없다 → 엇입니까? □ 3. 모르겠다

22.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을	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1. 전혀 모르고 있다□ 2. 조금은 알고 있다	
23.	, , – –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나라에서 주는 얼마 안되 원금으로 무엇을 할 생각입니까?
	□ 1. 주택자금□ 4. 연고자 지원□ 6. 기타 (□ 2. 정기적금예금 □ 3. 가재도구구입□ 5. 자기개발비(예: 학자금 등) 충당)

감사합니다.